



정책 18-16

---

# 수어통역사 활성화 방안 연구

---

2018. 10.





본 보고서의 연구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재)한국장애인개발원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

수어통역사 활성화 방안 연구 / 서원선, 이준우, 김민정 [지음]. -- 서울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8  
p. ; cm. -- (정책 ; 18-16)

권말부록 수록

참고문헌 수록

ISBN 978-89-6921-295-5 93330 : 비매품

수화 통역[手話通譯]

장애인 복지[障礙人福祉]

338.3-KDC6

362.4-DDC23

CIP2018034283

## 연구진

연구책임 : 서원선(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연구1팀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이준우(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김민정(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조사패널팀 연구원)

## 자문위원

장진석 (나사렛대학교 수어통역교육전공 조교수)

김정환 (중랑구 수어통역센터 센터장)

홍장미 (KBS 사랑의 가족 수어통역사)

김수연 (한국농아인협회 기획부장)



## 발간사

청각장애인은 구어를 사용하는데 제한되어 의사소통과 정보전달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수어를 통해 언어적·인지적 능력발달을 달성하고 있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전문가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을 검정하기 위해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제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자격제도는 15년 전에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유사한 검정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변화하는 청각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의 사회적 지위와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국내외 자격제도와 유사 자격제도를 문헌조사 방식으로 분석하였으며 전문가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수어통역사, 청각장애인통역사,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제도 현황 및 개선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활성화 및 전문화 방안, 수어통역·농통역 서비스 개선 방안,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에 대한 채용·노동환경 개선 및 인식개선 영역 등으로 대분류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연구의 설계와 발전을 위해 귀한 자문 의견을 주신 한국농아인협회 김수연 기획부장, 중랑구 수어통역센터 김정환 센터장, 나사렛대학교 수어통역교육전공 장진석 조교수, KBS 사랑의 가족 홍장미 수어통역사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연구 결과가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를 활성화 및 전문화하는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고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의 노동환경이 개선되어 궁극적으로 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자립활동을 증진시키는 유용한 연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 10월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최 경 속



## ▶ 목 차

연구요약 .....	vii
<b>I. 서론 .....</b>	<b>1</b>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절차 .....	6
1) 연구내용 및 방법 .....	6
(1) 국내·외 문헌조사 .....	7
(2)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및 청각장애인 대상 FGI .....	7
(3)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현황조사 및 활성화방안 설문조사 .....	7
(4) 연구진 및 자문회의 운영 .....	8
2) 연구추진체계 .....	8
<b>II. 수어통역사자격증 및 유사자격증 .....</b>	<b>11</b>
1. 수어통역사 자격제도 .....	13
1) 국내 수어통역사 자격제도 현황 .....	13
(1) 수어통역사 .....	13
(2) 청각장애인통역사 .....	15
2) 국외 수어통역사 자격제도 현황 .....	17
(1) 미국 청각장애인통역등록회(Registry of Interpreters for the Deaf) ..	17
(2) 영국 청각 및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전문가 전국 등록협회 (National Registers of Communication Professionals working with Deaf and Deafblind People) .....	21
(3) 호주 전국 번역사 및 통역사 인가협회(National Accreditation Authority for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	25



3) 유사자격제도 현황 .....	28
(1) 사회복지사 .....	28
(2) 한국어교원 .....	35
(3) 통역번역사 .....	41
4) 시사점 .....	45
<b>III. 전문가 및 청각장애인 포커스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분석 결과 .....</b>	<b>47</b>
1.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분석 ..	49
1) 연구방법 .....	49
2) 연구결과 .....	50
2. 청각장애인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분석 .....	53
1) 연구방법 .....	53
2) 연구결과 .....	54
<b>IV. 설문조사 결과 .....</b>	<b>57</b>
1. 수어통역사 대상 양적연구 .....	59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	59
2)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 .....	59
3) 조사결과 .....	59
(1) 일반적 현황 .....	59
(2) 수어통역사 업무특성과 노동조건 .....	63
(3) 수어통역사 자격요건 .....	65
(4) 수어통역사 자격취득 방법 .....	70
(5) 수어통역사 자격제도 개선 .....	77
4) 시사점 .....	79
2. 청각장애인통역사 대상 양적연구 .....	81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	81
2)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 .....	81
3) 조사결과 .....	81

(1) 일반적 현황 .....	81
(2) 청각장애인통역사 업무특성과 노동조건 .....	85
(3)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요건 .....	86
(4)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취득 방법 .....	91
(5)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제도 개선 .....	97
4) 시사점 .....	100
<b>V. 결론 및 제언 .....</b>	<b>103</b>
1.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활성화 방안 .....	106
1) 자격시험의 필기·실기시험 과목의 조정 .....	106
2) 자격시험의 실기능력 강조 .....	107
3) 시험횟수 증대 .....	108
2.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전문화 방안 .....	109
1) 전문 분야 자격인증 도입 .....	109
2) 전문 분야 자격증에 대한 혜택 제공 .....	110
3) 보수교육의 개선 .....	111
3.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서비스 개선 방안 .....	112
1)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윤리강령 제정 .....	112
2) 방송 통역 모니터링 실시 .....	113
4.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에 대한 채용·노동환경 개선 및 인식개선 .....	114
1)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에 대한 채용·노동환경 개선 .....	114
2)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에 대한 인식개선 .....	116
<b>참고문헌 .....</b>	<b>119</b>
<b>부록 .....</b>	<b>121</b>



## ▶ 표목차

〈표 Ⅰ-1〉 추진절차 .....	9
〈표 Ⅱ-1〉 수어통역사 필기시험 개요 .....	14
〈표 Ⅱ-2〉 수어통역사 실기시험 개요 .....	14
〈표 Ⅱ-3〉 수어통역사 합격자 연수 개요 .....	14
〈표 Ⅱ-4〉 청각장애인통역사 필기시험 개요 .....	16
〈표 Ⅱ-5〉 청각장애인통역사 실기시험 개요 .....	16
〈표 Ⅱ-6〉 청각장애인통역사 합격자 연수 개요 .....	17
〈표 Ⅱ-7〉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자 수 및 양성기관 수 .....	29
〈표 Ⅱ-8〉 사회복지사 급수 체계 및 자격기준 .....	30
〈표 Ⅱ-9〉 사회복지사 교과목과 이수과목(학점) .....	32
〈표 Ⅱ-10〉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후 승급기준 .....	33
〈표 Ⅱ-11〉 사회복지사 시험과목 및 문항 수(배점) .....	33
〈표 Ⅱ-12〉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영역 및 강사 자격기준 .....	34
〈표 Ⅱ-13〉 연간 보수교육 평점기준 .....	35
〈표 Ⅱ-14〉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자 수 및 양성기관 .....	36
〈표 Ⅱ-15〉 한국어교원 급수 체계 및 자격기준 .....	37
〈표 Ⅱ-16〉 한국어교원 과목과 이수학점 .....	39
〈표 Ⅱ-17〉 한국어교원 자격취득 후 승급기준 .....	40
〈표 Ⅱ-18〉 한국어교원 시험과목 및 문항 수(배점) .....	41
〈표 Ⅱ-19〉 외국어번역행정사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자 수 .....	42
〈표 Ⅱ-20〉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과목 및 문항 수(배점) .....	43
〈표 Ⅱ-21〉 ITT 시험시간 및 문제유형 .....	44
〈표 Ⅲ-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49
〈표 Ⅲ-2〉 수어통역사 FGI 범주화 .....	50
〈표 Ⅲ-3〉 청각장애인통역사 FGI 범주화 .....	51
〈표 Ⅲ-4〉 청각장애인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54
〈표 Ⅲ-5〉 청각장애인 FGI 범주화 .....	55

〈표 Ⅲ-6〉 수어통역사 기본 인적사항 .....	60
〈표 Ⅲ-7〉 수어통역사 직무 관련 인적사항 .....	62
〈표 Ⅲ-8〉 수어통역사 전공 및 자격증 현황 .....	63
〈표 Ⅲ-9〉 수어통역사 주 업무 영역 .....	64
〈표 Ⅲ-10〉 수어통역사 업무 수행 시 가장 힘든 점 .....	65
〈표 Ⅲ-11〉 수어통역사로 일하기 위한 적합 전공 .....	66
〈표 Ⅲ-12〉 수어통역사 업무 수행 시 필요한 교육수준 .....	66
〈표 Ⅲ-13〉 수어통역사로 일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	67
〈표 Ⅲ-14〉 수어통역사 현장 배치기준 .....	68
〈표 Ⅲ-15〉 수어 통역 분야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	69
〈표 Ⅲ-16〉 수어통역사 자격 취득기간 .....	70
〈표 Ⅲ-17〉 수어통역사 시험 방식에 대한 의견 .....	70
〈표 Ⅲ-18〉 수어통역사 자격증 필기시험 난이도 .....	71
〈표 Ⅲ-19〉 수어통역사 자격증 실기시험 난이도 .....	73
〈표 Ⅲ-20〉 수어통역사 필기시험 영역별 순위 .....	74
〈표 Ⅲ-21〉 수어통역사 실기시험 영역별 순위 .....	75
〈표 Ⅲ-22〉 수어통역사 자격 시험에 대한 응답 .....	76
〈표 Ⅲ-23〉 수어통역사 자격제도 개선 필요 여부 .....	77
〈표 Ⅲ-24〉 전문 수어통역사 분야에 대한 의견 .....	77
〈표 Ⅲ-25〉 분야별 전문 수어통역사 자격증 부여 방법 .....	78
〈표 Ⅲ-26〉 지역 내(內) 수어통역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경우 활동 영역 .....	78
〈표 Ⅲ-27〉 지역 내(內) 수어통역사 자격증의 부여 방법 .....	79
〈표 Ⅲ-28〉 수어통역사 자격 급수에 따른 보상방식 .....	79
〈표 Ⅲ-29〉 청각장애인통역사 기본 인적사항 .....	82
〈표 Ⅲ-30〉 청각장애인통역사 직무 관련 인적사항 .....	83
〈표 Ⅲ-31〉 청각장애인통역사 전공 및 자격증 현황 .....	84
〈표 Ⅲ-32〉 청각장애인통역사 주 업무 영역 .....	85
〈표 Ⅲ-33〉 청각장애인통역사 업무 수행 시 가장 힘든 점 .....	86
〈표 Ⅲ-34〉 청각장애인통역사로 일하기 위한 적합 전공 .....	87
〈표 Ⅲ-35〉 청각장애인통역사 업무 수행 시 필요한 교육수준 .....	87
〈표 Ⅲ-36〉 청각장애인통역사로 일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	88
〈표 Ⅲ-37〉 청각장애인통역사 현장 배치기준 .....	89



〈표 Ⅲ-38〉 청각장애인 통역 분야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	90
〈표 Ⅲ-39〉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 취득기간 .....	91
〈표 Ⅲ-40〉 청각장애인통역사 시험 방식에 대한 의견 .....	91
〈표 Ⅲ-41〉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증 필기시험 난이도 .....	92
〈표 Ⅲ-42〉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증 실기시험 난이도 .....	93
〈표 Ⅲ-43〉 청각장애인통역사 필기 및 실기시험 과목별 기준 개선에 대한 의견 .....	94
〈표 Ⅲ-44〉 청각장애인통역사 필기시험 영역별 순위 .....	95
〈표 Ⅲ-45〉 청각장애인통역사 실기시험 영역별 순위 .....	96
〈표 Ⅲ-46〉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 시험에 대한 응답 .....	97
〈표 Ⅲ-47〉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제도 개선 필요 여부 .....	98
〈표 Ⅲ-48〉 전문 청각장애인통역사 분야에 대한 의견 .....	98
〈표 Ⅲ-49〉 분야별 전문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증 부여 방법 .....	99
〈표 Ⅲ-50〉 지역 내(內)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경우 활동 영역 .....	99
〈표 Ⅲ-51〉 지역 내(內)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증의 부여 방법 .....	100
〈표 Ⅲ-52〉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 급수에 따른 보상방식 .....	100
〈표 V-1〉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한 제언 .....	105
〈표 V-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장애인의 이동 및 이용 편의 제공) 신·구조문대비표 .....	115
〈표 V-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신·구조문대비표 .....	117
〈표 V-4〉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수어통역) 신·구조문대비표 .....	118

# 연구 요약





# I. 서론

##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 2017년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등록장애인 2,511,051명 중 청각장애인은 271,843명(10.8%)으로 나타나며, 이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뇌병변장애 다음으로 4번째로 높은 비율임
- 청각장애인은 구어를 사용하는데 제한되어 의사소통과 정보전달에 어려움을 경험함 → 수어가 발달하게 됨
- 수어통역사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수어통역과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고, 수어통역사와 당사자를 기반으로 수어통역 환경의 양적·질적 증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수어통역사의 역할 및 자격, 교육과 양성실태를 포함한 현황에 대해 조사함. 이와 더불어 수어통역사의 수요·공급과 서비스 질 향상 방법을 논의하여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자립을 보장하는 사회적 환경을 구축하고, 수어통역관련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분석함. 추가적으로 농통역 전문가인 청각장애인통역사의 현황 및 실태, 활성화 방안, 전문성 확보 방안 등도 함께 조사함

## 2. 연구내용 및 절차

### 1) 연구내용 및 방법

-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4개 영역으로 구분됨. 첫째, 수어통역·농통역 관련 국내외 문헌수집 및 자격제도 현황분석. 둘째,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및 청각장애인 당사자 대상 질적 조사 및 분석. 셋째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대상 양적 조사 및 분석, 넷째,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활성화 방안 및 전문성 강화 방안 제시 등으로 구분됨



-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통한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의 역할 및 기능, 자격제도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조사하였고,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와 당사자 대상 FGI,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대상 설문조사, 자문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집함

## 2) 연구추진체계

- 연구계획수립 및 연구진 구성 → 1차 자문회의(방향 설정) → 국내외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 검토 → 전문가 1차 회의(FGI) → 설문조사 → 전문가 2차 회의(FGI) → 2차 자문회의 → 보고서 발간

# Ⅱ. 수어통역사자격증 및 유사자격증

## 1. 수어통역사 자격제도

### 1) 국내 수어통역사 자격제도 현황

- 수어통역사는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사회참여를 위해 필요한 의사소통의 기반을 조성하며 의료, 복지, 법률, 교육, 사회, 문화 등의 전반에서 청각장애인들이 바른 권리를 행사하며 시민으로서의 균등한 기회를 갖도록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전문가임
- 수어통역사 자격제도는 크게 필기시험, 실기시험, 합격자 연수로 구분되며 장애인복지, 한국어의 이해, 청각장애인의 이해, 수어통역의 기초 영역의 기본적인 내용을 필기시험으로 검정하며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필기통역, 수어통역, 음성통역 능력을 실기시험으로 검정함
- 수어통역사 보수교육은 수어통역사 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농아인의 사회참여 확대에 다양해지는 수어통역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농아인의 원활한 의사소통 조력자로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함 →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5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함

- 청각장애인통역사는 문맹농인과 청인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원활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계자의 역할과 체계적인 의사소통 촉진자를 말함
- 청각장애인인 경우에만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크게 필기시험, 실기시험, 합격자 연수를 통해 자격증이 부여됨. 필기시험은 한국어의 이해, 통역의 기초, 일반상식이며 실기시험은 문장통역, 수어통역1, 수어통역2임
- 청각장애인통역사 보수교육은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청각장애인통역사로서의 기본 수양 함양과 중계통역사로서의 자질을 향상시켜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함 →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3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함

## 2) 국외 수어통역사 자격제도 현황

- 수어통역의 전문성을 인지하여 통역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농아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준별 자격제도를 운영함과 동시에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성 유지를 강조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미국, 영국, 호주의 사례를 분석하여 국외 수어통역사 자격제도의 특성을 조사함
- 미국 청각장애인통역등록회(Registry of Interpreters for the Deaf, RID)는 미국 내에서 청각장애인 통역을 위한 전국적 기준을 마련하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함. RID는 현재 전국통역사자격증(National Interpreter Certification)과 공인청각장애인통역사(Certified Deaf Interpreter) 2종류의 자격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청각장애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the Deaf)가 발급한 자격증을 인정함. RID 자격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RID 자격증 유지를 위한 회비를 납부해야하며 RID 자격증 관리 프로그램(Certification Maintenance Program, CMP)을 충족해야함
- 영국 청각 및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전문가 전국 등록협회(National Registers of Communication Professionals working with Deaf and Deafblind People, NRCPD)는 청각 및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일하는 의사소통 및 언어 전문가를 규율하여 청각 및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됨. NRCPD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전문가와 관련해 2종류의 전문가



프로그램(등록 수어통역사, 견습수어통역사)을 운영하고 있음. NRCPD는 청각 및 시청각장애인에게 수준 높은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등록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유지 및 향상시키기 위해 평생전문개발(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CPD)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CPD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NRCPD에 등록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등록이 가능함

- 호주 전국 번역사 및 통역사 인가협회(National Accreditation Authority for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NAATI)는 호주의 9개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써 각 부처에서 임명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Board of Directors)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현재 호주수어 통역과 관련해 준전문통역사와 전문통역사를 운영하고 있음. NAATI는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재공인 프로그램(Recertification Program)을 운영하고 있음

### 3) 유사자격제도 현황

- 현재 장애인복지, 사회복지, 어학(통역·번역) 관련 분야 등에서 여러 전문 자격증이 운영·존재함
- 장애인복지 및 언어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중 사회복지사, 한국어교원, 국제통역번역사 등의 자격제도를 검토하여 수어통역사 자격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함

### 4) 시사점

- 첫째, 수어통역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격증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전문성 혹은 분야에 따라 차등화된 자격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법률, 의료, 종교 등 일상적인 수어통역 이외의 특수한 수어통역이 필요한 영역을 선별하여 해당 분야와 관련된 지식과 경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자격제도가 필요함
- 셋째, 수어통역사의 윤리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함

### Ⅲ. 전문가 및 청각장애인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분석 결과

#### 1.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분석

##### 1) 연구방법

- 수어통역사 활성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수어통역사와 청각장애인통역사를 구분하여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진행함
- 연구를 위한 질문으로는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관한 항목과 함께 크게 4개 영역으로 제시됨 → 첫째, 수어통역과 관련하여 현재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수어통역사 자격제도에 관해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수어통역사 자격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그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넷째, 전문 수어통역사 자격제도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 연구결과

- 수어통역사들이 인식하는 수어통역 및 수어통역사 자격제도에 대한 내용을 범주화한 결과, 28개의 개념, 9개의 하위범주, 4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됨
- 청각장애인통역사들이 인식하는 수어통역 및 수어통역사 자격제도에 대한 내용을 범주화한 결과, 19개의 개념, 7개의 하위범주, 4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됨
- 분석결과를 토대로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제도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주요 시사점을 도출함 → 첫째,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공통으로 전문 분야에 대한 통역 서비스가 절실하게 필요함. 둘째,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시험에서 필기보다 실기를 강조할 필요가 있음. 셋째, 수



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증의 활성을 위해 자격시험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할 필요가 있음. 넷째,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수교육을 보다 전문화·개별화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들의 업무 비중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 2. 청각장애인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분석

### 1) 연구방법

- 수어통역·농통역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FGI를 실시함
-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FGI에서는 수어통역·농통역을 직접 이용한 경험을 기초로 수어통역·농통역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점,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의 자질, 기타 수어통역·농통역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함 → 연구를 위한 질문은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관한 항목과 함께 4개의 영역으로 제시됨. 첫째, 수어통역·농통역 서비스를 언제 주로 이용하십니까? 둘째, 수어통역·농통역 서비스에 만족 혹은 불만족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그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넷째, 수어통역·농통역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제도 등은 무엇입니까?

### 2) 연구결과

- 청각장애인들이 수어통역·농통역 서비스 및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에 대해 인식하는 내용을 범주화한 결과, 34개의 개념, 9개의 하위범주, 4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됨
-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FGI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요한 시사점을 도출함 → 첫째, 일상생활 이외에 특별한 상황에 필요한 수어통역·농통역 서비스가 필요함. 둘째, 방송과 관련된 수어통역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방송이란 공공의 목적으로 전자적으로 송출되는 대중매체로서 다수의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역이 선행되어야함. 셋째, 청각장애인에게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를 위한 윤리강령이 필요함. 넷째, 청각장애인들이 적시에 수어통역·농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의 수를 확대해야함

## IV. 설문조사 결과

### 1. 수어통역사 대상 양적연구

####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 본 설문의 조사대상자는 수어통역사로 활동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 수어통역사임
- 설문조사는 한국농아인협회, 수어통역센터 등의 청각장애인통역 유관기관을 통해 2018년 6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2개월 동안 실시됨

#### 2)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

- 조사 내용은 일반적 현황, 수어통역사 업무특성과 노동조건, 수어통역사 자격요건, 수어통역사 자격취득 방법, 수어통역사 자격제도 개선의 5영역으로 분류함
- 조사 결과 156명의 수어통역사가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최종 분석에 활용됨
-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업무현황, 자격현황, 자격제도 개선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활용해 빈도 및 백분율 통계량을 산출함

#### 3) 조사결과

- 일반적 현황, 수어통역사 업무특성과 노동조건, 수어통역사 자격요건, 수어통역사 자격취득 방법, 수어통역사 자격제도 개선과 관련된 결과가 도출됨



#### 4) 시사점

- 첫째, 현장 수어통역사의 업무 분포를 통해 다양한 영역과 관련된 지식을 익히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교육·훈련이 필요함
- 둘째, 유관 단체나 기관에서는 적극적인 활동 및 프로그램을 통해 청각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수어통역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보수교육의 전문화가 필요함
- 넷째, 법률, 의료, 교육 등 전문 통역분야에 대한 수어통역 자격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청각장애인통역사 대상 양적연구

###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 본 설문조사 대상자는 청각장애인통역사로 활동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 청각장애인임
- 설문조사는 한국농아인협회, 수어통역센터 등의 청각장애인통역 유관기관을 통해 2018년 6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2개월 동안 실시됨

### 2)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

- 조사 내용은 일반적 현황, 청각장애인통역사 업무특성과 노동조건,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요건,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취득 방법,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제도 개선의 5영역으로 분류함
- 조사 결과 113명의 청각장애인통역사가 설문조사에 응답하였으며 최종 분석에 활용됨
-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업무현황, 자격현황, 자격제도 개선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활용하여 빈도 및 백분율 통계량을 산출함

### 3) 조사결과

- 일반적 현황, 청각장애인통역사 업무특성과 노동조건,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요건,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취득 방법,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제도 개선과 관련된 결과가 도출됨

### 4) 시사점

- 첫째, 청각장애인통역의 전문화를 위해 전문분야를 선정하여 보다 차별화된 훈련이나 자격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청각장애인통역사들을 위한 보충적인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해 특정 분야 혹은 전문 분야와 관련된 지식이나 교육이 필요함
- 셋째, 청각장애인통역사의 업무 능력과 청각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청각장애, 수어통역, 청각장애인통역 등에 대해 지속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함
- 넷째, 청각장애인통역사 필기·실기시험에 대해 전체적으로 현행 시험과정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하였으나 일부 과목과 난이도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V. 결론 및 제언

### 1.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활성화 방안

#### 1) 자격시험의 필기·실기시험 과목의 조정

- 전문가 FGI 및 설문조사 결과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시험의 필기·실기시험 과목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필기·실기시험 과목 중 실제 통역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과목을 연관성이 높은 과목으로 개선하거나 시험통과를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들이 시험통과에 어려운 과목을 중심으로 시험 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및 훈련 등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보다 많은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를 배출하여 자격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전문가 FGI 결과에 의하면 우선적으로 필기시험의 난이도를 조정해 다수의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를 배출하고 이후에 보수교육이나 기타 추가적인 훈련을 통해 통역 실기능력을 높이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 자격시험의 실기능력 강조

-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시험에서 필기보다 실기를 강조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시험의 경우 실기시험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필기시험을 보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청각장애인통역사 응시자들이 문어체 형태의 필기시험에 익숙하지 않아 필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기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실기의 비중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크게 실기시험 통과 후 필기시험 실시, 실기시험의 가중치 상향조정, 필기시험을 수어형태로 제시하는 방법 등이 있음

## 3) 시험횟수 증대

-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증의 활성을 위해 자격시험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할 필요가 있음

# 2.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전문화 방안

## 1) 전문 분야 자격인증 도입

-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의 업무 분포를 통해 다양한 영역과 관련된 지식을 익히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자격제도와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함

- 수어통역·농통역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격증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전문성 혹은 분야에 따라 차등화 된 자격인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법률, 의료, 종교 등 일상적인 수어통역·농통역 이외의 특수한 수어통역·농통역이 필요한 영역을 선별하여 해당 분야와 관련된 지식과 경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자격제도가 필요함
- 전문 분야 자격증 발급 기준과 관련해서는 해외의 유사한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전문 분야 발급 사례를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
- 전문 분야 자격증의 경우 추가적인 자격시험을 응시하기 보다는 전문 분야와 관련된 경력(업무 시간, 업무 연수 등)의 정도에 따라 발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선적으로 경력기준(업무시간, 업무연수 등)을 선정해야 하며 현장에서 개별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의 업무시간 및 활동영역에 대한 전산화·체계화가 병행되어야함

## 2) 전문 분야 자격증에 대한 혜택 제공

- 전문 분야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증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전문 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인센티브나 혜택이 제공되어야함
-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관련 기관의 관리자 직위에 우선 배치·채용, 전문 분야 관련 보수교육·훈련의 강사로 우선 위촉 등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여 전문 분야 통역에 대한 관심과 보상기회를 높여야함

## 3) 보수교육의 개선

-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수교육을 보다 전문화·개별화할 필요가 있음
- 전문 분야에 맞는 통역 능력을 지속적으로 함양하기 위해서는 보수교육 혹은 보수교육 인증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들의 개별 능력이나 기호에 맞는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전문 영역에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보수교육을 마련해야 함



### 3.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서비스 개선 방안

#### 1)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윤리강령 제정

- 청각장애인에게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를 위한 윤리강령이 필요함
- 수어통역·농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청각장애인의 개인적인 특성 및 활동과 관련된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청각장애인의 개인정보보호, 공적·사적 경계의 유지, 통역사의 전문성 등을 규정하는 윤리강령의 제정이 필요함
-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의 윤리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함 → 실제 현장에서 청각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윤리적 언행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 2) 방송 통역 모니터링 실시

- 방송이란 공공의 목적으로 전자적으로 송출되는 대중매체로써 다수의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역이 선행되어야함
- 방송에서 제공되는 수어통역을 평가하기 위해 수어통역 평가지를 개발하여 정기적으로 수어통역정도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
- 방송사에 수어통역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해 제공함으로써 방송사가 수어통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방송수어통역을 실시하는 수어통역사의 전문성 개발에 방송사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4.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에 대한 채용·노동환경 개선 및 인식개선

### 1)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에 대한 채용·노동환경 개선

- 청각장애인들이 적시에 수어통역·농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의 수를 확대해야함
- 지역 특성에 맞도록 청각장애인의 거주비율이 높은 지역에는 정해진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수 이상으로 통역사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재정적·법적 지원이 필요함
-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들의 업무 비중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들이 본인들의 주요 업무인 통역 서비스 제공에 치중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 및 처우를 개선해야함

### 2)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에 대한 인식개선

-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의 업무 능력과 청각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청각장애, 수어통역·농통역 등에 대해 지속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함 → 사회 전반에 걸쳐있는 청각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청각장애 관련 단체나 기관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함
-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통역 과정 중 무시당하거나 부적절한 대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의 1항 5호에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를 추가하여 법적으로 차별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수어통역)에서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들이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차별이나 불리한 대우를 당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청각장애인들이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등에 적절히 참여·이용하도록 해야 함



# I. 서론





##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으로 고혈압, 관절염과 함께 청각장애가 보고되며, 청각장애를 진단받고 등록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조운화, 김현식, 변용찬, 김태용, 2015). 2017년 장애인 통계연보에 따르면 등록장애인 2,511,051명 중 청각장애인은 271,843명(10.8%)으로 나타나며, 이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뇌병변장애 다음으로 4번째로 높은 비율이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17).

청각장애인은 구어를 사용하는데 제한되어 의사소통과 정보전달에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수어가 개발되었으며, 수어라는 언어체계를 통해 언어적·인지적인 능력발달을 통해 학습을 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비록 청각장애인들에게 자연 언어인 수어가 존재하지만 수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청인사회에서 청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데 여러 한계가 있고 사회의 전 영역에서 소수집단으로 간주되고 있다(원성옥, 2017). 특히, 농아동의 90%가 청인부모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수어를 유아기부터 자연스럽게 습득하지 못하며, 청인부모-농아동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한다. 언어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기 힘든 정서적 교감과 청인부모의 수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청각장애인들은 언어적 발달은 물론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국립국어원, 2014).

청각장애인의 사회적 불이익에 대해 연구한 이기수(2016)에 따르면 이들은 언어 및 의사소통 제한으로 인해 병원, 관공서, 경찰서, 법정, 영화관, 음식주문 등 일상 생활에서 높은 참여 장벽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법률관련 용어와 수사 관련 질문을 이해하는 능력의 제한과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낮기 때문에 범죄관련 문제발생 시 피의자로 오해받거나 강압적 수사를 받기도 한다. 또한, 청각장애인이 재판이나 수사를 받을 때 통역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서비스가 지원되더라도 전문용어에 대한 설명이 없어 판결문을 그대로 읽은 후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회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

또한, 청인부모의 수어에 대한 거부감과 인공 와우 수술에 대한 확대로 인해 어린나이부터 수어를 사용하는 것이 음성언어 습득과 사회적응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청인부모는 수어보다 구어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기도 한다. 특히, 인공 와우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됨에 따라 많은 청각장애인과 부모는 인공 와우 수술에 관심을 가지고 의사의 권유에 따라 수술을 받고 있다.

물론 인공 와우 수술을 통해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청인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것은 유익하지만 수술에 따른 긍정적인 결과와 달리 현실에서 많은 청각장애인과 청각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은 수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기도 한다(곽정란, 2010). 의료전문가들은 아동의 언어발달 시기(2-3세 전)에 따라 혹은 성인 청각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수술을 권유한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과 부모들은 인공와우에 대한 충분한 정보(예를 들어, 부작용, 수술 후 치료 및 재활, 추가비용 등)를 습득하지 못하고 의료전문가나 주변의 권유로 인해 수술을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곽정란, 2010). 곽정란(2010)의 연구에 따르면 청각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은 수어와 청각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수술을 아들에게 권하고 있다.

인공 와우 수술효과를 알아본 연구들은 수술자체보다 개인요인에 따라 수술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이명진, 최진혁, 장정훈, 이규엽, 이상훈, 2012). 이러한 연구들을 보면 인공 와우 수술로 효과를 보았다고 하는 경우도 나타나지만, 반대의 결과가 보고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수술 후 반드시 수반되는 2-3년 동안의 언어재활 훈련의 어려움, 청인사회에 진입했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참여할 수 없다는 두려움으로 인한 자존감 상실, 청각장애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 등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수술을 하기보다 농문화에 적응하여 청각장애인으로 정체성을 가지거나 이중 언어(수어와 구어)를 사용하여 두 사회 모두에 적응하려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곽정란, 2010).

이와 더불어, 국내 정부기관들과 청각장애 관련 단체들은 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고 권리보장을 위해 한국수화언어법을 제정하고 수어통역사를 양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국립국어원, 2014). 특히, 장애인복지법 내에 수어통역사 양성 및 자격관리 제도를 만들어 청각장애인의 기본권 및 정보접근권을 확보하고 자립을 촉진하고 있다(박정란, 2010; 한국농아인협회, 2018a). 지체장애인에게 휠체어가 필요하듯 수어는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한 보장구이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도구이다. 수어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보면 청각장애인 90% 이상이 사회생활 전 분야에서 수어통역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안영희, 한정우, 2015).

수어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따라 2017년 국내에서 수어통역 서비스를 받은 청각 장애인 수는 2,185,000명이며, 이 수는 200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수어통역사와 청각장애인 통역사 자격 응시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2017년 726명)하고 있으며, 수어통역 교양·자격증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수강생들도 지속적으로 증가(2014년 6,489명)하고 있다(서울수화전문교육원, 2015). 이러한 요구에 힘입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어교육은 한국농아인협회를 중심으로 수어전문교육원, 복지관, 초·중·고등학교, 대학(원), 시도 및 종교단체, 평생교육원 등을 포함한 59,000개 이상의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따르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필기 및 실기교육이 제공되고 강사 양성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수어교육과정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와 교육과정이 늘어나는 것과 함께 수어통역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농아인협회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전국에 있는 수화통역사는 2,968명(민간 693명, 국가공인 1624명, 청각장애인 통역사 651명, )이 있지만,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수는 제한적이며, 현장전문가들 모두가 수어통역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서울과 경기지역을 제외하고 행정구역당 수어통역사 수가 40명 이하로 나타나며, 제한된 전문가수로 인해 수어통역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이 저해되고 있다(한국농아인협회, 2017).

수어통역 서비스를 이용한 청각장애인들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연구들을 보면 전문가 개인의 경험과 노력에 따라 통역의 질적 차이가 나타나며, 이는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지영, 2002). 그리고 현재 수어통역교육을 받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방송, 의료, 법률, 직업 등 전문적인 통역서비스보다 일상생활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이로 인해 교육·방송·법률·문화예술 등 전문용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다년간의 현장통역 경력을 가진 수어통역사에 의해 전문적인 서비스가 부족하다(원성옥, 2017). 결국, 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수어통역사가 필요하지만, 수어통역사의 통역기술 미비와 미자격 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수어통역 전문성에 대한 의심은 물론 당사자의 욕구충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원성옥, 2017).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에 대해 탐색한 연구들을 보면 주된 문제점으로는 수어통역사와 수어강사양성과정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수 부족, 수어통역 자격 취득에도 불구하고 현장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역량부족, 자격증 여부를 떠나 전문가



개인의 경험·경력에 따라 천차만별인 수어통역의 질, 지원되는 보수교육의 체계성 부족, 수어교육과 훈련과정의 비표준화로 인한 전문가 능력 차이, 의료, 법률, 방송 등 전문영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및 강의교원 부족, 열악한 수어통역사 처우 등으로 나타난다(원성옥, 2017; 하종아, 2002). 이에 수어통역사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수어통역과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고, 수어통역사와 당사자를 기반으로 수어통역 환경의 양적·질적 증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어통역사의 역할 및 자격, 교육과 양성실태를 포함한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와 더불어 수어통역사의 수요·공급과 서비스 질 향상 방법을 논의하여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자립을 보장하는 사회적 환경을 구축하고, 수어통역관련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농통역 전문가인 청각장애인통역사의 현황 및 실태, 활성화 방안, 전문성 확보 방안 등도 함께 조사하였다.

## 2. 연구내용 및 절차

### 1) 연구내용 및 방법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와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고 활성화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인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4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첫째, 수어통역·농통역 관련 국내외 문헌수집 및 자격제도 현황분석. 둘째,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및 청각장애인 당사자 대상 질적 조사 및 분석. 셋째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대상 양적 조사 및 분석, 넷째,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활성화 방안 및 전문성 강화 방안 제시 등으로 구분된다.

1장에서는 연구 필요성과 목적, 방법 및 내용, 연구수행체계를 설명하였다.

2장에서는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양성과정 및 자격제도와 관련해 국내외 사례에 대해 조사하고 이와 유사한 자격 및 제도를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를 대상으로 통역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하였다. 또한 실제 통역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청각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당사자를 대상으로 FGI를 추가적으로 실시

하였다.

4장에서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를 대상으로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지를 통한 양적조사를 실시하였다.

5장에서는 문헌분석, FGI분석, 설문분석 등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기반으로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활성화 및 전문화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통한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의 역할 및 기능, 자격제도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조사하였고,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와 당사자 대상 FGI,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대상 설문조사, 자문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연구방법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국내·외 문헌조사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현재까지 수행된 국내외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역할, 문제점, 자격제도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의 개념, 기능,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들이 활약하고 있는 분야를 파악하였다.

### (2)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및 청각장애인 대상 FGI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통역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개선점 등에 대해 질적으로 조사하였다. FGI에 참여한 참여자는 현장에서 10년 이상 통역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써 실제 통역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등의 세부내용을 논의하였다. 또한 수어통역·농통역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청각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FGI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세부 경험에 대해 논의하였다.

### (3)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현황조사 및 활성화방안 설문조사

수어통역·농통역 서비스 현황파악, 서비스제공과 관련된 문제점,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양성과정, 자격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기 위해 수어통역



사·청각장애인통역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문항은 기본정보,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 및 양성제도, 서비스 제공의 문제점, 자격제도 개선 방안 등으로 구성하였다.

#### (4) 연구진 및 자문회의 운영

연구단계별 연구진 및 자문회의 운영을 통해 본 연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하였다. 외부연구진과 내부연구진이 모두 참석하는 연구진회의는 연구기간동안 매월 1회 개최하였다. 이러한 연구진 논의를 토대로 수어통역사 활성화 방안과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 2) 연구추진체계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의 실행과정을 <표 I-1>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표 1-1〉 추진절차





## Ⅱ. 수어통역사자격증 및 유사자격증





# 1. 수어통역사 자격제도

## 1) 국내 수어통역사 자격제도 현황

수어통역과 관련해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문 자격증으로는 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어통역사 자격증과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증이 있다. 수어통역사 자격증은 국가공인 민간자격이며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증은 민간자격으로 운영되고 있다(한국농아인협회, 2018a).

### (1) 수어통역사

#### ① 수어통역사 정의 및 역할

수어통역사는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사회참여를 위해 필요한 의사소통의 기반을 조성하며 의료, 복지, 법률, 교육, 사회, 문화 등의 전반에서 청각장애인들이 바른 권리를 행사하며 시민으로서의 균등한 기회를 갖도록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전문가이다. 청각장애인의 전반적인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청인들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국가공인 수어통역사 자격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수어통역사 자격을 획득함으로써 교육(대학, 대학원, 기타 교육 통역), 의료(병원통역), 법률(법원, 경찰 관련 통역), 미디어(뉴스, 예술 등의 방송통역), 직업(취업알선, 교육, 상담들의 직업을 위한 통역), 의식(종교, 장례식, 결혼식 등 각종행사), 민원(관공서 이용 등), 수화통역 행정(문서작성 및 관리, 전화 및 내방객 면담, 회의 및 세미나) 등의 영역에서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있다(한국농아인협회, 2018a).

#### ② 자격검정제도의 개요

수어통역사 자격제도는 크게 필기시험, 실기시험, 합격자 연수로 구분되며 장애인복지, 한국어의 이해, 청각장애인의 이해, 수어통역의 기초 영역의 기본적인 내용을 필기시험으로 검정하며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필기통역, 수어통역, 음성통역 능력을 실기시험으로 검정한다(한국농아인협회, 2018a).



〈표 11-1〉 수어통역사 필기시험 개요

응시자격	만 19세 이상의 내·외국인		
원서접수	접수기간 내에 인터넷 접수 ( <a href="http://slitt.deafkorea.com">http://slitt.deafkorea.com</a> )		
수험표 다운로드	본인이 신청한 수험장소 및 기타사항과 수험표의 기재사항의 일치 여부 확인		
시험방법	문항수	배점	문제형식
	25문항/1과목 총 100문항	4점/1문항 과목당 100점	객관식 4지선다
시험과목	장애인복지, 한국어의 이해, 청각장애인의 이해, 수어통역의 기초		
합격기준	1.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당 40점 이상 득점한 자 2. 1을 충족시킨 자로서 한국어의 이해와 수어통역의 기초가 각각 60점 이상인 자		
합격자발표	한국농아인협회 홈페이지 ( <a href="http://deafkorea.com">http://deafkorea.com</a> ) 수어통역사 시험, 교육 전문 홈페이지 ( <a href="http://slitt.deafkorea.com">http://slitt.deafkorea.com</a> )		
합격증 다운로드	접수 확인 및 합격증 발급		

〈표 11-2〉 수어통역사 실기시험 개요

응시자격	1차 필기시험 합격자
원서접수	접수기간 내에 인터넷 접수 ( <a href="http://slitt.deafkorea.com">http://slitt.deafkorea.com</a> )
시험과목	필기통역, 수어통역, 음성통역
합격기준	1.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당 40점 이상 득점한 자. 2. 1을 충족시킨 자로서 음성통역이 60점 이상인 자.
합격자발표	한국농아인협회 홈페이지 ( <a href="http://www.deafkorea.com">www.deafkorea.com</a> ) 수어통역사 시험, 교육 전문 홈페이지 ( <a href="http://slitt.deafkorea.com">http://slitt.deafkorea.com</a> )
합격증 다운로드	접수 확인 및 합격증 발급

〈표 11-3〉 수어통역사 합격자 연수 개요

응시자격	2차 실기시험 합격자
원서접수	접수기간 내에 인터넷 접수 ( <a href="http://slitt.deafkorea.com">http://slitt.deafkorea.com</a> ) 접수기간 내 우편발송 - 반명함판 사진 2매(자격증 발급용)
연수유예	2회에 한하여 합격자 연수를 연기가능 연기사유서와 증명서류를 연수일자 7일 이전에 한국농아인협회에 제출 (미제출 시 연수 연기 불가)

### ③ 보수교육의 개요

수어통역사 보수교육은 수어통역사 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농아인의 사회참여 확대에 다양해지는 수어통역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농아인의 원활한 의사소통 조력자로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수어통역사 자격 취득자는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5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은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교육 및 외부교육( 시도협회, 외부유관기관 및 단체의 운영)에 참가하여 이수할 수 있다. 단, 최소한 30시간 이상은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참가해야 한다. 또한 외부교육 참가 시, 사전에 시간 인정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5년 이내에 50시간의 보수교육을 미 이수했을 경우 자격이 정지되며, 3회 이상의 자격정지 시 자격이 취소된다(한국농아인협회, 2018a).

## (2) 청각장애인통역사

### ① 청각장애인통역사 정의 및 역할

청각장애인통역사는 문맹농인과 청인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원활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계자의 역할과 체계적인 의사소통 촉진자를 말한다. 또한 청각장애인들이 의료, 복지, 법률, 교육, 사회, 문화 등 전반에서 바른 권리를 행사하며 시민으로서의 균등한 기회를 갖도록 지원한다.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제도를 통해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사회참여를 촉진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의사소통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청각장애인으로서 통역을 행하는 자의 관련 지식 및 기능에 대해 검증한다(한국농아인협회, 2018b).

### ② 자격검정제도의 개요

청각장애인인 경우에만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크게 필기시험, 실기시험, 합격자 연수를 통해 자격증이 부여된다. 필기시험은 한국어의 이해, 통역의 기초, 일반상식이며 실기시험은 문장통역, 수어통역1, 수어통역2이다(한국농아인협회, 2018b).



〈표 II-4〉 청각장애인통역사 필기시험 개요

응시자격	만19세 이상의 청각장애인 내·외국인 (단,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청각장애인등록을 필한 자)		
원서접수	접수기간 내에 인터넷 접수 ( <a href="http://slitt.deafkorea.com">http://slitt.deafkorea.com</a> ) → 인터넷 접수 후 첨부 서류 우편발송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 2.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수험표 다운로드	본인이 신청한 수험장소 및 기타사항과 수험표의 기재사항의 일치 여부 확인		
시험방법	문항 수	배점	문제형식
	3과목/총 50문항	2점/1문항 총 100점	객관식 4지 선택형
	시험과목 : 한국어의 이해, 통역의 기초, 일반상식		
합격기준	총점 60점 이상 합격 (50문항(100점) 중 30문항(60점) 이상의 정답자)		
합격자발표	시험당일 현장 발표		
합격증 다운로드	점수확인 및 합격증 발급		

〈표 II-5〉 청각장애인통역사 실기시험 개요

응시자격	1차 필기시험 합격자			
원서접수	접수기간 내에 인터넷 접수 (반명함판 사진 첨부) ( <a href="http://slitt.deafkorea.com">http://slitt.deafkorea.com</a> ) 시험당일 합격자는 현장 접수			
시험과목	문장통역, 수어통역1, 수어통역2			
합격자발표	과목	설명	출제문항수	총점
	문장통역	화면에 제시되는 문장을 숙지한 후 수어로 나타내는 통역	장문형1, 단문형5	100
	수화통역1 (농수화통역)	화면에 제시되는 농식수화를 숙지한 후 제시된 질문에 답하는 통역	장문형1 (문5)	100
	수화통역2 (문장수화통역)	화면에 제시되는 문장식 수어를 숙지한 후 제시된 질문에 답하는 통역	장문형1 (문5)	100
합격기준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과목당 40점 이상 득점한 자			
합격자 발표	한국농아인협회 홈페이지( <a href="http://www.deafkorea.com">www.deafkorea.com</a> ) 수화통역사 시험 & 교육 전문 홈페이지( <a href="http://slitt.deafkorea.com">http://slitt.deafkorea.com</a> )			
합격증 다운로드	점수확인 및 합격증 발급			

〈표 11-6〉 청각장애인통역사 합격자 연수 개요

응시자격	2차 실기시험 합격자
원서접수	접수기간 내에 인터넷 접수 ( <a href="http://slitt.deafkorea.com">http://slitt.deafkorea.com</a> ) 접수기간 내 우편발송 - 반명함판 사진 2매(자격증 발급용)
연수유예	2회에 한하여 합격자 연수를 연기가능 연기사유서와 증명서류를 연수일자 7일 이전에 한국농아인협회에 제출 (미제출 시 연수 연기 불가)

### ③ 보수교육의 개요

청각장애인통역사 보수교육은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청각장애인통역사로서의 기본 수양 함양과 중계통역사로서의 자질을 향상시켜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 취득자는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3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은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교육 및 외부교육(시도협회, 외부유관기관 및 단체의 운영)에 참가하여 이수할 수 있다. 단, 최소한 15시간 이상은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참가해야 하며, 외부교육 참가 시, 사전에 시간 인정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5년 이내에 30시간의 보수교육을 미 이수했을 경우 자격이 정지되며, 3회 이상의 자격정지 시 자격이 취소된다(한국농아인협회, 2018b).

## 2) 국외 수어통역사 자격제도 현황

수어통역사 자격제도와 관련해 외국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자격증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수어통역의 전문성을 인지하여 통역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농아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준별 자격제도를 운영함과 동시에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성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미국, 영국, 호주의 사례를 분석하여 국외 수어통역사 자격제도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 (1) 미국 청각장애인통역등록회(Registry of Interpreters for the Deaf)

#### ① 자격증의 개요



미국 청각장애인통역등록회(Registry of Interpreters for the Deaf, RID)는 미국 내에서 청각장애인 통역을 위한 전국적 기준을 마련하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RID 자격증은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지닌 자격증으로써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통역하는 통역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검증하는 독립적인 자격이다. 일부 주에서는 수어통역을 제공할 때 유효한 RID 자격증을 소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RID, 2018).

## ② 자격검정제도의 개요

RID는 현재 전국통역사자격증(National Interpreter Certification)과 공인청각장애인통역사(Certified Deaf Interpreter) 2종류의 자격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청각장애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the Deaf)가 발급한 자격증을 인정하고 있다.

### 가. 전국통역사자격증(National Interpreter Certification)

전국통역사자격증(National Interpreter Certification, NIC)을 소지한 사람은 통역 분야와 관련해 일반적 지식, 윤리적 의사결정 기술, 통역 기술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NIC 자격증은 통역에 요구되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소지하거나 통역이나 번역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식이나 기술을 능가하는 경우에 발급된다.

본 자격증은 2005년부터 발급되었으며, NIC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객관식인 NIC 지식 시험(NIC Knowledge Exam)을 우선적으로 통과해야 한다. 18세 이상이면 NIC 지식 시험(NIC Knowledge Exam)에 응시할 수 있으며, NIC 지식 시험을 5년 내에 통과하고 RID에서 제시하는 교육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NIC 인터뷰 및 수행평가 시험(NIC Interview and Performance Exam)을 볼 수 있다. NIC 인터뷰 및 수행평가 시험(NIC Interview and Performance Exam)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한 평가로써 시험 실시 및 평가는 비디오로 녹화된다. NIC 인터뷰 및 수행평가 시험(NIC Interview and Performance Exam)을 보기 위해서는 최소 학사학위(전공은 무관) 혹은 RID에 등록된 2012년도 대체자격과정(Alternative Pathway to Eligibility) 증서를 소지해야 한다(RID, 2018).

### 나. 공인청각장애인통역사(Certified Deaf Interpreter)

공인청각장애인통역사(Certified Deaf Interpreter, CDI)을 소지한 사람은 농인 혹은 난청인으로써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농문화, 농사회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CDI 소지자는 의사소통을 원활히할 목적으로 필요한 몸짓, 손동작, 소도구, 그림, 기타 도구를 사용하는 전문 훈련과 교육을 받는다. CDI 소지자는 미국수어(American Sign Language)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 통역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본 자격증은 1998년부터 실시되었으며, 객관식 CDI 지식 시험(CDI Knowledge Exam)을 우선 통과해야 한다. 응시자는 필수 40시간 훈련을 이수하는 경우에 CDI 지식 시험(CDI Knowledge Exam)을 볼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5년 내에 지식 시험을 통과하고 RID 교육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CDI 수행평가 시험(CDI Performance Exam)을 볼 수 있다. CDI 수행평가 시험(CDI Performance Exam)은 비디오 평가로 진행된다.

CDI 지식 시험(CDI Knowledge Exam)을 보기 위해서는 다음 필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통역 훈련과 관련된 40시간 혹은 4.0 평생교육 학점 이수
- NAD-RID 윤리강령과 관련된 8시간 혹은 0.8 평생교육 학점 이수(예를 들어, 윤리적 의사결정 방법, 윤리적 행동 및 비윤리적 행동 구분 등)
- 통역과 관련된 개론 훈련 8시간 혹은 0.8 평생교육 학점 이수(예를 들어, 수어통역 개론 등)
- 통역 과정과 관련된 8시간 훈련 혹은 0.8 평생교육 학점 이수(예를 들어, 작업장에서 농아인 통역, 농인과 청인 팀 통역, 농인과 농인 팀 통역, 시청각 장애 고객을 위한 통역, 농 통역 과정, 농 통역 이론과 실제, 연속 통역, 동시 통역, 시각 통역, 시각 및 제스처 의사소통, 플랫폼 통역 등)
- 16시간 선택 훈련 혹은 1.6 평생교육 학점 이수(예를 들어, 미국수어의 언어학, 멘토십 프로그램, 통역 실습, 기타 등)

시험 응시자는 훈련 혹은 교육을 받은 기간, 장소, 담당자, 인정 학점 등을 상세히 기록해 증명을 받은 후 기타 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성적표와 함께 RID에 제출해야 한다. CDI 수행평가 시험(CDI Performance Exam) 응시자는 최소한 전문학사 학위(전공은 무관) 혹은 RID가 승인한 2012년 대체자격과정(Alternative Pathway to



Eligibility)을 소지해야 한다(RID, 2018).

다. 전국청각장애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the Deaf) 자격증

2003년부터, RID는 NAD III, NAD IV, NAD V 자격증 소지자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 자격증들은 전국청각장애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the Deaf, NAD)에 의해 1990년도 초반부터 2002년 사이에 발급되었다. NAD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은 유효한 자격증 유지를 위해 2005년 6월 30일 이전까지 RID에 등록해야 했다. 이렇게 자격증을 RID에 등록한 사람들은 자격 유지를 위해 반드시 RID의 자격증 유지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전문가 과정을 이수해야 했다(RID, 2018).

a. NAD III(일반통역사): 평균 수행 능력(Average Performance)

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평균 이상의 청어-수어 능력과 평균 정도의 수어-청어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 소지자는 일반적인 통역사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성을 최소한 보유하고 있다. 때로 단어와 구 표현은 삭제할 수 있으나 표현의 개념은 명확하게 전달한다. 또한 제2 언어의 문법 통제가 잘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명확하고 일치되지만 모든 상황에 적용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RID, 2018).

b. NAD IV(고급통역): 평균 이상 능력(Above Average Performance)

본 자격증 소지자는 우수한 청어-수어 능력을 보유하며 평균 정도의 수어-청어 능력을 갖고 있다. 모든 상황에서 평균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통역 능력은 동일하고 명확하다. 유창성은 부드러우며 거의 모든 상황에서 통역이 가능하다(RID, 2018).

c. NAD V(최고급통역): 최상급 수행(Superior Performance)

본 자격증 소지자는 우수한 청어-수어 능력과 수어-청어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수한 통역 능력을 보이며 최소한의 실수를 범한다. 거의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우수한 통역 능력을 보인다(RID, 2018).

### ③ 보수교육의 개요

RID 자격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RID 자격증 유지를 위한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RID 자격증 관리 프로그램(Certification Maintenance Program, CMP)를 충족해야 한다. CMP 보수교육 기준은 총 8.0 학점으로써 이 중 6.0은 반드시 전문과정(Professional Study)을 이수해야 하며 일반과정(General Study)은 2.0까지 이수할 수 있다. RID 자격증 소지자는 보수교육 이수를 위해 반드시 RID가 승인한 과정 혹은 단체를 통해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RID 승인 과정이나 단체는 RID 웹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다음 4가지 방법을 통해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 인가받은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 이수
- RID 승인 활동에 참여
- 참여자 중심의 비 RID 활동에 참여
- 자율학습 활동에 참여

전문과정(Professional Study)은 수어통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과정으로써 업무 환경과는 무관하게 통역이나 번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과정이다. 전문과정의 예로는 고급언어학, 고급문화연구, 인간행동, 언어-문화 역동학, 언어학 체계, 미국수어의 구조, 음성 및 형태언어분석, 사회언어학 등이다. 일반과정(General Study)은 통역사의 일반 지식과 상식을 함양하기 위한 과정으로써 반드시 합법적인 기관에서 제공되며 명확한 학습목표와 평가기준을 갖춘 과정이어야 한다. 일반과정 이수학점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총 보수교육 학점인 8.0 중 최대 2.0만 인정된다(RID, 2018).

## (2) 영국 청각 및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전문가 전국 등록협회 (National Registers of Communication Professionals working with Deaf and Deafblind People)

### ① 자격증의 개요

영국 청각 및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전문가 전국 등록협회(National Registers of Communication Professionals working with Deaf and Deafblind People, NRCPD)는 청각 및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일하는 의사소통 및 언어 전문가를 규율하여 청각 및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NRCPD는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역사, 구화 통역사, 대필사, 수어통역사, 수어번역사 등을 관리하고 있다. NRCPD에 등록된 전문가들은 NRCPD가 승인한 과목을 우수하게 이수하였고,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고객을 위해 손해배상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NRCPD, 2018).

## ② 자격검정제도의 개요

NRCPD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전문가와 관련해 2종류의 전문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가. 등록 수어통역사(Registered Sign Language Interpreter)

NRCPD는 의사소통 및 언어 전문가들을 등록시켜 청각 및 시청각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양질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NRCPD에 등록된 전문가들은 승인된 전문 과목을 우수하게 이수하여 적절한 훈련을 받았으며,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전문 자질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손해배상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 NRCPD는 오직 전문 기준을 충족하는 과목만을 승인하며 승인된 과목을 우수하게 이수한 사람만이 NRCPD에 등록된 전문가로 인정받는다. 대학 과목을 승인하기 전에 NRCPD는 과목의 내용이 전문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며 학생들이 적절히 훈련을 받는지를 조사한다.

등록 수어통역사(Registered Sign Language Interpreter, RSLI)가 되기 위해서는 영국수어(British Sign Language), 미국수어(American Sign Language) 등과 같은 수어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 2가지 언어 중 통역 자격을 반드시 1개는 소지해야 한다. 일부 대학이나 대학원의 통역 및 언어학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통역 전문 실습 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는 RSLI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울버햄튼대학(University of Wolverhampton)의 통역학 석사과정 혹은 통역학 대학원 이후 과정(Post Graduate Diploma)을 졸업한 경우에는 RSLI를 신청할 수 있다. 7IG003의 비교수용언어실습(critical reflective interpreting practice), 7IG006의 학회, 7IG004의 통역 보건의분야, 7IG005의 법률분야 과정은 RSLI를 신청할 수 있다(NRCPD, 2018).

## 나. 견습수어통역사(Trainee Sign Language Interpreter)

견습수어통역사(Trainee Sign Language Interpreter, TSLI)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제시된 NRCPD의 기준에 모두 충족해야한다. 이러한 기준을 모두 충족함으로써 TSLI로 활동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통해 안전하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a. 기준 1: 훈련 이수

등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NRCPD에서 인증한 통역사 훈련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승인된 훈련 과정 목록은 NRCPD 웹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b. 기준 2: 인증

TSLI 자격을 신청하기 전에 NRCPD의 TSLI 기준의 부합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NRCPD의 TSLI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제1언어에서 6급 능력 증명
- 제2언어에서 4급 능력 증명
- 전문 능력과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통역 지식 및 훈련의 증명
- 이러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할 수 있음을 증명

응시자는 자격을 갱신하거나 자격 심사자가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매번 NRCPD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응시자는 자격 심사 평가를 할 수 있는 RSLI로부터 평가와 인증을 받는다. 응시자가 대학에서 관련 수업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대학에 지정된 평가자로부터 평가와 승인을 받는다. 응시자의 평가 기록은 반드시 응시자와 평가자가 동시에 서명하며 응시자는 평가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 c. 기준 3: 수퍼비전

모든 TSLI는 훈련 기간 동안 반드시 수퍼비전을 받아야하며 응시자는 승인된 과목 수강 여부 혹은 승인된 발전 계획 실행 여부를 수퍼바이저로부터 수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TSLI 응시서에 응시자의 수퍼바이저의 성함을 기록해야 한다. 간혹 응시자를 평가하고 인증한 사람이 수퍼바이저가 될 수 있으나 매번 그러한 것은



아니며 TSLI는 3달에 한번 정도는 반드시 공식적으로 수퍼바이저를 만나야한다. 3달에 한번은 최소 기준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퍼바이저가 면담 회수를 늘릴 수 있고 1달에 1회 면담하는 것을 적극 장려한다. TSLI와 수퍼바이저의 면담 일자, 면담 내용 등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하며 양측이 공동으로 서명해야 한다. 만일 수퍼바이저가 TSLI가 견습 훈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을 발견하거나 혹은 TSLI가 통역을 하는데 안정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NRCPD에 통보해야 한다.

d. 기준 4: 승인된 발전 계획(Development Plan)

승인된 발전 계획(Development Plan)을 수행하고 있는 TSLI는 분기별로 계획에 제시된 목표 달성 정도를 기록해야 하며 수퍼바이저는 TSLI의 기록에 서명해야 한다.

e. 기준 5: 훈련·실습 휴식

TSLI는 훈련이나 실습으로부터 휴식을 취할 경우에는 반드시 NRCPD와 수퍼바이저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휴식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TSLI는 통역 기준을 충족하는지 재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f. 기준 6: 감사

NRCPD의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례 감사를 실시한다. TSLI는 연례 감사를 위해 다음과 관련된 정보나 문서를 보관해야 한다.

- TSLI와 수퍼바이저 간의 분기별 면담 내용
- 발전 계획(Development Plan)의 목표에 따른 TSLI의 발전 정도
- 수어통역 기준에 대한 TSLI의 평가 결과

g. 기준 7: 기타 기준

모든 TSLI는 다음 기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NRCPD의 윤리강령 준수
- NRCPD 등록을 신청 시점에서 3년 이내의 유효한 자격증 소지
- 적절한 전문가 손해배상에 가입

TSLI는 최장 4년간 NRCPD에 등록해 활동할 수 있다.

h. 기준 8: TSLI 업무의 한계

TSLI는 교정시설 혹은 정신건강 시설에서는 일 할 수 없으며 돌봄 환경에서 일을 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 일해야 한다(NRCPD, 2018).

③ 보수교육의 개요

NRCPD는 청각 및 시청각장애인에게 수준 높은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등록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유지 및 향상시키기 위해 평생전문개발(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CPD)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CPD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NRCPD에 등록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등록이 가능하다(NRCPD, 2018).

- 매년 24시간 CPD 활동 수행(최소 12시간 구조화된 활동 및 일부 비구조화된 활동 수행)
- CPD 활동의 근거자료 보관
- CPD 활동 검증을 위한 NRCPD의 요청에 동의

일반적으로 구조화된 활동은 구체적인 학습목표·목적에 따라 행해지며 비구조화된 활동은 구체적인 학습목표·목적없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세미나, 워크샵, 학회처럼 기관이나 단체가 구조화된 활동을 설계하며 구체적인 학습목표·목적을 제시한다. 비구조화된 활동은 구체적인 학습목표·목적은 표시되지 않으나 통역사의 전문성을 유지·개발할 수 있는 활동으로써 멘터링 서비스 제공, 타 통역사 코칭, 수퍼비전 제공, 사적 연구활동, 학술논문 발표 등과 같은 활동 등이다(NRCPD, 2018).

(3) 호주 전국 번역사 및 통역사 인가협회

(National Accreditation Authority for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① 자격증의 개요

호주 전국 번역사 및 통역사 인가협회(National Accreditation Authority for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NAATI)는 호주의 9개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써 각 부처에서 임명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Board of Directors)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NAATI의 주요한 임무는 호주 내에서 번역 및 통역과 관련해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발전·유지하고, 호주 지역사회 내에서 번역과 통역에 대한 변화하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 공인된 번역사와 통역사들을 개발하는데 있다. 기본적으로 NAATI는 인가 기준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써 번역사와 통역사를 위한 고도의 전문성 기준을 마련하고 촉진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다. NAATI의 주요한 업무는 호주 내에서 번역사 혹은 통역사로 일하고자 하는 전문가의 자격을 인가 및 발급하는 것이다(NAATI, 2018).

## ② 자격검정제도의 개요

호주수어(Australian Sign Language, Auslan)와 영어 통역과 관련된 NAATI 인가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 NAATI 인가 시험의 통과
- NAATI가 인증한 3차 교육기관(tertiary institution) 과목의 성공적인 이수
- 통역과 관련된 고급 통역 능력의 증명(컨퍼런스 통역사의 경우에만 해당)

NAATI의 인증 과목은 3차 번역 및 통역(tertiary translation/ interpreting) 교육으로써 학위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수준으로 고등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과정이다. NAATI가 인증한 교육 기관에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NAATI가 실시하는 추가 시험없이 NAATI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NAATI는 호주수어 통역 과목이 개설된 일부 대학 과목을 인증하고 있으며, 현재 호주수어 통역과 관련해 다음의 통역사 자격증을 운영하고 있다(NAATI, 2018).

### 가. 준전문통역사(Paraprofessional Interpreter)

준전문통역사(Paraprofessional Interpreter) 자격시험을 보기 위해서 응시자는 최소 4년의 호주 고등교육 혹은 그와 동등한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호주수어와 영어에 능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험은 약 40분간 실시되며 섹션 1: 사회적 및 문화적 인식(5점), 섹션 2: 전문가 윤리(5점), 섹션 3: 대화통역(2 × 45 = 90점)로 이루어진다. 섹션 1에서 4문항은 통역의 사회적·문화적 인식과 관련된 것으로 처음 2문항은 영어로 질문하며 영어로 답하고 나머지 2문항은 호주수어로 질문하고 호주수어로 답한다. 섹션 2에서는 전문가 윤리와 관련해 4문항이 출제되며 처음 2문항은 영어

로 질문하고 영어로 답하며 나머지 2문항은 호주수어로 질문하고 호주수어로 답한다. 섹션 3에서는 2개의 대화가 진행되며 각 대화는 약 300단어로 영어 대화자와 호주수어 사용자가 대화한다. 대화는 약 35단어를 기준으로 적절히 나뉘어져 있으며 대화 1은 연속모드로 통역해야 하며 대화 2는 동시모드로 통역해야 한다. 자격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응시자는 섹션 1에서 최소 2.5점, 섹션 2에서 최소 2.5점, 섹션 3에서 2개 대화 점수에서 최소 63점 및 각 대화에서 최소 29점, 총점인 100점에서 최소 70점을 획득해야 한다. 모든 호주수어 시험은 비디오로 녹화되며 사전을 비롯한 어떠한 참고자료는 허용되지 않는다(NAATI, 2018).

#### 나. 전문통역사(Professional Interpreter)

전문통역사(Professional Interpreter) 자격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응시자는 분이나 전공과 상관없이 학위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NAATI의 호주수어-영어 준전문통역사(Paraprofessional Interpreter) 자격을 소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험은 약 75분 실시되며 섹션 1: 지역사회 및 법률 통역과 섹션 2: 전문 및 학술 통역으로 구성된다. 섹션 1에서는 통역 대화 1문항(25점), 사회적·문화적 인식 2문항(5점), 윤리 2문항(5점), 대화와 관련된 시각번역 1문항(20점), 호주수어-영어 독백 1문항(15점)로 이루어져 있다. 섹션 2는 통역 대화 1문항(25점), 사회적·문화적 인식 2문항(5점), 윤리 2문항(5점), 영어-호주수어 독백 1문항(15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제에 출제되는 대화는 경찰대화, 법정대화, 상담, 의료대화 등 어려운 과제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독백은 판사의 최종변론, 대학교 발표문 등과 같은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자격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응시자는 사회적·문화적 인식에서 최소 5점, 윤리 영역에서 최소 5점, 대화 2개 총점이 최소 35점, 시각 번역 2개의 총점이 최소 14점, 연속지문 2개 총점이 최소 21점, 대화 통역 총점의 최소 70점을 획득해야 한다. 모든 호주수어 시험은 비디오로 녹화되며 사전을 비롯한 어떠한 참고자료는 허용되지 않는다(NAATI, 2018).

#### ③ 보수교육의 개요

NAATI는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재공인 프로그램(Recertification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재공인은 다음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 NAATI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제공되는 전문 개발 및 실제 업무 로그북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work practice logbooks) 완수
- 과거 전문 개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재공인 심사 응시
- 재공인 심사료 지불

자격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120점을 이수해야 하며 이 중 3영역 각각 최소 30점을 이수해야 하고 영역 2 중 윤리영역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영역 1은 기술 개발과 지식(Skills Development and Knowledge)으로써 통역이나 번역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과정이다. 통역학, 언어학, 언어비교, 문화적 이해, 가족폭력 등과 관련된 학회, 세미나, 워크샵 등에 참석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영역 2는 산업참여 (Industry Engagement) 과정으로 학술지 발간, 통역과 관련된 도서 출간, 학회에서 통역 관련 발표, 워크샵에서 발표, 윤리 관련 활동 등과 같은 활동이 포함된다. 영역 3은 언어유지(Maintenance of Language)으로써 통역이나 번역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NAATI, 2018).

### 3) 유사자격제도 현황

현재 장애인복지, 사회복지, 어학(통역·번역) 관련 분야 등에서 여러 전문 자격증이 운영·존재하고 있다. 장애인 관련 분야에서는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이, 어학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한국어교원, 국제통역번역사 등이 존재한다. 수어통역은 단순히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돕는 것과 더불어 언어를 전달하고 해석하고 다시 전달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언어·통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장애인복지 및 언어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중 사회복지사, 한국어교원, 국제통역번역사 등의 자격제도를 검토하여 수어통역사 자격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 (1) 사회복지사

##### ① 사회복지사 정의 및 역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를 기반으로 하여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한

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1970년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 규정으로 시작하여 1983년에 분류된 사회복지사 1급, 2급, 3급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후 1997년 사회복지교과목 이수 및 자격증과 관련된 논의를 거쳐 사회복지사 1급이 국가시험 체계로 개편되었다. 이후 사회복지관련 학과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0년 약 240여개의 4년제 및 전문대학에 사회복지학과가 설치되었으며, 사회복지전공이 개설된 관련 학과를 합하면 1,600여개에 이르며, 2016년 현재 420여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교육 공급의 확대에 의해 2010년에 약 40여 만 명, 2016년에는 86 만 명이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초기에 약 4 만 명에 달하던 수가 2010년에 9배 이상, 2016년에 21배 이상으로 증가하여 높은 양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8).

〈표 II-7〉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자 수 및 양성기관 수

구분	1급	2급	3급	합계
~2004년	5,044명	13,722명	430명	19,196명
2005년	4,421명	20,348명	585명	25,354명
2006년	5,055명	27,871명	389명	33,315명
2007년	4,445명	40,823명	284명	45,552명
2008년	9,170명	50,693명	344명	60,207명
2009년	7,286명	61,069명	223명	68,578명
2010년	9,733명	65,229명	202명	75,164명
2011년	3,635명	66,164명	193명	69,992명
2012년	9,834명	67,722명	167명	77,723명
2013년	6,060명	70,847명	180명	77,087명
2014년	6,377명	69,058명	171명	75,606명
2015년	6,783명	68,871명	194명	75,848명
2016년	9,528명	65,508명	162명	75,198명
2017년	2,667명	35,394명	27명	38,088명
합계				816,908명

출처: <https://www.data.go.kr/dataset/15003258/fileData.do>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은 <표 II-8>에 제시되어 있으며, 3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3급은 사회복지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 자격증이 발급되고 2급은 대학원·대학교·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일정 교과목을 이수한 자,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이다.<sup>1)</sup>

등급에 따른 자격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교과목)에 정의되어 있다.

<표 II-8> 사회복지사 급수 체계 및 자격기준

등급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1급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사회복지사 2급	<p>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120시간 이상)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p> <p>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p> <p>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p> <p>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p> <p>마.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p> <p>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p> <p>사. 사회복지사 3급자격증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p>

1)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

등급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3급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다.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라.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비고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의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 ② 자격검정제도의 개요

자격 관리기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관하며, 시험 관리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2호, '08.10.23.)에서 자격검정, 자격증 발급, 경력관리 등을 운영한다. 사회복지사 1급, 2급, 3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학·전문대학은 필수과목 10과목(30학점)과 선택과목 4과목(12학점)을 이수하거나 대학원에서 필수과목 6과목(18학점)과 선택과목 2과목(6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필수과목 내에는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조사론 등과 같은 실무에서 일하기 이전에 배워야 하는 이론적인 교육과 더불어, 사회복지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사회복지현장실습(120시간 이상)과목이 있다. 선택과목에는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여성·가족·산업복지·의료사회사업·학교·정신보건·교정 등 여러 사회복지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론적인 도움을 위한 다양한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8). 사회복지사 교과목과 이수과목(학점)은 <표 II-9>에 제시되어 있다.



〈표 11-9〉 사회복지사 교과목과 이수과목(학점)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대학원	대학·전문대학
필수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120시간 이상)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국가시험에 통과한 자만이 취득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1급과 달리 2급이나 3급을 취득한 자는 자격취득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승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3급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취득가능하다. 3급을 가진 자가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다면 2급으로 승급가능하다. 2급을 가진 자가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으면 1급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즉, 3급을 취득한 자가 4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으면 1급 국가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8).

〈표 II-10〉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후 승급기준

구분	대상	기준
1급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3년 이상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교과목을 이수한 학사학위자의 경우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한자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않은 석사 학위 자는 필수과목 6과목 이상(실습포함)과 선택과목 2과목을 이수한 경우
2급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이거나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취득자	3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3년 이상 혹은 대학에서 전공교과목과 관련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을 이수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 등록한 경우
3급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 이수한 경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은 2003년 4월에 처음 시행되었다. 국가 시험에 합격하고 1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아래 〈표 II-11〉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중 최소 40% 이상을 득점해야 하며,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으로 인정한다. 시험 시기는 매년 1-2월에 있으며, 연 1회 실시된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8).

〈표 II-11〉 사회복지사 시험과목 및 문항 수(배점)

과목	영역	문항	시험방법
사회복지기초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50문항	객관식 5지 선택형 (영역별 25문항 총 200문항)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75문항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75문항	



### ③ 보수교육의 개요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현장이나 학계 등 관련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변화하는 사회적 욕구와 다양화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협회는 보수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로서 자질 향상과 품위유지, 전문지식에 대한 이해도 향상, 실천현장에 적용 가능한 전문지식 습득을 목표로 실시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보수교육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제1항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가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보수교육 시간, 대상자 범위,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6).

보수교육 대상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관에 있는 시설장, 사무국장, 총무, 교사, 직원은 물론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제시한 법률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포함된다. 다음은 관련 법률에 대한 목록이다.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법률. 보수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강사 기준은 <표 II-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복지영역과 기타영역으로 나뉘어 구분되며 강의는 교수, 실무자, 공무원 등의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한다. 보수교육기관에서 주관하여 강사가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보수교육 이외에 사이버교육을 통하여 보수교육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8).

<표 II-12>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영역 및 강사 자격기준

영역	강사기준
사회복지 영역 (인권, 윤리, 정책, 실천, 행정, 조사)	- 교수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li> <li>• 사회복지학 분야 학사·석사·박사 학위 중 두 개 학위 이상 소지자</li> <li>•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인 자</li> </ul>
	- 실무자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학 분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li> <li>• 사회복지사 1급 자격취득 후 사회복지사업 현장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재직자</li> </ul>

영역	강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 :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급 이하 :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로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 5년 이상인 자</li> <li>• 5급 이상 :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로서 사회복지관련 분야 재직자</li> </ul> </li> </ul>
기타영역 (특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분야 전문가로서 관련업무 자격증 소지자</li> <li>• 특정분야 전문가로서 전문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li> <li>• 특정분야 전문가로서 관련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li> <li>• 특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li> <li>• 기타 국가기관(공공기관) 등으로 해당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자</li> </ul>

다양한 전문가들에 의해 제공되는 보수교육은 연간 8평점 이상 제공되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간 최소 8시간 이상 보수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보수교육에서 제공되는 영역은 사회복지인권,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사회복지실천이며, 각 영역에서 최소 1평점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8).

〈표 II-13〉 연간 보수교육 평점기준

유형	세부기준	평점
집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만을 교육 대상으로 구성된 교육(교육 정원 80명 이하)</li> </ul>	1시간/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관련 세미나, 워크숍 등(단, 반드시 사회복지사가 전체 인원의 80% 이상 참석해야 함)</li> <li>• 이수평점(총 8평점) 중 연간 4평점까지 인정</li> </ul>	2시간/1점
사이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시(30분 이상) 15페이지(애니메이션 컷) 이상 구성</li> <li>• 이수평점(총 8평점) 중 연간 4평점까지 인정</li> </ul>	1차시/0.5점

## (2) 한국어교원

### ① 한국어교원 정의 및 역할

2005년 1월 국어기본법이 통과되고 7월에 시행령이 발표됨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1977년 재외국민교육에 대한 규정이 있었으나, 자격부여가 된 것은 2005년부터라 할 수 있다.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대한민국



국민(이하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초·중·고등학교 교사 자격증과는 별개로, 한국어교원은 국어기본법 제19조(국어의 보급 등)에 근거한다. 한국어교원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대한민국의 언어)를 가르치는 자로 정의한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원기관은 국내외 대학 및 부설기관, 외국어로서 한국어 수업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 국내외 정부기관, 다문화가족지원 및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설 학원 등이다.

한국어교원 자격취득을 위한 제도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나타나 있으며, 한국어교원 심사횟수, 영역별 과목의 적합여부, 필수이수 학점, 심사방법, 기준 및 권한 등이 명시되어 있다.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76개 이상의 양성기관에서 19,200여명이 배출되었다. 2017년까지 자격증 취득자들의 대부분은 학위과정(24,497명)이며, 비학위과정에서도 7,6130명, 훈련·경력을 통하여 2,430여명이 자격을 취득하였다(국립국어원, 2017).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 176여개의 양성기관은 학부과정 40여개, 대학원 102개, 사이버대학 11개, 학점은행제 23개 등이다. 3개의 급수로 구분된 자격증 취득자 중 1급은 1,003명, 2급은 24,597명, 3급은 89,407명이다(국립국어원, 2018).

〈표 II-14〉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자 수 및 양성기관

구분	자격증 취득자 수	합격률	대학(원) 전공학과	단기양성기관
2006년	868명	49.49%	40곳	34곳
2007년	639명	80.89%	-	-
2008년	842명	92.53%	69곳	54곳
2009년	1,037명	95.14%	-	-
2010년	2,157명	95.95%	81곳	114곳
2011년	1,810명	94.22%	95곳	131곳
2012년	2,337명	93.82%	123곳	154곳
2013년	3,139명	92.92%	145곳	160곳
2014년	4,566명	94.46%	163곳	178곳
2015년	5,837명	96.07%	182곳	188곳
2016년	6,102명	96.80%	186곳	202곳
2017년	5,206명	97.62%	205곳	213곳
합계	34,540명	93.03%	205곳	213곳

출처: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결과(2017.11.기준)  
[http://kteacher.korean.go.kr/noti7/noti74/\\_/11088/view.do](http://kteacher.korean.go.kr/noti7/noti74/_/11088/view.do)

한국어교원 자격기준은 <표 II-15>에 제시되어 있으며, 3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3급은 학위과정에서 부전공을 한 자, 양성과정 이수 후 한국어교육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 혹은 2005년 7월 28일 이전 한국어교육 경력이 800시간 이상인 자에게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2급은 3급 자격취득 후 승급을 하거나 학위과정에 주 전공 혹은 복수전공을 한 자이다. 1급은 2급 자격 취득 후 승급한 자로 정의된다.<sup>2)</sup>

<표 II-15> 한국어교원 급수 체계 및 자격기준

등급	자격기준
한국어교원 1급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2,000시간 이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하 “한국어교육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한국어교원 2급	<p>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 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험 종류, 시험의 유효기간 및 급수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일 것</p> <p>나.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 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18학점 이상을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p> <p>다. 2005년 7월 28일 전에 「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8학점 이상을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p> <p>라. 제3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1천2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는 사람</p> <p>마. 제3호나목, 바목 및 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2천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는 사람</p>
한국어교원 3급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험 종류, 시험의 유효기간 및 급수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일 것

2) <http://www.law.go.kr/lumLsLinkPop.do?lsptrninfSe>



등급	자격기준
한국어교원 3급	<p>나.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p> <p>다.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 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10학점 이상 17학점 이하를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p> <p>라.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6학점 이상 7학점 이하를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p> <p>마.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10학점 이상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p> <p>바. 2005년 7월 28일 전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 경력이 있거나 2005년 7월 28일 전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어세계화재단에서 실시한 한국어교육 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p> <p>사. 2005년 7월 28일 전에 한국어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2005년 7월 28일 전에 그 과정에 등록하여 2005년 7월 28일 이후에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2005년 7월 28일 이후에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p>

## ② 자격검정제도의 개요

자격검정제도는 국립국어원에서 주관하며, 자격검정, 자격증 발급, 경력관리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어교원 1급, 2급, 3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어교육을 부전공하여 필수이수 21학점을 취득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대학원에서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여 필수이수 18학점을 충족한 뒤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비학위과정에 참여하여 필수이수 120시간을 수료한 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또는 한국어교육을 주 전공·복수전공하여 필수이수 45학점을 이수한 뒤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검정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자격을 가질 수 있다.

학위 및 비학위과정을 통하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수이수학점이나 이수 시간을 충족해야 한다. 이론적인 학습 이후 한국어교육실습을 통해 교사로서 실습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러한 실습은 대부분의 자격제도에 공통적으로 포함 되어 있는 영역이다. 실습은 강의 참관(실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수업에 직접 참관하며, 참관 이후 보고서나 일지를 작성하며, 담당교수는 참관 시 주의 사항을 안내함), 모의 수업(동료수강생을 대상으로 모의수업을 진행하며, 학생은 직접 교안을 작성하고 담당교수는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함), 강의 실습(한국어교육기관이나 재외동포·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직접 실시하며, 담당교수는 실습준비와 실습 후 피드백을 제공함)으로 구성된다. 한국어교원 과목과 이수학점은 <표 II-16>에 제시되어 있다(국립국어원, 2018).

<표 II-16> 한국어교원 과목과 이수학점

번호	영역	과목	대학 이수학점		대학원이수 학점	교원 양성 과정 이수 시간
			주·복수전공	부전공		
1	한국어학	국어학 개론, 한국어 음운론, 한국어 문법론, 한국어 어휘론, 한국어 의미론, 한국어 화용론, 한국어사, 한국어 어문규범	6	3	3-4	30
2	일반 언어학 응용언어학	응용 언어학, 언어학 개론, 대조 언어학, 사회 언어학, 심리 언어학, 외국어 습득론	6	3		12
3	한국어교육론	한국어 교육 개론, 한국어 교육과정론, 한국어 평가론, 언어 교수이론, 한국어 표현교육법, 한국어 이해 교육법, 한국어 발음 교육론, 한국어 문법 교육론, 한국어 어휘 교육론, 한국어 교재론, 한국 문화 교육론, 한국어 한자 교육론, 한국어 교육 정책론, 한국어 번역론	24	9	9-10	46



번호	영역	과목	대학 이수학점		대학원이수 학점	교원 양성 과정 이수 시간
			주·복수전공	부전공		
4	한국문화	한국 민속학, 한국의 현대 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 문학 개론, 전통문화 현장 실습, 한국 현대문화 비평, 현대 한국 사회, 한국 문학의 이해	6	3	2-3	12
5	실습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3	3	2-3	20
합계			45	21	18	120

1급 한국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자와 달리 2급이나 3급을 취득한 자는 자격취득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승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3급의 경우, 부전공·하양판정을 받은 자는 자격취득 후 3년간 강의를 하고, 강의시간이 1,200시간 이상인 경우 2급으로 승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교원 양성과정이나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3급을 취득한 자는 자격증 취득 후 5년간 강의를 하고 강의시간이 2,000시간 이상인 경우 2급으로 승급이 가능하다. 1급으로 승급을 위해서 2급 취득자가 5년간 강의를 하고, 강의시간이 2,00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강의 시간 1년의 기준은 한해 100시간 이상 혹은 15주 이상 강의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표 II-17〉 한국어교원 자격취득 후 승급기준

구분	대상	기준	
		자격취득 후 강의기간	강의시간 총 합산
1급 승급	2급 취득자	5년	2,000시간
2급 승급	부전공(학위) 3급 취득자	3년	1,200시간
	하향판정(학위) 3급 취득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3급 취득자	5년	2,000시간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3급 취득자		
800시간 한국어교육 경력 3급 취득자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에서 소관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다. 시험은 아래 <표 II-18>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필기시험은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을 해야 하며, 면접시험은 위원별 점수의 합계를 100으로 할 때 60점 이상 득점을 해야 합격으로 인정 한다.<sup>3)</sup>

<표 II-18> 한국어교원 시험과목 및 문항 수(배점)

시험 유형	과목	배점	문항 수	시간	시험방법
필기시험	한국어학	90점	60문항	100분	필기 (4지선다형 및 주관식)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30점	20문항		
	한국문학	30점	20문항	150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150점	93문항 (주관식 1문항)		
	합계	300점	193문항	250분	
구술시험	합격·불합격			면접	

### (3) 통역번역사

#### ① 통역번역사 정의 및 역할

통역사와 번역사는 다양한 사회의 뉴스와 정보,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원활한 의사소통과 자료교환을 위해 필수적인 외국어 번역과 통역 능력을 가지고 직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다. 특히, 대학원과정에서만 필요하던 외국어원서 이해능력이 점차 고등학교까지 낮아지고, 외국인들과 직접적인 상품구매와 판매를 위해 필요한 직장인들의 외국어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통역번역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재 통역번역과 관련된 자격증은 2015년에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어 관리를 하고 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하는 국가공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있다. 그리고 이외에 자격증은 다 민간으로 분류되어 있다. 민간자격증 중 법무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자격은 3가지이다: ① 문화관광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번역가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번역

3) kteacher.korean.go.kr/



능력인정시험(1급, 2급); ② 국제번역연맹에서의 한국대표기관인 국제통역번역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통역 및 번역 테스트(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Test, ITT) 시험(1급, 2급); ③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시행하는 결혼이민자통번역능력인증(1급)이 있다.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서류의 위임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을 수행한다. 그 이외에 민간 자격은 국가나 민간 기관에서 일하거나 외국기업이나 유학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공인 자격인 외국어번역행정사와 민간자격인 ITT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나뉘어져 있는 3가지 유형의 행정사 중 하나이다. 행정사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번역, 제출 대행,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sup>4)</sup>

2015년에 처음 시행되어 2018년 현재 6회 1차(4월), 6회 2차(7월)시험이 계획되어 있으며, 응시자격은 제한되어 있지 않다(국제통역·번역협회, 2018).

〈표 II-19〉 외국어번역행정사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자 수

구분	자격증 취득자 수
2013년	43명
2014년	74명
2015년	66명
2016년	77명
2017년	77명
합계	337명

ITT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국제통역번역협회(International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Association of Korea, IITA)는 1999년 비영리단체로 출범하여, 2009년 ITT시험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식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활동하고 있다. 이후 2013년 10월 법무부가 번역문 인정 공증제도를 지정함에 따라 전문 통역사와 전문 번역사로 활동할 수 있는 공식자격을 인정받았다. 2010년부터 삼성테크윈, 포스코엔지니어링, 현대 호텔, 대림 아이앤에스, SK하이닉스 등이 ITT자격증

4)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

을 공채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기업체 내 승진 및 인사사고과자료로 활용하고 있다.<sup>5)</sup>

## ② 자격검정제도의 개요

외국어번역행정사는 국가공인 자격으로 시험과목 및 방법은 행정사법 시행령 제 9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을 따른다. 시험은 아래 <표 II-14>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필기시험은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을 해야 하며,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해당 외국어시험은 제외 된다.<sup>6)</sup> 2차 시험에 있는 해당외국어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로 7개 언어로 제한된다. 대학에서 외국어전공학사 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외국어번역행정사 1차와 2차 시험이 면제된다. 그리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 학위를 받은 후 외국어 번역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1차 시험은 면제되고, 2차 시험은 일부만 면제된다.

시험합격 이후 실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실무교육은 행정사법 제25조(행정사의 교육)에 제시되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은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 등에 위탁하여 행정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행정사 실무교육은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기본소양교육 20시간, 실무수습교육 4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국제통역·번역협회, 2018).

<표 II-20>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과목 및 문항 수(배점)

시험유형	시험과목	문항 수	문항 수 합계	시험시간
1차 시험 (5지선택형)	1. 민법(총칙)	25문항	75문항	75분
	2. 행정법	25문항		
	3. 행정학개론 (지방자치행정 포함)	25문항		

5) <http://www.itt.or.kr/sbMn.php?pgNm=xhdtl>

6) <http://www.q-net.or.kr/>



시험유형	시험과목	문항 수	문항 수 합계	시험시간
2차 시험 (논술형)	민법(계약)	4문항 (논술1문제, 약술3문제)	8문항	100분
	행정절차론 (행정절차법 포함)	4문항 (논술1문제, 약술3문제)		
	사무관리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포함)	4문항 (논술1문제, 약술3문제)	8문항	50분
	4. 해당 외국어	4문항 (논술1문제, 약술3문제)		
	합계			

ITT 시험은 급수에 상관없이 전문수준을 의미하는 전문등급(Professional Grade)과 비즈니스수준을 의미하는 비즈니스등급(Business Grade)으로 나누어져 있다. <표 II-21>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시험은 통역과 번역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통역은 영어, 일어, 중국어, 번역은 영어, 일어, 중국어, 독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아랍어로 구성되어 있다. 시험은 통역과 번역의 특성에 따라 능숙성, 유창성, 적절성, 가족성, 논리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ITT의 기준에 따라 응시자가 통역한 내용과 번역한 내용을 듣고 기준에 따라 1급, 2급을 부여한다. 급수를 받기 위한 기준은 1급 90점, 2급 80점, 3급 7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21> ITT 시험시간 및 문제유형

구분	영역	시험시간	문항 수	평가급수	평가기준	문제유형
Professional Grade	통역	90분	5문항	1급	90점	인문사회, 경제경영, 과학기술 관련 지문 중, 외국어와 한국어 지문 통역사 직업유리문제
				2급	80점	
	번역	180분	4문항	1급	90점	인문사회, 경제경영, 과학기술 관련 지문 중, 외국어와 한국어 지문 통역사 직업유리문제
				2급	80점	

구분	영역	시험시간	문항 수	평가급수	평가기준	문제유형
Business Grade	통역	70분	12문항	1급	80점	기업직무 관련(무역, 상담, 정보, 홍보, 광고 관련) 외국어와 한국어 지문 출제
				2급	70점	
	번역	120분	15문항	1급	80점	기업직무 관련(무역, 상담, 정보, 홍보, 광고 관련) 외국어와 한국어 지문 출제
				2급	70점	
		60분	40문항	3급	70점	가장 기본적인 비즈니스 단문 한국어역과 외국어역 지문 출제

ITT에서는 시험 이외에도 특별전문자격증을 교부한다. 특별전문번역 1급자격증은 200페이지 이상의 책이나 번역물이 있는 경우, 해당언어를 강의하는 사람으로 번역 관련 논문 실적물 중 1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다. 특별전문통역 1급 자격증은 국내외에서 2년 이상 통역을 수행한 실적이나 10건 이상의 실적을 증빙할 실적 증명서(예를 들어, 통역수행증명서, 통역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중 1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다.

#### 4) 시사점

수어통역사 자격제도와 관련된 국내외 사례 및 유사 자격제도를 분석한 결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어통역사 및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제도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수어통역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격증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전문성 혹은 분야에 따라 차등화된 자격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어통역 일반과정과 전문 과정을 분류하여 차등화된 자격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수어통역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수어통역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자격증의 차등화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한국교원자격 등과 더불어 미국, 영국, 호주의 자격증의 사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8; NAATI, 2018; RID, 2018).

둘째, 법률, 의료, 종교 등 일상적인 수어통역 이외의 특수한 수어통역이 필요한 영역을 선별하여 해당 분야와 관련된 지식과 경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자격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법률이나 의료 영역과 관련된 분야에서 행해지는 농인 및 청인과의 의사소통은 정확성 및 유창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수한 영역



을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에서는 이러한 특수한 영역에 대한 자격 검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화된 수어통역사를 양성하고 있다(NAATI, 2018; RID, 2018).

셋째, 수어통역사의 윤리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보수교육 혹은 관련 시험을 활용해 수어통역사의 윤리의식을 향상시켜 실제 현장에서 농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윤리적 언행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높은 윤리적 규범은 수어통역사를 비롯해 여러 전문 자격제도에서 흔히 요구되는 전문가의 기본적인 소양으로써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8; NAATI, 2018; RID, 2018).

### Ⅲ. 전문가 및 청각장애인 포커스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분석 결과





# 1.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분석

## 1) 연구방법

수어통역사 활성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수어통역사와 청각장애인통역사를 구분하여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진행하였다. 전문가 FGI에 참여한 연구진으로는 공동연구원 1명, 한국장애인개발원 소속 연구원 2명이었으며 전체 수어통역과 음성통역을 담당한 통역사는 1명이었다.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고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통역사들을 선정하기 위해 비확률 표집방법 중에서 전문가 추천 사례방식을 활용하였다. 전문가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들은 한국농아인협회와 자문위원들로부터 추천받아 섭외하였다.

전문가 FGI는 2018년 3월 27일(화) 한국장애인개발원 7층 조사패널팀 대회의실에서 진행하였다. 1차는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2시간가량 수어통역사 3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2차는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청각장애인통역사 4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별 특성은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성명	성별	연령	경력	직위	비고
1	A	여	50대	32년	과장	수어통역사
2	B	남	40대	22년	과장	
3	C	여	40대	15년	과장	
4	D	남	40대	20년	대리	청각장애인 통역사
5	E	남	40대	20년	대리	
6	F	여	30대	8년	사원	
7	G	여	40대	17년	주임	

연구를 위한 질문으로는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관한 항목과 함께 크게 4개 영역으로 제시되었다.



- 첫째, 수어통역과 관련하여 현재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둘째, 수어통역사 자격제도에 관해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셋째, 수어통역사 자격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그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넷째, 전문 수어통역사 자격제도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 연구결과

수어통역사 활성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전문가 FGI 분석결과를 각 그룹별로 범주화하여 정리하면 <표 Ⅲ-2>, <표 Ⅲ-3>과 같다.

수어통역사들이 인식하는 수어통역 및 수어통역사 자격제도에 대한 내용을 범주화한 결과, 28개의 개념, 9개의 하위범주, 4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

<표 Ⅲ-2> 수어통역사 FGI 범주화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수어통역사의 현실	수어통역 인력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어통역사 수</li> <li>• 현장에서 수어통역사 채용이 쉽지 않은 현실</li> </ul>
	수어통역사 근무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어통역사들이 수어통역에 집중하기 어려운 근무 환경</li> <li>• 과도하게 주어지는 농어인협회 관련 업무</li> <li>• 수어통역보다 행정업무에 매이는 현실</li> </ul>
	수어통역의 수준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어를 잘하는 수어통역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li> <li>• 수어통역사별로 수어통역 수준 차이가 크게 발생</li> </ul>
현 수어통역사 자격제도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공인 수어통역사에서 국가공인 수어통역사로 제도가 변경되는 단계에서 민간공인 수어통역사에 대한 배려가 없었음</li> <li>• 보수 교육의 비효율적 운영</li> <li>• 수준별·경력별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되는 보수 교육</li> </ul>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증 취득 후 별도의 인턴십 과정 필요</li> <li>• 일정기간의 인턴십 과정 이수 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li> <li>• 수어통역사 양성과정 운영 및 확대 필요</li> <li>• 수어통역사 수준별/경력별 교육과정 필요</li> </ul>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전문 수어통역사 제도	전문 수어통역사 양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인의 삶 전 영역에 걸쳐서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있어 특화된 분야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li> <li>• 수어통역사의 실력과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수어통역사 자격증이 유일함</li> <li>• 생명 및 인권과 직결된 의료(병원통역), 법률(법원, 경찰 관련 통역) 영역을 전문적으로 통역할 수 있는 수어통역 인력 필요</li> <li>• 특수 분야 통역에 특별히 요구되는 전문성</li> <li>• 전문성을 인증할 수 있는 자격제도 필요</li> <li>• 도입은 찬성하지만 적절한 처우와 보상 연결 필요</li> </ul>
	자격급수에 대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급/2급 또는 1급/2급/3급 등 단계별 운영이 필요할 수 있음</li> <li>• 급수 구분에 따른 차등적인 적용이 없는 급수 구분은 실효성이 없음</li> </ul>
	현 제도로 충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수어통역사 자격제도에 장점도 많이 있음</li> <li>• 국가공인 자격증이라는 점 자체가 중요함</li> <li>• 현행 제도를 통해서 더 많은 수어통역사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장으로 투입 필요</li> </ul>
개선방향	농인 서비스 대상자의 필요를 채우는 수어통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어통역사 수 확대 필요</li> <li>• 수어통역센터 인력 확충 필요</li> <li>• 새로운 자격제도 시행 시 기존의 수어통역사에 대한 배려 필요</li> </ul>

청각장애인통역사들이 인식하는 수어통역 및 수어통역사 자격제도에 대한 내용을 범주화한 결과, 19개의 개념, 7개의 하위범주, 4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

〈표 III-3〉 청각장애인통역사 FGI 범주화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청각장애인 통역사의 현실	절대적인 인력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각 수어통역센터에 청각장애인통역사가 1명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함</li> </ul>
	근무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량 자체가 과다함</li> <li>• 주업무인 통역보다는 농이인협회와 관련된 일을 주로 수행하는 현실</li> <li>• 농인들과의 상담에 에너지와 시간이 많이 소요됨</li> <li>• 농인복지 차원의 업무가 많음</li> </ul>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현 청각장애인 통역사 자격제도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어를 아무리 잘해도 필기시험에서부터 어려움 발생</li> <li>• 수어를 잘하는 농인은 합격하지 못하고 구화를 잘 하는 구화인이 주로 합격하는 현실</li> <li>• 수어를 잘 하지 못하는 구화인이 자격 취득 후 센터에서 수어를 배우는 현상 발생</li> <li>• 제일 큰 어려움은 청각장애인통역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정체성임</li> <li>• 관의 물이해가 늘 대두됨</li> <li>• 청인 수어통역사와의 갈등 발생</li> </ul>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기시험 비중을 최소화</li> <li>• 구화인이 아니라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필기시험에 대한 보완책 필요</li> <li>• 청인 수어통역사와의 긴밀한 교류협력을 위한 슈퍼비전 체계 필요</li> <li>• 광역센터 차원에서 청각장애인통역사와 청인 통역사 간의 관계 유지를 위한 지원 필요</li> </ul>
전문 수어통역사 제도	전문 수어통역사 양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통역보다는 응급상황통역에 더 비중을 둘 수 있도록 조정 필요</li> </ul>
	자격급수에 대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금 상황에서 급수 구분은 특별히 필요치 않음</li> </ul>
개선방향	새로운 역할과 기능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병원통역), 법률(법원 경찰 관련 통역)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현장의 경우 정확한 통역을 위해 청인 수어통역사와의 공동통역 필요</li> <li>• 청각장애인통역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심도 있는 모색</li> </ul>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제도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공통으로 전문 분야에 대한 통역 서비스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기존의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제도는 일상적인 통역에 집중하고 있어 법률(경찰, 재판 포함), 의료, 교육, 방송 등 특정 전문분야와 관련된 통역사의 능력이나 자질을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전문분야와 관련된 통역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둘째,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시험에서 필기보다 실기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시험의 경우 실기시험을 우선적으로 실시하

고 필요한 필기시험을 보도록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통역 서비스의 핵심은 단순한 통역지식, 사회복지 관련 지식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통역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실기를 통한 기초 통역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증의 활성을 위해 자격시험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격시험 응시 기회를 높여 다수의 응시자가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수교육을 보다 전문화·개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문 분야에 맞는 통역 능력을 지속적으로 함양하기 위해서는 보수교육 혹은 보수교육 인증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들의 개별 능력이나 기호에 맞는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전문 영역에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보수교육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들의 업무 비중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들이 본인들의 주요 업무인 통역 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 및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예산 확충, 근로여건 개선 등 다양한 측면의 지원이 요구되며 청각장애 관련 단체나 기관이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근로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 2. 청각장애인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분석

### 1) 연구방법

수어통역사와 청각장애인통역사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한 후 수어통역·농통역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FGI를 실시하였다.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FGI에서는 수어통역·농통역을 직접 이용한 경험을 기초로 수어통역·농통역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점,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의 자질, 기타 수어통역·농통역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청각장애인 FGI에 참석한 참여자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소속 연구원 2명, 청각장애인 6명, 수어통역사 2명이었다.

청각장애인 중 연구목적에 부합하고 수어통역·농통역 서비스와 관련해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비확률 표집방법 중에서 전문가 추천 사례방식을 활용하였다. 한국농아인협회, 공동연구원, 자문위원 등으로부터 연구목적에 맞는 참여자를 추천받아 섭외하였다.

청각장애인 FGI는 2018년 8월 20일(월) 한국장애인개발원 7층 조사패널팀 대회 의실에서 진행하였다. FGI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었으며 자료 수집이 포화되는 단계까지 회의가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참여자 특성은 <표 III-4>와 같다.

<표 III-4> 청각장애인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성명	성별	연령	직위
1	A	남	40대	이사
2	B	남	30대	학생
3	C	여	30대	학생
4	D	남	50대	프리랜서
5	E	남	40대	이사
6	F	남	30대	대표이사

연구를 위한 질문은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관한 항목과 함께 4개의 영역으로 제시되었다.

첫째, 수어통역·농통역 서비스를 언제 주로 이용하십니까?

둘째, 수어통역·농통역 서비스에 만족 혹은 불만족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그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넷째, 수어통역·농통역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제도 등은 무엇입니까?

## 2) 연구결과

수어통역사 활성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청각장애인 FGI 분석결과를 범주화하여 정리하면 <표 III-5>와 같다. 청각장애인들이 수어통역·농통역 서비스

및 수어통역사Ⅲ 청각장애인통역사에 대해 인식하는 내용을 범주화한 결과, 34개의 개념, 9개의 하위범주, 4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

〈표 Ⅲ-5〉 청각장애인 FGI 범주화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수어통역 서비스 개선	전문 분야 수어통역 절실	병원 이용할 때 주로 서비스 이용 8시간 교육 세미나에 참여할 경우 통역 서비스 필요 대학원 수업에 맞는 통역 필요 경찰서에 갈 경우 전문 통역이 필요 금융 관련 업무(대출, 계좌 개설 등)에 통역 필요
	방송 통역의 검증 시급	방송 통역이 부적절한 경우 발생 방송 통역을 주기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 통역사 인력 충원	각 지역에 맞게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배치 통역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 무학, 선천 청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장애인통역사 추가 배치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는 통역사 필요
수어통역사 자질 함양	현장에 적용할 윤리강령 필요	청각장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 청각장애인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 통역 중 중간에서 의미를 왜곡
	통역사의 능력 함양	실질적인 수어통역 능력이 부족 필기에 치중해 실제 통역 능력이 미흡 일상적인 통역에만 치중해 전문 통역이 부족 자격증 취득 후 현재에 안주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 통역사 자격제도 개선	수어통역사 자격증 제도의 문제점	필기보다는 실기에 중점을 두어 능력 검증 필기도 실기처럼 수어로 질문하고 응답 인터뷰를 강화해 실기 능력 검증
	보수교육의 내실화 필요	확실적인 보수교육 불필요 농문화와 통역 실기에 초점을 둔 보수교육 절실 통역에 능숙한 강사 섭외 필요 전문 분야 통역과 관련된 내용을 보수교육에 적극 추가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 통역사의 활성화 및 전문화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 통역사의 활성화	자격시험을 연 2회 이상 확대 자격증은 기초지식 보유자에게 발급하고 이후 교육을 강화 청각장애인통역사의 경우 필기보다 실기를 먼저 실시 통역사의 실기 능력에 집중 일상생활에 불필요한 과목은 수정 혹은 전면 보완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 통역사의 전문화	내실있는 보수교육 구성 및 실시 미국이나 외국처럼 자격증을 1급, 2급 등으로 분리 자격증에 특정 전문분야 표기 추가 자격 혹은 업무 경력으로 전문분야 인정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FGI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일상생활 이외에 특별한 상황에 필요한 수어통역·농통역 서비스가 필요하다. FGI 참석자 전원은 법률, 의료, 교육, 행정 등 특수한 상황에 맞는 수어통역·농통역 능력을 갖춘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를 요구하였다. 특히 법률, 의료, 교육 등과 같은 분야는 청각장애인의 일상활동과 긴밀히 연관되어있어 이러한 분야와 관련된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며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증을 소지한 통역사들이 전문 분야와 관련된 통역 기술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방송과 관련된 수어통역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방송이란 공공의 목적으로 전자적으로 송출되는 대중매체로써 다수의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역이 선행되어야 한다. 방송의 독특한 목적 및 파급력을 감안한다면 정기적으로 방송 매체에서 제공되는 수어통역 서비스의 적합성·적절성 등을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청각장애인에게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를 위한 윤리강령이 필요하다. 윤리강령이란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지침으로써 변호사, 상담사, 교사,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종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수어통역·농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청각장애인의 개인적인 특성 및 활동과 관련된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청각장애인의 개인정보보호, 공적·사적 경계의 유지, 통역사의 전문성 등을 규정하는 윤리강령의 제정이 필요하다.

넷째, 청각장애인들이 적시에 수어통역·농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의 수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도록 청각장애인의 거주비율이 높은 지역에는 정해진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수 이상으로 통역사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재정적·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 IV. 설문조사 결과





## 1. 수어통역사 대상 양적연구

###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설문지의 조사대상자는 수어통역사로 활동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 수어통역사이다. 설문조사는 한국농아인협회, 수어통역센터 등의 청각장애인통역 유관기관을 통해 2018년 6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2개월 동안 실시되었다. 설문은 담당기관 또는 지회 담당자의 협조로 수어통역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응답이 완료된 설문지는 취합 후 본원으로 발송되었다.

### 2)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

조사 설문지는 자문회의, 연구진 회의, 수어통역사 대상 FGI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반적 현황, 수어통역사 업무특성과 노동조건, 수어통역사 자격요건, 수어통역사 자격취득 방법, 수어통역사 자격제도 개선의 5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영역별 세부 문항은 [부록 1]과 같다.

조사 결과 156명의 수어통역사가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업무현황, 자격현황, 자격제도 개선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활용해 빈도 및 백분율 통계량을 산출하였다. 통계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4 version을 사용하였다.

### 3) 조사결과

#### (1) 일반적 현황

본 연구에 참여한 수어통역사는 156명이었다. 이 중 여성이 124명(79.5%), 남성이 30명(19.2%)이었다. 연령은 40-49세가 68명(43.6%), 30-39세가 45명(28.8%), 50세 이상이 24명(15.4%), 20-29세가 18명(11.5%)이었다.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가 42명(26.9%), 서울특별시가 30명(19.2%)로 주로 수도권에 거주하였으며, 강원도가 16명(10.3%), 광주광역시가 11명(7.1%), 충청남도가 9명(5.8%),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전광역시, 전라남도가 각각 6명(3.8%),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충청북



도가 각각 5명(3.2%), 제주특별자치도가 4명(2.6%), 인천광역시가 3명(3.8%) 전라북도가 1명(0.6%)으로 조사되었다. 참여자의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중퇴 포함)이 83명(53.2%), 전문대학 졸업(중퇴 포함)이 35명(22.4%), 대학원 석사 졸업(수료 포함)이 28명(17.9%), 고등학교 졸업(중퇴 포함), 대학원 박사 졸업(수료 포함)이 각각 4명(2.6%)이었다.

〈표 III-6〉 수어통역사 기본 인적사항

구분		인원(명)	비율(%)
성별	남	30	19.2
	여	124	79.5
	합계	154	98.7
	결측값	2	1.3
	합계	156	100.0
연령	20-29세	18	11.5
	30-39세	45	28.8
	40-49세	68	43.6
	50세 이상	24	15.4
	합계	155	99.4
	결측값	1	.6
	합계	156	100.0
거주지역	강원도	16	10.3
	경기도	42	26.9
	경상남도	6	3.8
	경상북도	6	3.8
	광주광역시	11	7.1
	대구광역시	5	3.2
	대전광역시	6	3.8
	부산광역시	5	3.2
	서울특별시	30	19.2
	인천광역시	3	1.9
	전라남도	6	3.8
	전라북도	1	.6

구분		인원(명)	비율(%)
	제주특별자치도	4	2.6
	충청남도	9	5.8
	충청북도	5	3.2
	합계	155	99.4
	결측값	1	.6
	합계	156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중퇴 포함)	4	2.6
	전문대학 졸업(중퇴 포함)	35	22.4
	대학교 졸업(중퇴 포함)	83	53.2
	대학원 석사 졸업(수료 포함)	28	17.9
	대학원 박사 졸업(수료 포함)	4	2.6
	합계	154	98.7
	결측값	2	1.3
	합계	156	100.0

수어통역 관련 경력으로는 10년 이상이 60명(38.5%)으로 가장 많았으며, 5년 이상-10년 미만이 56명(35.9%), 1년 이상-5년 미만이 35명(22.4%), 1년 미만이 4명(2.6%)이었다. 현재 활동하는 곳으로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수어통역센터, 복지관 등) 종사가 123명(78.8%), 사회복지 관련 단체(한국농아인협회 등) 종사가 18명(11.5%), 프리랜서가 3명(1.9%), 수어 상담 및 통신중계서비스 관련 기관(금융기관, 107, 110, 120등) 종사가 3명(1.9%), 공공기관(공무원 등) 종사가 1명(0.6%), 학교 등 교육기관 종사가 1명(0.6%)이었다. 참여자의 직위를 살펴보면 실무급(사원/대리)이 93명(59.6%), 중간관리급(과장/팀장)이 38명(24.4%), 상위관리급(부장/국장)이 14명(9.0%), 프리랜서가 6명(3.8%), 기타가 2명(1.3%), 기관장급(관장/시설장)이 1명(0.6%)이었다. 수어통역사 자격응시 이유로는 업무상 필요해서가 99명(63.5%), 자기개발을 위해서가 22명(14.1%),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가 13명(8.3%), 수어통역 관련 학과를 졸업해서가 10명(6.4%), 기타가 4명(2.6%)이었다.



〈표 III-7〉 수어통역사 직무 관련 인적사항

	구분	인원(명)	비율(%)
수어통역 관련 경력	1년 미만	4	2.6
	1년 이상 ~ 5년 미만	35	22.4
	5년 이상 ~ 10년 미만	56	35.9
	10년 이상	60	38.5
	합계	155	99.4
	결측값	1	.6
	합계	156	100.0
현재 활동하는 곳	학교 등 교육기관 종사	1	.6
	사회복지 관련 기관(수어통역센터, 복지관 등) 종사	123	78.8
	사회복지 관련 단체(한국농아인협회 등) 종사	18	11.5
	공공기관(공무원 등) 종사	1	.6
	수어 상담 및 통신중계서비스 관련 기관(금융기관, 107, 110, 120등) 종사	3	1.9
	프리랜서	3	1.9
	합계	149	95.5
	결측값	7	4.5
합계	156	100.0	
참여자의 직위	기관장급(관장/시설장)	1	.6
	상위관리급(부장/국장)	14	9.0
	중간관리급(과장/팀장)	38	24.4
	실무급(사원/대리)	93	59.6
	프리랜서	6	3.8
	기타	2	1.3
	합계	154	98.7
	결측값	2	1.3
합계	156	100.0	
수어통역사 자격응시 이유	업무상 필요해서	99	63.5
	자기개발을 위해서	22	14.1
	수어통역 관련 학과를 졸업해서	10	6.4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13	8.3
	기타	4	2.6
	합계	148	94.9
	결측값	8	5.1
	합계	156	100.0

전공에 대해서는 중복응답을 하였으며 참여자 중 사회복지 전공자가 102명(47.2%), 기타1이 49명(22.7%), 수어통역이 45명(20.8%), 수어교육이 7명(3.2%), 기타2가 5명(2.3%), 직업재활이 4명(1.9%), 특수교육이 3명(1.4%), 직업상담이 1명(0.5%)으로 조사되었다. 자격증 소지 여부도 중복응답을 하였으며 수어통역사 자격증 소지자가 143명(41.8%), 사회복지사가 126명(36.8%), 보육교사가 36명(10.5%), 기타1이 24명(7.0%), 심리상담사가 7명(2.0%), 기타2가 6명(1.8%)이었다.

〈표 III-8〉 수어통역사 전공 및 자격증 현황

구분		인원(명)	비율(%)	케이스 중 비율(%)
수어통역사 전공 현황	수어통역	45	20.8%	29.4%
	수어교육	7	3.2%	4.6%
	사회복지	102	47.2%	66.7%
	특수교육	3	1.4%	2.0%
	직업재활	4	1.9%	2.6%
	직업상담	1	0.5%	0.7%
	기타1	49	22.7%	32.0%
	기타2	5	2.3%	3.3%
	합계	216	100.0%	141.2%
수어통역사 자격증 현황	수어통역사	143	41.8%	92.9%
	사회복지사	126	36.8%	81.8%
	보육교사	36	10.5%	23.4%
	심리상담사	7	2.0%	4.5%
	기타1	24	7.0%	15.6%
	기타2	6	1.8%	3.9%
	합계	342	100.0%	222.1%

## (2) 수어통역사 업무특성과 노동조건

현재 주 업무 영역에 대해서 중복응답 한 결과 일상생활 지원을 포함하는 단순 통역 업무에 148명(12.1%), 의료 관련 통역 업무에 134명(11.0%), 교육 관련 통역 업무에 127명(10.4%), 수어통역 행정(문서작성, 회의) 관련 통역 업무에 125명(10.2%), 직업(취업알선, 취업지도) 관련 통역 업무, 재활서비스(상담, 복지) 관련



통역 업무에 120명(9.8%), 법률 관련 통역 업무에 119명(9.7%)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여가(문화활동, 예술) 관련 통역 업무에 114명(9.3%)이었다. 종교 및 의식(결혼식) 관련 통역 업무에는 108명(8.8%), 방송(미디어) 관련 통역 업무에는 106명(8.7%)이 응답하였다.

〈표 III-9〉 수어통역사 주 업무 영역

구분		인원(명)	비율(%)	케이스 중 비율(%)
수어통역사 주 업무 영역	일상생활 지원을 포함하는 단순 통역 업무	148	12.1%	96.1%
	교육 관련 통역 업무	127	10.4%	82.5%
	법률 관련 통역 업무	119	9.7%	77.3%
	의료 관련 통역 업무	134	11.0%	87.0%
	방송(미디어) 관련 통역 업무	106	8.7%	68.8%
	종교 및 의식(결혼식) 관련 통역 업무	108	8.8%	70.1%
	재활서비스(상담, 복지) 관련 통역 업무	120	9.8%	77.9%
	여가(문화활동, 예술) 관련 통역 업무	114	9.3%	74.0%
	직업(취업알선, 취업지도) 관련 통역 업무	120	9.8%	77.9%
	수어통역 행정(문서작성, 회의) 관련 통역 업무	125	10.2%	81.2%
	합계	1221	100.0%	792.9%

참여자를 대상으로 업무 수행 시 가장 힘든 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 1순위로는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식 부족이 53명(34.0%), 수어통역사로서 자신의 능력 부족이 48명(30.8%), 청각장애에 대한 인식 부족이 25명(16.0%), 수어통역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낮은 신뢰가 15명(9.6%), 기타가 10명(6.4%), 수어통역사들 간 신뢰 부족이 1명(0.6%)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로는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식 부족이 51명(32.7%), 수어통역사로서 자신의 능력 부족이 31명(19.9%), 청각장애에 대한 인식 부족이 30명(19.2%), 수어통역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낮은 신뢰가 27명(17.3%), 수어통역사들 간 신뢰 부족이 5명(3.2%), 기타가 4명(2.6%)이었다.

〈표 III-10〉 수어통역사 업무 수행 시 가장 힘든 점

구분		인원(명)	비율(%)
수어통역사 업무 수행 시 가장 힘든 점 1순위	수어통역사로서 자신의 능력 부족	48	30.8
	수어통역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낮은 신뢰	15	9.6
	청각장애에 대한 인식 부족	25	16.0
	수어통역사들 간 신뢰 부족	1	.6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식 부족	53	34.0
	기타	10	6.4
	합계	152	97.4
	결측값	4	2.6
	합계	156	100.0
수어통역사 업무 수행 시 가장 힘든 점 2순위	수어통역사로서 자신의 능력 부족	31	19.9
	수어통역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낮은 신뢰	27	17.3
	청각장애에 대한 인식 부족	30	19.2
	수어통역사들 간 신뢰 부족	5	3.2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식 부족	51	32.7
	기타	4	2.6
	합계	148	94.9
	시스템	8	5.1
	합계	156	100.0

### (3) 수어통역사 자격요건

수어통역사로 일하기 위해 적합한 전공에 대해 중복응답을 한 결과 수어통역 관련 전공이 125명(23.9%), 사회복지 관련 전공이 108명(20.6%)이고, 수어교육 관련 전공이 81명(15.5%), 심리/상담 관련 전공이 74명(14.1%), 행정 관련 전공이 41명(7.8%), 특수교육 관련 전공은 26명(5.0%), 보건/의료 관련 전공이 23명(4.4%), 전공 무관이 20명(3.8%), 직업 관련 전공이 16명(3.1%), 교육 관련 전공(특수교육 제외)이 10명(1.9%) 순으로 제시하였다.



〈표 III-11〉 수어통역사로 일하기 위한 적합 전공

구분		인원(명)	비율(%)	케이스 중 비율(%)
수어통역사 로 일하기 위한 적합 전공	수어통역 관련 전공	125	23.9%	81.2%
	수어교육 관련 전공	81	15.5%	52.6%
	사회복지 관련 전공	108	20.6%	70.1%
	특수교육 관련 전공	26	5.0%	16.9%
	심리/상담 관련 전공	74	14.1%	48.1%
	보건/의료 관련 전공	23	4.4%	14.9%
	교육 관련 전공(특수교육 제외)	10	1.9%	6.5%
	행정 관련 전공	41	7.8%	26.6%
	직업 관련 전공	16	3.1%	10.4%
	전공무관	20	3.8%	13.0%
	합계	524	100.0%	340.3%

수어통역을 위해 필요한 교육수준으로는 대학교 졸업이 63명(40.4%), 전문대학 졸업이 44명(28.2%), 고등학교 졸업이 28명(17.9%), 대학원 졸업과 기타가 8명(5.1%)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와 더불어 추가적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94명(60.3%), 필요하다가 48명(30.8%), 잘 모르겠다가 6명(3.8%), 필요 없다가 5명(3.2%)으로 거의 대다수가 추가적인 교육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표 III-12〉 수어통역사 업무 수행 시 필요한 교육수준

구분		인원(명)	비율(%)
수어통역사 업무 수행 시 필요한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28	17.9
	전문대학 졸업	44	28.2
	대학교 졸업	63	40.4
	대학원 졸업	8	5.1
	기타	8	5.1
	합계	151	96.8
	결측값	5	3.2
	합계	156	100.0

구분		인원(명)	비율(%)
수어통역사 업무 수행 시 추가적인 교육의 필요성	필요 없다	5	3.2
	필요하다	48	30.8
	매우 필요하다	94	60.3
	잘 모르겠다	6	3.8
	합계	153	98.1
	결측값	3	1.9
	합계	156	100.0

수어통역사 자격증 취득 후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에 대해서 중복응답을 한 결과 전문 통역분야에 대한 수어통역교육을 128명(38.1%), 전문 통역분야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교육을 75명(22.3%), 농인사회 이해를 위한 교육을 70명(20.8%), 전반적인 업무를 이해하기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63명(18.8%)이 표시하여 전문 수어통역에 대한 추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표 III-13〉 수어통역사로 일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구분		인원(명)	비율(%)	케이스 중 비율(%)
수어통역사 로 일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농인사회 이해를 위한 교육	70	20.8%	45.8%
	전문 통역분야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교육	75	22.3%	49.0%
	전문 통역분야에 대한 수어통역교육	128	38.1%	83.7%
	전반적인 업무를 이해하기 위한 오리엔테이션	63	18.8%	41.2%
	합계	336	100.0%	219.6%

통역현장 배치기준에 대한 응답으로는 현장 경력에 따라서가 69명(44.2%), 수어통역 자격증 유무에 따라서가 44명(28.2%), 기타가 22명(14.1%), 직무분석이나 인성/적성검사에 따라서가 5명(3.2%), 대학 전공에 따라서가 2명(1.3%)로 나타났다.



〈표 III-14〉 수어통역사 현장 배치기준

구분		인원(명)	비율(%)
수어통역사 현장 배치기준	수어통역 자격증 유무에 따라서	44	28.2
	대학 전공에 따라서	2	1.3
	현장 경력에 따라서	69	44.2
	직무분석이나 인성/적성검사에 따라서	5	3.2
	기타	22	14.1
	전체	142	91.0
	결측값	14	9.0
	전체	156	100.0

수어통역 분야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응답한 결과 중 1순위로는 수어통역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가 29명(18.6%), 농인과 수어통역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가 26명(16.7%), 지역 수어통역센터 확대와 수어통역사 정원이 증원되어야 한다가 24명(15.4%), 수어통역 수당이 현재보다 높아져야 한다가 19명(12.2%), 수어통역사가 취업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하여 취업기회를 넓혀야 한다가 5(6.4%), 수어통역사 수가 늘어나야 한다가 10명(6.4%), 와 수어통역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가 각 12명(15.4%), 수어통역사 수가 늘어나야 한다와 수어통역이 활동보조제도와 같이 바우처 사업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가 4명(5.1%), 청인/농인 수어통역사 간 이해를 높여야 한다가 3명(3.8%), 수어통역사를 위한 보수교육이 다양화되어야 한다와 기타가 1명(1.3%)으로 조사되었다. 2순위로는 수어통역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가 16명(20.5%), 수어통역사가 취업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하여 취업기회를 넓혀야 한다가 10명(12.8%), 수어통역사를 위한 보수교육이 다양화되어야 한다와 지역 수어통역센터 확대와 수어통역사 정원이 증원되어야 한다가 8명(10.3%), 수어통역 수당이 현재보다 높아져야 한다와 농인과 수어통역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가 7명(9.0%), 청인/농인 수어통역사 간 이해를 높여야 한다가 5명(6.4%), 수어통역사 수가 늘어나야 한다가 4명(5.1%), 수어통역이 활동보조제도와 같이 바우처 사업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가 2명(2.6%)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15〉 수어 통역 분야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구분		인원(명)	비율(%)
수어 통역 분야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1순위	수어통역사 수가 늘어나야 한다.	10	6.4
	수어통역 수당이 현재보다 높아져야 한다.	19	12.2
	수어통역사를 위한 보수교육이 다양화되어야 한다.	4	2.6
	청인/농인 수어통역사 간 이해를 높여야 한다.	8	5.1
	수어통역이 활동보조제도와 같이 바우처 사업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4	2.6
	수어통역사가 취업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하여 취업기회를 넓혀야 한다.	12	7.7
	수어통역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29	18.6
	지역 수어통역센터 확대와 수어통역사 정원이 증원되어야 한다.	24	15.4
	농인과 수어통역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26	16.7
	기타	1	.6
	전체	137	87.8
	결측값	19	12.2
	전체	156	100.0
	수어 통역 분야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2순위	수어통역사 수가 늘어나야 한다.	10
수어통역 수당이 현재보다 높아져야 한다.		14	9.0
수어통역사를 위한 보수교육이 다양화되어야 한다.		15	9.6
청인/농인 수어통역사 간 이해를 높여야 한다.		8	5.1
수어통역이 활동보조제도와 같이 바우처 사업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5	3.2
수어통역사가 취업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하여 취업기회를 넓혀야 한다.		20	12.8
수어통역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32	20.5
지역 수어통역센터 확대와 수어통역사 정원이 증원되어야 한다.		16	10.3
농인과 수어통역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16	10.3
전체		136	87.2
결측값		20	12.8
전체		156	100.0



#### (4) 수어통역사 자격취득 방법

수어통역사 자격증 취득 기간은 10년-15년 미만이 19명(24.4%), 5년-10년 미만이 18명(23.1%), 3년-5년 미만이 11명(14.1%), 15년 이상이 11명(14.1%), 1년-3년 미만이 9명(11.5%), 1년 미만이 7명(9.0%)으로 나타났다.

〈표 III-16〉 수어통역사 자격 취득기간

구분		인원(명)	비율(%)
수어통역사 자격 취득기간	1년 미만	13	8.3
	1년-3년 미만	24	15.4
	3년-5년 미만	23	14.7
	5년-10년 미만	34	21.8
	10년-15년 미만	36	23.1
	15년 이상	17	10.9
	전체	147	94.2
	결측값	9	5.8
	전체	156	100.0

수어통역사 자격검정시험의 필기시험, 실기시험, 합격자 연수 3가지 방식에 대한 참여자의 의견으로는 적절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53명(67.9%), 적절하지 않다는 9명(11.5%), 매우 적절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7명(9.0%), 잘 모르겠다가 5명(6.4%), 매우 적절하지 않다가 3명(3.8%)으로 대다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였다.

〈표 III-17〉 수어통역사 시험 방식에 대한 의견

구분		인원(명)	비율(%)
수어통역사 시험 방식에 대한 의견	매우 적절하지 않다	6	3.8
	적절하지 않다	19	12.2
	적절하다	101	64.7
	매우 적절하다	13	8.3
	잘 모르겠다	14	9.0
	합계	153	98.1
	결측값	3	1.9
	합계	156	100.0

필기시험 중 장애인복지의 난이도에 대해서 참여자의 응답을 살펴보면 적절함이 35명(44.9%), 어려움이 27명(34.6%), 쉬움이 8명(10.3%), 매우 어려움이 4명(5.1%), 매우 쉬움이 2명(2.6%)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어의 이해에 대한 난이도는 적절함이 32명(41.0%), 어려움이 25명(32.1%), 쉬움이 9명(11.5%), 매우 어려움이 7명(9.0%), 매우 쉬움이 3명(3.8%)이고, 청각장애인의 이해는 적절함이 42명(53.8%), 어려움이 17명(21.8%), 쉬움이 14명(17.9%), 매우 쉬움이 2명(2.6%), 매우 어려움이 1명(1.3%)으로 나타났다. 수어통역의 기초는 적절함이 37명(47.4%), 쉬움이 21명(26.9%), 어려움이 14명(17.9%), 매우 쉬움과 매우 어려움이 각 2명(2.6%)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필기시험 전반의 난이도에 대해서 적절함이 38명(48.7%), 어려움이 22명(28.2%), 쉬움이 10명(12.8%), 매우 어려움이 2명(2.6%), 매우 쉬움이 1명(1.3%)으로 나타났다.

〈표 III-18〉 수어통역사 자격증 필기시험 난이도

구분		인원(명)	비율(%)
장애인복지	매우 쉬움	2	1.3
	쉬움	16	10.3
	적절함	74	47.4
	어려움	48	30.8
	매우 어려움	10	6.4
	합계	150	96.2
	결측값	6	3.8
	합계	156	100.0
한국어의 이해	매우 쉬움	5	3.2
	쉬움	17	10.9
	적절함	64	41.0
	어려움	47	30.1
	매우 어려움	17	10.9
	합계	150	96.2
	결측값	6	3.8
	합계	156	100.0



	구분	인원(명)	비율(%)
청각장애인의 이해	매우 쉬움	4	2.6
	쉬움	22	14.1
	적절함	86	55.1
	어려움	31	19.9
	매우 어려움	7	4.5
	합계	150	96.2
	결측값	6	3.8
	합계	156	100.0
수어통역의 기초	매우 쉬움	5	3.2
	쉬움	28	17.9
	적절함	73	46.8
	어려움	36	23.1
	매우 어려움	8	5.1
	합계	150	96.2
	결측값	6	3.8
	합계	156	100.0
필기시험 전반	매우 쉬움	2	1.3
	쉬움	17	10.9
	적절함	76	48.7
	어려움	44	28.2
	매우 어려움	8	5.1
	합계	147	94.2
	결측값	9	5.8
	합계	156	100.0

실기시험의 경우 필기통역의 난이도는 적절함이 44명(56.4%), 쉬움이 17명(21.8%), 어려움이 12명(15.4%), 매우 어려움이 2명(2.6%)이었으며, 수어통역의 난이도는 적절함이 44명(56.4%), 어려움이 17명(21.8%), 쉬움이 11명(14.1%), 매우 어려움이 2명(2.6%), 매우 쉬움이 1명(1.3%)으로 나타났으며, 음성통역의 난이도는 적절함이 31명(39.7%), 어려움이 30명(38.5%), 매우 어려움이 10명(12.8%), 쉬움이 4명(5.1%)이었다. 종합적으로 실기시험의 난이도에 대한 응답으로는 적절함이 39명(50.0%), 어려움이 26명(33.3%), 쉬움이 5명(6.4%), 매우 어려움이 3명(3.8%)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19〉 수어통역사 자격증 실기시험 난이도

구분		인원(명)	비율(%)
필기통역	쉬움	28	17.9
	적절함	88	56.4
	어려움	25	16.0
	매우 어려움	5	3.2
	합계	146	93.6
	결측값	10	6.4
	합계	156	100.0
수어통역	매우 쉬움	2	1.3
	쉬움	19	12.2
	적절함	89	57.1
	어려움	31	19.9
	매우 어려움	5	3.2
	합계	146	93.6
	합계	156	100.0
음성통역	쉬움	10	6.4
	적절함	55	35.3
	어려움	62	39.7
	매우 어려움	19	12.2
	합계	146	93.6
	결측값	10	6.4
	합계	156	100.0
실기시험 전반	매우 쉬움	1	.6
	쉬움	10	6.4
	적절함	72	46.2
	어려움	51	32.7
	매우 어려움	10	6.4
	합계	144	92.3
	합계	156	100.0



필기시험 중요평가 영역 중 1순위로는 청각장애인의 이해를 66명(42.3%), 수어통역의 기초를 48명(30.8%), 한국어의 이해를 30명(19.2%), 장애인복지를 8명(5.1%)이 선정하였으며, 2순위로는 수어통역의 기초를 54명(34.6%), 청각장애인의 이해를 50명(32.1%), 한국어의 이해를 30명(19.2%), 장애인복지를 18명(11.5%)이 선택하였고, 3순위로는 한국어의 이해를 47명(30.1%), 장애인복지를 46명(29.5%), 수어통역의 기초를 31명(19.9%), 청각장애인의 이해를 27명(17.3%)이 선택하였다.

〈표 III-20〉 수어통역사 필기시험 영역별 순위

구분		인원(명)	비율(%)
필기시험 영역별 1순위	장애인복지	8	5.1
	한국어의 이해	30	19.2
	청각장애인의 이해	66	42.3
	수어통역의 기초	48	30.8
	합계	152	97.4
	결측값	4	2.6
	합계	156	100.0
필기시험 영역별 2순위	장애인복지	18	11.5
	한국어의 이해	30	19.2
	청각장애인의 이해	50	32.1
	수어통역의 기초	54	34.6
	합계	152	97.4
	결측값	4	2.6
	합계	156	100.0
필기시험 영역별 3순위	장애인복지	46	29.5
	한국어의 이해	47	30.1
	청각장애인의 이해	27	17.3
	수어통역의 기초	31	19.9
	합계	151	96.8
	결측값	5	3.2
	합계	156	100.0

실기시험 중요평가 영역의 1순위로는 수어통역을 79명(50.6%), 음성통역을 71명(45.5%), 필기통역을 1명(0.6%) 순으로 선정하였으며, 2순위로는 음성통역을 75명(48.1%), 수어통역을 65명(41.7%), 필기통역을 10명(6.4%)이 선택하였고, 3순위로는 필기통역을 139명(89.1%), 수어통역을 6명(3.8%), 음성통역을 5명(3.2%)순으로 제시하였다.

〈표 III-21〉 수어통역사 실기시험 영역별 순위

구분		인원(명)	비율(%)
실기시험 영역별 1순위	필기통역	1	.6
	수어통역	79	50.6
	음성통역	71	45.5
	합계	151	96.8
	결측값	5	3.2
	합계	156	100.0
실기시험 영역별 2순위	필기통역	10	6.4
	수어통역	65	41.7
	음성통역	75	48.1
	합계	150	96.2
	결측값	6	3.8
	합계	156	100.0
실기시험 영역별 3순위	필기통역	139	89.1
	수어통역	6	3.8
	음성통역	5	3.2
	합계	150	96.2
	결측값	6	3.8
	합계	156	100.0

실기시험에 인터뷰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86명(55.1%)가 동의하였고 63명(40.4%)이 동의하지 않았다. 수어통역사 자격 취득방법에 대한 응답으로는 현재 자격 취득방식을 유지하되 난이도 조정 필요에 42명(26.9%), 일정경력과 시험(실기 및 필기) 및 교육연수과정 이수 후 자격증 취득에 12명(7.7%), 일정경력과 시험(실기 및 필기) 후 자격증 취득에 7명(4.5%), 일정경력만으로 수어통역사 자격증 취득



에 5명(3.2%), 수어통역 관련 양성 과정만 이수한 후 자격증 취득과 일정경력만으로 수어통역사 자격증 취득, 수어통역학 관련 학위(학부 혹은 대학원)를 취득한 자에게만 자격증 부여에 예 각 1명(0.6%)이 응답하였다. 현행 자격취득 시험 횟수의 적절 여부에 대해서는 94명(60.3%)이 부적절하다라고 응답했으며 48명(30.8%)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14명(9.0%)은 응답하지 않았다.

〈표 III-22〉 수어통역사 자격 시험에 대한 응답

구분		인원(명)	비율(%)
수어통역사 자격 실기시험 인터뷰 포함 여부	예	86	55.1
	아니오	63	40.4
	합계	149	95.5
	결측값	7	4.5
	합계	156	100.0
자격 취득방법에 대한 응답	현재 자격 취득방식을 유지하되 난이도 조정 필요	42	26.9
	수어통역 관련 양성 과정만 이수한 후 자격증 취득	1	.6
	일정경력만으로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증 취득	1	.6
	일정경력과 교육연수과정 이수 후 자격증 취득	5	3.2
	일정경력과 시험(실기 및 필기) 후 자격증 취득	7	4.5
	일정경력과 시험(실기 및 필기) 및 교육연수과정 이수 후 자격증 취득	12	7.7
	수어통역학 관련 학위(학부 혹은 대학원)를 취득한 자에게만 자격증 부여	1	.6
	기타	4	2.6
	합계	73	46.8
	결측값	83	53.2
	합계	156	100.0
자격취득 시험 횟수 적절성 여부	예	48	30.8
	아니오	94	60.3
	합계	142	91.0
	결측값	14	9.0
	합계	156	100.0

### (5) 수어통역사 자격제도 개선

현 자격제도 개선 필요 여부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서는 그렇다를 77명(49.4%), 매우 그렇다를 28명(17.9%), 그렇지 않다를 27명(17.3%), 전혀 그렇지 않다를 12명(7.7%), 잘 모르겠다를 8명(5.1%)이 응답하였다.

〈표 III-23〉 수어통역사 자격제도 개선 필요 여부

구분		인원(명)	비율(%)
수어통역사 자격제도 개선 필요 여부	전혀 그렇지 않다	12	7.7
	그렇지 않다	27	17.3
	그렇다	77	49.4
	매우 그렇다	28	17.9
	잘 모르겠다	8	5.1
	합계	152	97.4
	결측값	4	2.6
	합계	156	100.0

분야에 따라 전문 수어통역사 자격증을 부여할 경우 전문 분야에 대해 중복응답한 결과 법률분야에 111명(27.5%), 의료분야에 92명(22.8%), 교육분야에 79명(19.6%), 방송분야에 75명(18.6%), 여가분야에 32명(7.9%), 기타분야에 14명(3.5%)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24〉 전문 수어통역사 분야에 대한 의견

구분		인원(명)	비율(%)	케이스 중 비율(%)
전문 수어통역사 분야에 대한 의견	방송	75	18.6	65.8
	법률	111	27.5	97.4
	의료	92	22.8	80.7
	교육	79	19.6	69.3
	여가	32	7.9	28.1
	기타	14	3.5	12.3
	합계	403	100.0	353.5



분야별 전문 수어통역사 자격증 부여 방법에 대해서 중복응답 한 결과 전문 분야 관련 실기시험 합격 시 부여에 59명(36.6%), 교육연수를 이수했으면 부여에 45명(28.0%), 특정분야에서 일한 경력이 있으면 부여에 43명(26.7%), 대학에서 전문분야를 전공했으면 부여에 10명(6.2%), 일정경력이 있으면 부여에 4명(2.5%) 순으로 부여 방법을 제시하였다.

〈표 III-25〉 분야별 전문 수어통역사 자격증 부여 방법

구분		인원(명)	비율(%)	케이스 중 비율(%)
전문 수어통역사 분야에 대한 의견	특정분야에 일한 경력이 있으면 부여	43	26.7	38.1
	일정경력이 있으면 부여	4	2.5	3.5
	전문 분야 관련 실기시험 합격 시	59	36.6	52.2
	교육연수를 이수했으면 부여	45	28.0	39.8
	대학에서 전문분야를 전공했으면 부여	10	6.2	8.8
	합계	161	100.0	142.5

지역 농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수어통역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경우 활동 영역에 대해 중복응답 한 결과 관공서이용 관련에 75명(34.9%), 근로지원 관련에 73명(34.0%), 활동보조 관련에 61명(28.4%), 기타에 6명(2.8%)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26〉 지역 내(內) 수어통역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경우 활동 영역

구분		인원(명)	비율(%)	케이스 중 비율(%)
지역 내(內) 수어통역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경우 활동 영역	활동보조 관련	61	28.4	56.5
	근로지원 관련	73	34.0	67.6
	관공서이용 관련	75	34.9	69.4
	기타	6	2.8	5.6
	합계	215	100.0	199.1

지역 내(內) 농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수어통역사 자격증 부여 방법에 대해 중복응답 한 결과 농 관련 단체에서 일정 경력이 있는 경우에 62명(39.2%),

농아인협회 양성교육에 참여한 경우에 47명(29.7%)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27〉 지역 내(內) 수어통역사 자격증의 부여 방법

구분		인원(명)	비율(%)	케이스 중 비율(%)
지역 내(內) 수어통역사 자격증의 부여 방법	농 관련 단체에서 일정 경력	62	39.2	56.9
	수어교실 고급반 이상 이수	13	8.2	11.9
	농아인협회 양성교육	47	29.7	43.1
	대학 수어통역 전공	20	12.7	18.3
	기타	16	10.1	14.7
	합계	158	100.0	145.0

급수에 따른 보상방식과 관련해서는 급수에 따라 별도 수당을 제공해야 한다는 59명(37.8%), 특정 급수만 슈퍼바이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24명(15.4%), 특정급수만 수어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9명(5.8%) 순으로 선정하였으며 64명(41.0%)은 응답을 하지 않았다.

〈표 III-28〉 수어통역사 자격 급수에 따른 보상방식

구분		인원(명)	비율(%)
수어통역사 자격제도 개선 필요 여부	급수에 따라 별도 수당을 제공해야 한다.	59	37.8
	특정 급수만 슈퍼바이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4	15.4
	특정급수만 수어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5.8
	합계	46	59.0
	결측값	64	41.0
	합계	156	100.0

#### 4)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수어통역 업무 및 자격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어통역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주 업무 영역을 조사한 결과 수어통역사들은 청각장애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업무를 포함하여 의료 관련 통역 업무, 직업(취업알선, 취업지도) 관련 통역 업무, 수어통역 행정(문서작성, 회의) 관련 통역 업무, 교육 관련 통역 업무 등 여러 영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현장에서 수어통역사들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다양한 분야와 관련된 통역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의미한다. 즉 현장 수어통역사의 업무 분포를 통해 다양한 영역과 관련된 지식을 익히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둘째, 다수의 수어통역사들은 업무 수행 중 느끼는 불편함으로 수어통역이나 청각장애에 대한 인식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수어통역 및 청각장애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통해 수어통역 서비스의 확대는 물론 수어통역이 필요한 청각장애인에게 적절한 수어통역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며 청각장애인 단체나 기관은 수어통역 및 청각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애인 복지법 등에서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듯이 유관 단체나 기관에서는 적극적인 활동 및 프로그램을 통해 청각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어통역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보수교육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교육정도도 더불어 추가적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94명(60.3%), 필요하다가 48명(30.8%)으로써 대다수가 추가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수어통역사를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의 내용을 파악하여 보수교육에 적용함으로써 수어통역사들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법률, 의료, 교육 등 전문 통역분야에 대한 수어통역 자격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각장애인 역시 직업재활을 통해 고용활동에 참여하고 사회자립을 통해 지역사회에 점진적으로 통합되면서 과거에 비해 법률,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사회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각 분야에 적합한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각 전문 영역에 특화된 통역을 개발·발전시켜 사회 여러 환경에서 청각장애인들이 적절한 수어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전문화된 수어통역사 자격제도를 통해 필요한 경우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수어통역사들의 전문성 및 자긍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 2. 청각장애인통역사 대상 양적연구

###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설문지의 조사대상자는 청각장애인통역사로 활동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 청각장애인이다. 설문조사는 한국농아인협회, 수어통역센터 등의 청각장애인통역 유관기관을 통해 2018년 6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2개월 동안 실시되었다. 설문은 담당기관 또는 지회 담당자의 협조로 청각장애인통역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응답이 완료된 설문지는 취합 후 본원으로 발송되었다.

### 2)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

조사 설문지는 자문회의, 연구진 회의, 청각장애인통역사 대상 FGI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반적 현황, 청각장애인통역사 업무특성과 노동조건,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요건,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취득 방법,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제도 개선의 5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영역별 세부 문항은 [부록 2]와 같다.

조사 결과 113명의 청각장애인통역사가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업무현황, 자격현황, 자격제도 개선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활용해 빈도 및 백분율 통계량을 산출하였다. 통계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4 version을 사용하였다.

### 3) 조사결과

#### (1) 일반적 현황

본 연구에 참여한 청각장애인통역사는 113명이었다. 이 중 여성이 61명(54.0%) 남성이 49명(43.4%)이었다. 연령은 30-39세가 50명(44.2%), 40-49세가 41명(36.3%), 50세 이상이 11명(9.7%), 20-29세가 9명(8.0%)이었다.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가 34명(30.1%), 서울특별시 25명(22.1%)로 주로 수도권에 거주하였으며 충청남도가 11명(9.7%), 강원도가 9명(8.0%), 대구광역시 7명(6.2%),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충청북도가 각 5명(4.4%), 대전광역시 4명(3.5%), 경상북도 3명(2.7%),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



도가 각 2명(1.8%), 광주광역시가 1명(1.6%)으로 조사되었다. 참여자의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중퇴 포함)이 64명(56.6%), 전문대학 졸업(중퇴 포함)이 24명(21.2%), 대학원 졸업(수료 포함)이 14명(12.4%), 고등학교 졸업(중퇴 포함)이 11명(9.7%)이었다.

〈표 III-29〉 청각장애인통역사 기본 인적사항

구분		인원(명)	비율(%)
성별	남	49	43.4
	여	61	54.0
	합계	110	97.3
	결측값	3	2.7
	합계	113	100.0
연령	20-29세	9	8.0
	30-39세	50	44.2
	40-49세	41	36.3
	50세 이상	11	9.7
	합계	111	98.2
	결측값	2	1.8
	합계	113	100.0
거주지역	강원도	9	8.0
	경기도	34	30.1
	경상남도	5	4.4
	경상북도	3	2.7
	광주광역시	1	.9
	대구광역시	7	6.2
	대전광역시	4	3.5
	부산광역시	5	4.4
	서울특별시	25	22.1
	전라남도	2	1.8
	제주특별자치도	2	1.8
	충청남도	11	9.7
	충청북도	5	4.4
	합계	113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중퇴 포함)	11
전문대학 졸업(중퇴 포함)		24	21.2
대학교 졸업(중퇴 포함)		64	56.6
대학원 석사 졸업(수료 포함)		14	12.4
합계		113	100.0

수어통역 관련 경력으로는 5년 이상-10년 미만이 38명(33.6%)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년 이상이 34명(30.1%), 1년 이상-5년 미만이 27명(23.9%), 1년 미만이 14명(12.4%)이었다. 현재 활동하는 곳으로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수어통역센터, 복지관 등) 종사가 95명(84.1%), 사회복지 관련 단체(한국농아인협회 등) 종사가 14명(12.4%), 프리랜서가 2명(1.8%)이었다. 참여자의 직위를 살펴보면 실무급(사원/대리)이 85명(75.2%), 중간관리급(과장/팀장)이 13명(11.5%), 기타가 6명(5.3%), 상위관리급(부장/국장)이 4명(3.5%), 기관장급(관장/시설장)이 3명(2.7%), 프리랜서가 2명(1.8%)이었다.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응시 이유로는 업무상 필요해서가 71명(62.8%), 자기개발을 위해서가 25명(22.1%), 수어통역 관련 학과를 졸업해서가 7명(6.2%), 기타가 3명(2.7%)이었다.

〈표 III-30〉 청각장애인통역사 직무 관련 인적사항

구분		인원(명)	비율(%)
수어통역 관련 경력	1년 미만	14	12.4
	1년 이상 ~ 5년 미만	27	23.9
	5년 이상 ~ 10년 미만	38	33.6
	10년 이상	34	30.1
	합계	113	100.0
현재 활동하는 곳	사회복지 관련 기관(수어통역센터, 복지관 등) 종사	95	84.1
	사회복지 관련 단체(한국농아인협회 등) 종사	14	12.4
	프리랜서	2	1.8
	결측값	2	1.8
	합계	113	100.0
참여자의 직위	기관장급(관장/시설장)	3	2.7
	상위관리급(부장/국장)	4	3.5
	중간관리급(과장/팀장)	13	11.5
	실무급(사원/대리)	85	75.2
	프리랜서	2	1.8
	기타	6	5.3
	합계	113	100.0



구분		인원(명)	비율(%)
청각장애인 통역사 자격응시 이유	업무상 필요해서	71	62.8
	자기개발을 위해서	25	22.1
	수어통역 관련 학과를 졸업해서	7	6.2
	기타	3	2.7
	결측값	7	6.2
	합계	113	100.0

전공에 대해서는 중복응답을 하였으며 참여자 중 사회복지 전공자가 63명(39.1%), 수어통역이 46명(28.6%), 기타1이 25명(15.5%), 수어교육이 19명(11.8%), 직업재활이 5명(3.1%), 특수교육이 2명(1.2%), 직업상담이 1명(0.6%)으로 조사되었다. 자격증 소지 여부도 중복응답을 하였으며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증 소지자가 108명(49.8%), 사회복지사가 81명(37.3%), 보육교사가 12명(5.5%), 기타1이 9명(4.1%), 심리상담사가 6명(2.8%), 기타2 자격증 소지자가 1명(0.5%)이었다.

〈표 III-31〉 청각장애인통역사 전공 및 자격증 현황

구분		인원(명)	비율(%)	케이스 중 비율(%)
청각장애인통역사 전공 현황	수어통역	46	28.6	41.4
	수어교육	19	11.8	17.1
	사회복지	63	39.1	56.8
	특수교육	2	1.2	1.8
	직업재활	5	3.1	4.5
	직업상담	1	0.6	0.9
	기타1	25	15.5	22.5
	합계	161	100.0	145.0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증 현황	청각장애인통역사	108	49.8	95.6
	사회복지사	81	37.3	71.7
	보육교사	12	5.5	10.6
	심리상담사	6	2.8	5.3
	기타1	9	4.1	8.0
	기타2	1	0.5	0.9
	합계	217	100.0	192.0

## (2) 청각장애인통역사 업무특성과 노동조건

현재 주 업무 영역에 대해서 중복응답 한 결과 일상생활 지원을 포함하는 단순 통역 업무에 108명(11.0%), 교육 관련 통역 업무에 100명(10.2%), 의료 관련 통역 업무, 법률 관련 통역 업무, 재활서비스(상담, 복지) 관련 통역 업무에 99명(10.1%), 직업(취업알선, 취업지도) 관련 통역 업무에 98명(10.0%)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여가(문화활동, 예술) 관련 통역 업무에 96명(9.8%), 수어통역 행정(문서작성, 회의) 관련 통역 업무에 94명(9.6%), 방송(미디어) 관련 통역 업무에 93명(9.5%), 종교 및 의식(결혼식) 관련 통역 업무에 92명(9.4%) 순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32〉 청각장애인통역사 주 업무 영역

구분		인원(명)	비율(%)	케이스 중 비율(%)
청각장애인 통역사 주 업무 영역	일상생활 지원을 포함하는 단순 통역 업무	108	11.0	99.1
	교육 관련 통역 업무	100	10.2	91.7
	법률 관련 통역 업무	99	10.1	90.8
	의료 관련 통역 업무	99	10.1	90.8
	방송(미디어) 관련 통역 업무	93	9.5	85.3
	종교 및 의식(결혼식) 관련 통역 업무	92	9.4	84.4
	재활서비스(상담, 복지) 관련 통역 업무	99	10.1	90.8
	여가(문화활동, 예술) 관련 통역 업무	96	9.8	88.1
	직업(취업알선, 취업지도) 관련 통역 업무	98	10.0	89.9
	수어통역 행정(문서작성, 회의) 관련 통역 업무	94	9.6	86.2
	합계	978	100.0	897.2

참여자를 대상으로 업무 수행 시 가장 힘든 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 1순위로는 청각장애에 대한 인식 부족과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식 부족이 28명(24.8%), 청각장애인통역사로서 자신의 능력 부족과 수어통역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낮은 신뢰가 17명(15.0%), 청각장애인통역사들 간 신뢰 부족이 8명(7.1%), 기타



가 4명(3.5%)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로는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식 부족이 31명(27.4%), 청각장애인통역사로서 자신의 능력 부족이 23명(20.4%), 청각장애에 대한 인식 부족이 16명(14.2%), 수어통역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낮은 신뢰가 12명(10.6%), 청각장애인통역사들 간 신뢰 부족이 9명(8.0%), 기타가 1명(0.9%)이었다.

〈표 III-33〉 청각장애인통역사 업무 수행 시 가장 힘든 점

구분		인원(명)	비율(%)
청각장애인 통역사 업무 수행 시 가장 힘든 점 1순위	청각장애인통역사로서 자신의 능력 부족	17	15.0
	수어통역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낮은 신뢰	17	15.0
	청각장애에 대한 인식 부족	28	24.8
	청각장애인통역사들 간 신뢰 부족	8	7.1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식 부족	28	24.8
	기타	4	3.5
	결측값	11	9.7
	합계	113	100.0
청각장애인 통역사 업무 수행 시 가장 힘든 점 2순위	청각장애인통역사로서 자신의 능력 부족	23	20.4
	수어통역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낮은 신뢰	12	10.6
	청각장애에 대한 인식 부족	16	14.2
	청각장애인통역사들 간 신뢰 부족	9	8.0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식 부족	31	27.4
	기타	1	.9
	결측값	21	18.6
	합계	113	100.0

### (3)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요건

청각장애인통역사로 일하기 위해 적합한 전공에 대해 중복응답을 한 결과 수어통역 관련 전공이 83명(25.1%), 사회복지 관련 전공이 59명(17.8%), 심리/상담 관련 전공이 54명(16.3%), 수어교육 관련 전공이 53명(16.0%), 행정 관련 전공이 37명(11.2%), 보건/의료 관련 전공이 16명(4.8%), 특수교육 관련 전공이 10명(3.0%), 교육 관련 전공(특수교육 제외)이 8명(2.4%), 직업 관련 전공이 7명(2.1%), 전공무관이 4명(1.2%) 순으로 제시하였다.

〈표 III-34〉 청각장애인통역사로 일하기 위한 적합 전공

구분		인원(명)	비율(%)	케이스 중 비율(%)
청각장애인 통역사로 일하기 위한 적합 전공	수어통역 관련 전공	83	25.1	74.1
	수어교육 관련 전공	53	16.0	47.3
	사회복지 관련 전공	59	17.8	52.7
	특수교육 관련 전공	10	3.0	8.9
	심리/상담 관련 전공	54	16.3	48.2
	보건/의료 관련 전공	16	4.8	14.3
	교육 관련 전공(특수교육 제외)	8	2.4	7.1
	행정 관련 전공	37	11.2	33.0
	직업 관련 전공	7	2.1	6.3
	전공무관	4	1.2	3.6
	합계	331	100.0	295.5

청각장애인통역을 위해 필요한 교육수준으로는 대학교 졸업이 66명(58.4%), 전문대학 졸업이 24명(21.2%), 고등학교 졸업이 14명(12.4%), 대학원 졸업, 기타가 3명(4.7%)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와 더불어 추가적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63명(55.8%), 매우 필요하다고 39명(34.5%)로 거의 대다수가 추가적인 교육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표 III-35〉 청각장애인통역사 업무 수행 시 필요한 교육수준

구분		인원(명)	비율(%)
청각장애인 통역사 업무 수행 시 필요한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14	12.4
	전문대학 졸업	24	21.2
	대학교 졸업	66	58.4
	대학원 졸업	3	2.7
	기타	3	2.7
	결측값	3	2.7
	합계	113	100.0



구분		인원(명)	비율(%)
청각장애인 통역사 업무 수행 시 추가적인 교육의 필요성	전혀 필요 없다	1	.9
	필요 없다	2	1.8
	필요하다	63	55.8
	매우 필요하다	39	34.5
	잘 모르겠다	6	5.3
	결측값	2	1.8
	합계	113	100.0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증 취득 후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에 대해서 중복응답을 한 결과 전문 통역분야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교육을 61명(29.0%), 전문 통역분야에 대한 수어통역 교육을 59명(28.1%), 농인사회 이해를 위한 교육을 55명(26.2%), 전반적인 업무를 이해하기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35명(16.7%)이 표시하여 전문 수어통역에 대한 추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표 III-36〉 청각장애인통역사로 일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구분		인원(명)	비율(%)	케이스 중 비율(%)
청각장애인 통역사로 일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농인사회 이해를 위한 교육	55	26.2	50.0
	전문 통역분야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교육	61	29.0	55.5
	전문 통역분야에 대한 수어통역교육	59	28.1	53.6
	전반적인 업무를 이해하기 위한 오리엔테이션	35	16.7	31.8
	합계	210	100.0	190.9

통역현장 배치기준에 대한 응답으로는 수어통역 자격증 유무에 따라서가 43명(38.1%)와 현장 경력에 따라서가 38명(33.6%)로 동일했으며 직무분석이나 인성/적성검사에 따라서가 15명(13.3%), 대학 전공에 따라서가 3명(2.7%)로 나타났다.

〈표 III-37〉 청각장애인통역사 현장 배치기준

구분		인원(명)	비율(%)
청각장애인 통역사 현장 배치기준	수어통역 자격증 유무에 따라서	43	38.1
	대학 전공에 따라서	3	2.7
	현장 경력에 따라서	38	33.6
	직무분석이나 인성/적성검사에 따라서	15	13.3
	기타	3	2.7
	결측값	11	9.7
	합계	113	100.0

청각장애인 통역 분야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응답한 결과 중 1순위로는 청각장애인통역사가 취업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하여 취업기회를 넓혀야 한다가 27명(23.9%), 청각장애인통역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가 19명(16.8%), 농인과 청각장애인통역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가 12명(10.6%), 청각장애인통역사 수가 늘어나야 한다와 청각장애인통역사를 위한 보수교육이 다양화되어야 한다가 11명(9.7%), 청인/농인 청각장애인통역사 간 이해를 높여야 한다가 8명(7.1%), 수어통역 수당이 현재보다 높아져야 한다가 6명(5.3%), 지역 수어통역센터 확대와 청각장애인통역사 정원이 증원되어야 한다가 5명(4.4%), 수어통역이 활동보조제도와 같이 바우처 사업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가 3명(2.7%)으로 조사되었으며 2순위로는 청각장애인통역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가 24명(21.2%), 청각장애인통역사가 취업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하여 취업기회를 넓혀야 한다가 19명(16.8%), 청인/농인 청각장애인통역사 간 이해를 높여야 한다가 18명(15.9%), 농인과 청각장애인통역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가 13명(11.5%), 청각장애인통역사 수가 늘어나야 한다가 7명(6.2%), 수어통역 수당이 현재보다 높아져야 한다, 청각장애인통역사를 위한 보수교육이 다양화되어야 한다, 지역 수어통역센터 확대와 청각장애인통역사 정원이 증원되어야 한다가 6명(5.3%) 등으로 나타났다.



〈표 III-38〉 청각장애인 통역 분야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구분		인원(명)	비율(%)
청각장애인 통역 분야의 발전 필요한 사항 1순위	청각장애인통역사 수가 늘어나야 한다.	11	9.7
	수어통역 수당이 현재보다 높아져야 한다.	6	5.3
	청각장애인통역사를 위한 보수교육이 다양화되어야 한다.	11	9.7
	청인/농인 청각장애인통역사 간 이해를 높여야 한다.	8	7.1
	수어통역이 활동보조제도와 같이 바우처 사업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	2.7
	청각장애인통역사가 취업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하여 취업기회를 넓혀야 한다.	27	23.9
	청각장애인통역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19	16.8
	지역 수어통역센터 확대와 청각장애인통역사 정원이 증원되어야 한다.	5	4.4
	농인과 청각장애인통역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12	10.6
	결측값	11	9.7
	합계	113	100.0
청각장애인 통역 분야의 발전 필요한 사항 2순위	청각장애인통역사 수가 늘어나야 한다.	7	6.2
	수어통역 수당이 현재보다 높아져야 한다.	6	5.3
	청각장애인통역사를 위한 보수교육이 다양화되어야 한다.	6	5.3
	청인/농인 청각장애인통역사 간 이해를 높여야 한다.	18	15.9
	수어통역이 활동보조제도와 같이 바우처 사업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	1.8
	청각장애인통역사가 취업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하여 취업기회를 넓혀야 한다.	19	16.8
	청각장애인통역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24	21.2
	지역 수어통역센터 확대와 청각장애인통역사 정원이 증원되어야 한다.	6	5.3
	농인과 청각장애인통역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13	11.5
	결측값	12	10.6
	합계	113	100.0

#### (4)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취득 방법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증 취득 기간은 5년-10년 미만, 10년-15년 미만이 각 30명(26.5%), 1년-3년 미만이 20명(17.7%), 3년-5년 미만이 17명(15.0%), 1년 미만이 11명(9.7%), 15년 이상이 1명(0.9%)으로 나타났다.

〈표 III-39〉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 취득기간

구분		인원(명)	비율(%)
청각장애인 통역사 자격 취득기간	1년 미만	11	9.7
	1년 ~ 3년 미만	20	17.7
	3년 ~ 5년 미만	17	15.0
	5년 ~ 10년 미만	30	26.5
	10년 ~ 15년 미만	30	26.5
	15년 이상	1	.9
	결측값	4	3.5
	합계	113	100.0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검정시험의 필기시험, 실기시험, 합격자 연수 3가지 방식에 대한 참여자의 의견으로는 적절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72명(63.7%), 매우 적절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16명(14.2%)로 대다수가 적절하다라고 생각했으며 적절하지 않다는 13명(11.5%), 매우 적절하지 않다는 2명(1.8%)이 응답하였다.

〈표 III-40〉 청각장애인통역사 시험 방식에 대한 의견

구분		인원(명)	비율(%)
청각장애인 통역사 시험 방식에 대한 의견	매우 적절하지 않다	2	1.8
	적절하지 않다	13	11.5
	적절하다	72	63.7
	매우 적절하다	16	14.2
	잘 모르겠다	9	8.0
	결측값	1	.9
	합계	113	100.0



필기시험 중 한국어의 이해의 난이도에 대해서 참여자의 응답을 살펴보면 적절함이 27명(42.2%), 쉬움이 18명(28.1%), 어려움이 9명(14.1%), 매우 쉬움이 7명(10.9%), 매우 어려움이 2명(3.1%)으로 나타났으며, 통역의 기초에 대한 난이도는 적절함이 35명(54.7%), 쉬움이 14명(21.9%), 어려움이 8명(12.5%), 매우 쉬움이 6명(9.4%), 매우 어려움이 1명(1.6%)이고, 일반상식의 난이도는 적절함이 35명(54.7%), 쉬움이 14명(21.9%), 어려움이 8명(12.5%), 매우 쉬움 5명(7.8%), 매우 어려움이 2명(3.1%)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필기시험 전반의 난이도에 대해서 적절함이 35명(54.7%), 쉬움이 13명(20.3%), 어려움이 8명(12.5%), 매우 쉬움이 7명(10.9%), 매우 어려움이 1명(1.6%)으로 나타났다.

〈표 III-41〉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증 필기시험 난이도

	구분	인원(명)	비율(%)
한국어의 이해	매우 쉬움	15	13.3
	쉬움	25	22.1
	적절함	47	41.6
	어려움	20	17.7
	매우 어려움	4	3.5
	결측값	2	1.8
	합계	113	100.0
통역의 기초	매우 쉬움	10	8.8
	쉬움	26	23.0
	적절함	60	53.1
	어려움	12	10.6
	매우 어려움	3	2.7
	결측값	2	1.8
	합계	113	100.0
일반상식	매우 쉬움	9	8.0
	쉬움	20	17.7
	적절함	55	48.7
	어려움	20	17.7
	매우 어려움	7	6.2
	결측값	2	1.8
	합계	113	100.0

구분		인원(명)	비율(%)
필기시험 전반	매우 쉬움	10	8.8
	쉬움	22	19.5
	적절함	57	50.4
	어려움	20	17.7
	매우 어려움	3	2.7
	결측값	1	.9
	합계	113	100.0

실기시험의 경우 문장통역의 난이도는 적절함이 28명(43.8%), 쉬움이 20명(31.3%), 매우 쉬움이 10명(15.6%), 어려움이 6명(9.4%)이었으며, 수어통역1의 난이도는 적절함이 31명(48.4%), 쉬움이 18명(28.1%), 어려움이 7명(10.9%), 매우 쉬움이 6명(9.4%), 매우 어려움이 1명(1.6%)으로 나타났으며, 수어통역2의 난이도는 적절함이 34명(53.1%), 쉬움이 13명(20.3%), 어려움이 12명(18.8%), 매우 쉬움이 5명(7.8%)이었다. 종합적으로 실기시험의 난이도에 대한 응답으로는 적절함이 34명(53.1%), 쉬움이 16명(25.0%), 매우 쉬움이 6명(9.4%)과 어려움이 6명(9.4%), 매우 어려움이 1명(1.6%)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42〉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증 실기시험 난이도

구분		인원(명)	비율(%)
문장통역	매우 쉬움	17	15.0
	쉬움	26	23.0
	적절함	52	46.0
	어려움	14	12.4
	매우 어려움	1	.9
	결측값	3	2.7
	합계	113	100.0
수어통역1 (한국수어통역)	매우 쉬움	13	11.5
	쉬움	26	23.0
	적절함	51	45.1
	어려움	16	14.2
	매우 어려움	3	2.7
	결측값	4	3.5
	합계	113	100.0



구분		인원(명)	비율(%)
수어통역2 (한국어식 수어통역)	매우 쉬움	9	8.0
	쉬움	16	14.2
	적절함	54	47.8
	어려움	28	24.8
	매우 어려움	3	2.7
	결측값	3	2.7
	합계	113	100.0
실기시험 전반	매우 쉬움	11	9.7
	쉬움	18	15.9
	적절함	60	53.1
	어려움	16	14.2
	매우 어려움	3	2.7
	결측값	5	4.4
	합계	113	100.0

시험과목별 기준 개선에 대해 참여자들이 중복응답을 한 결과 필기시험의 경우, 난이도 조정에 34명(50.7%), 현행 시험기준 유지에 22명(32.8%), 시험 과목 변경에 5명(7.5%), 응시 시간 조정에 2명(3.0%), 문항 수 조정에 1명(1.5%) 순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난이도 조정에 34명(50.7%), 현행 시험기준 유지에 19명(28.4%), 시험 과목 변경에 6명(9.0%), 응시 시간 조정에 4명(6.0%), 문항 수 조정에 2명(3.0%)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43〉 청각장애인통역사 필기 및 실기시험 과목별 기준 개선에 대한 의견

구분		인원(명)	비율(%)	케이스 중 비율(%)
필기시험 개선 요구사항	현행 유지	39	33.3	35.5
	난이도 조정	51	43.6	46.4
	시험 과목 변경	13	11.1	11.8
	문항 수 조정	4	3.4	3.6
	응시 시간 조정	5	4.3	4.5
	기타	5	4.3	4.5
	합계	117	100.0	106.4

구분		인원(명)	비율(%)	케이스 중 비율(%)
실기시험 개선 요구사항	현행 유지	37	31.9	33.3
	난이도 조정	52	44.8	46.8
	시험 과목 변경	11	9.5	9.9
	문항 수 조정	4	3.4	3.6%
	응시 시간 조정	7	6.0	6.3%
	기타	5	4.3%	4.5%
	합계	116	100.0%	104.5%

필기시험 중요평가 영역 중 1순위로는 통역의 기초를 43명(67.2%), 한국어의 이해를 15명(23.4%), 일반상식을 5명(7.8%)가 선정하였으며, 2순위로는 한국어의 이해를 31명(48.4%), 일반상식을 24명(37.5%), 통역의 기초를 8명(12.5%)이 선택하였으며, 3순위로는 일반상식을 34명(53.1%), 한국어의 이해를 17명(26.6%), 통역의 기초를 12명(18.8%)이 선택하였다.

〈표 III-44〉 청각장애인통역사 필기시험 영역별 순위

구분		인원(명)	비율(%)
필기시험 영역별 1순위	한국어의 이해	36	31.9
	통역의 기초	64	56.6
	일반상식	11	9.7
	결측값	2	1.8
	합계	113	100.0
필기시험 영역별 2순위	한국어의 이해	49	43.4
	통역의 기초	24	21.2
	일반상식	38	33.6
	결측값	2	1.8
	합계	113	100.0
필기시험 영역별 3순위	한국어의 이해	26	23.0
	통역의 기초	23	20.4
	일반상식	62	54.9
	결측값	2	1.8
	합계	113	100.0



실기시험 중요평가 영역의 1순위로는 수어통역1(한국수어통역)을 26명(40.6%), 문장통역을 24명(37.5%), 수어통역2(한국어식 수어통역)을 13명(20.3%) 순으로 선정하였으며, 2순위로는 수어통역1(한국수어통역)을 29명(45.3%), 수어통역2(한국어식 수어통역)을 18명(28.1%), 문장통역을 15명(23.4%)이 선택하였으며, 3순위로는 수어통역2(한국어식 수어통역)을 31명(48.4%), 문장통역을 24명(37.5%), 수어통역1(한국수어통역)을 7명(10.9%) 순으로 중요도를 제시하였다.

〈표 III-45〉 청각장애인통역사 실기시험 영역별 순위

구분		인원(명)	비율(%)
실기시험 영역별 1순위	문장통역	43	38.1
	수어통역1(한국수어통역)	48	42.5
	수어통역2(한국어식 수어통역)	20	17.7
	결측값	2	1.8
	합계	113	100.0
실기시험 영역별 2순위	문장통역	25	22.1
	수어통역1(한국수어통역)	49	43.4
	수어통역2(한국어식 수어통역)	36	31.9
	결측값	3	2.7
	합계	113	100.0
실기시험 영역별 3순위	문장통역	43	38.1
	수어통역1(한국수어통역)	13	11.5
	수어통역2(한국어식 수어통역)	54	47.8
	결측값	3	2.7
	합계	113	100.0

실기시험에 인터뷰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39명(60.9%)가 동의를 24명(37.5%)가 동의하지 않았다.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 취득방법에 대한 응답으로는 현재 자격 취득방식을 유지하되 난이도 조정 필요에 17명(26.6%), 일정경력과 시험(실기 및 필기) 및 교육연수과정 이수 후 자격증 취득에 4명(6.3%), 수어통역 관련 양성 과정만 이수한 후 자격증 취득에 2명(3.1%)이 응답하였으나 35명(54.7%)이 응답하지 않았다. 현행 자격취득 시험 횟수의 적절 여부에 대해서는 35명(54.7%)이

적절하다라고 응답했으며 19명(29.7%)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10명(15.6%)은 응답하지 않았다.

〈표 III-46〉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 시험에 대한 응답

구분		인원(명)	비율(%)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 실기시험 인터뷰 포함 여부	예	57	50.4
	아니오	55	48.7
	결측값	1	.9
	합계	113	100.0
자격 취득방법에 대한 응답	현재 자격 취득방식을 유지하되 난이도 조정 필요	17	26.6
	수어통역 관련 양성 과정만 이수한 후 자격증 취득	2	3.1
	일정경력과 교육연수과정 이수 후 자격증 취득	1	1.6
	일정경력과 시험(실기 및 필기) 후 자격증 취득	1	1.6
	일정경력과 시험(실기 및 필기) 및 교육연수과정 이수 후 자격증 취득	4	6.3
	수어통역학 관련 학위(학부 혹은 대학원)를 취득한 자에게만 자격증 부여	2	3.1
	기타	2	3.1
	합계	29	45.3
	결측값	35	54.7
	합계	64	100.0
자격취득 시험 횟수 적절성 여부	예	50	44.2
	아니오	46	40.7
	결측값	17	15.0
	합계	113	100.0

### (5)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제도 개선

현 자격제도 개선 필요 여부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서는 그렇다를 28명(43.8%), 매우 그렇다를 19명(29.7%), 그렇지 않다를 9명(14.1%), 전혀 그렇지 않다를 3명(4.7%), 잘 모르겠다를 3명(4.7%)이 응답하였다.



〈표 III-47〉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제도 개선 필요 여부

구분		인원(명)	비율(%)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제도 개선 필요 여부	전혀 그렇지 않다	7	6.2
	그렇지 않다	22	19.5
	그렇다	50	44.2
	매우 그렇다	25	22.1
	잘 모르겠다	7	6.2
	결측값	2	1.8
	합계	113	100.0

분야에 따라 전문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증을 부여할 경우 전문 분야에 대해 중복응답 한 결과 교육분야에 40명(23.1%), 법률분야에 37명(21.4%)과 의료분야에 37명(21.4%), 방송분야에 30명(17.3%), 여가분야에 23명(13.3%), 기타분야에 6명(3.5%)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48〉 전문 청각장애인통역사 분야에 대한 의견

구분		인원(명)	비율(%)	케이스 중 비율(%)
전문 청각장애인통역사 분야에 대한 의견	방송	42	16.4	48.8
	법률	55	21.5	64.0
	의료	56	21.9	65.1
	교육	58	22.7	67.4
	여가	33	12.9	38.4
	기타	12	4.7	14.0
	합계	256	100.0	297.7

분야별 전문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증 부여 방법에 대해서 중복응답 한 결과 전문 분야 관련 실기시험 합격 시 부여에 20명(29.0%), 특정분야에서 일한 경력이 있으면 부여에 17명(24.6%), 교육연수를 이수했으면 부여에 15명(21.7%), 일정경력이 있으면 부여에 12명(17.4%), 대학에서 전문분야를 전공했으면 부여에 5명(7.2%) 순으로 부여 방법을 제시하였다.

〈표 III-49〉 분야별 전문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증 부여 방법

구분		인원(명)	비율(%)	케이스 중 비율(%)
전문 청각장애인통역사 분야에 대한 의견	특정분야에 일한 경력이 있으면 부여	24	22.9	29.3
	일정경력이 있으면 부여	17	16.2	20.7
	전문 분야 관련 실기시험 합격 시	28	26.7	34.1
	교육연수를 이수했으면 부여	28	26.7	34.1
	대학에서 전문분야를 전공했으면 부여	7	6.7	8.5
	기타	1	1.0	1.2
	합계	105	100.0	128.0

지역 농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경우 활동 영역에 대해 중복응답 한 결과 근로지원 관련에 34명(38.6%), 활동보조 관련에 28명(31.8%), 관공서이용 관련에 25명(28.4%)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50〉 지역 내(內)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경우 활동 영역

구분		인원(명)	비율(%)	케이스 중 비율(%)
지역 내(內)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경우 활동 영역	활동보조 관련	43	31.9	53.8
	근로지원 관련	48	35.6	60.0
	관공서이용 관련	43	31.9	53.8
	기타	1	0.7	1.3
	합계	135	100.0	168.8

지역 내(內) 농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증 부여 방법에 대해 중복응답 한 결과 관련 단체에서 일정 경력이 있는 경우에 33명(42.3%), 농아인협회 양성교육에 참여한 경우에 27명(34.6%)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51〉 지역 내(內)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증의 부여 방법

구분		인원(명)	비율(%)	케이스 중 비율(%)
지역 내(內) 청각장애인 통역사 자격증의 부여 방법	농 관련 단체에서 일정 경력	54	44.6	65.9
	수어교실 고급반 이상 이수	7	5.8	8.5
	농아인협회 양성교육	40	33.1	48.8
	대학 수어통역 전공	17	14.0	20.7
	기타	3	2.5	3.7
	합계	121	100.0	147.6

급수에 따른 보상방식과 관련해서는 급수에 따라 별도 수당을 제공해야 한다는 28명(43.8%), 특정 급수만 슈퍼바이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16명(25.0%), 특정급수만 수어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5명(7.8%) 순으로 선정하였으며 15명(23.5%)은 응답을 하지 않았다.

〈표 III-52〉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 급수에 따른 보상방식

구분		인원(명)	비율(%)
청각장애인 통역사 자격제도 개선 필요 여부	급수에 따라 별도 수당을 제공해야 한다.	48	42.5
	특정 급수만 슈퍼바이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2	19.5
	특정급수만 수어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6.2
	결측값	36	31.8
	합계	113	100.0

#### 4) 시사점

청각장애인통역사를 대상으로 현재 수행 중인 업무 및 자격제도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청각장애인통역사들은 특정 통역분야에 치중하여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여러 분야와 관련된 통역을 제공하고 있다. 일상생활 업무와 관련된 통역은 물론 법률, 의료, 방송, 교육, 종교, 행정업무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된 통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청각장애인통역사는 특정 분야와 관련된 통역업무만을 수행

하기보다는 일상생활 및 전문분야에 걸쳐 통역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청각장애인통역의 전문화를 위해 전문분야를 선정하여 보다 차별화된 훈련이나 자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각장애인통역사들을 위한 보충적인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해 특정 분야 혹은 전문 분야와 관련된 지식이나 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청각장애인통역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통역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분야 통역 훈련이나 관련 보수교육이 필요함을 직·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청각장애인통역사의 업무 능력과 청각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청각장애, 수어통역, 청각장애인통역 등에 대해 지속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참여자들이 청각장애에 대한 인식부족이 실제 업무 수행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임을 지적하고 있듯이 사회 전반에 걸쳐있는 청각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청각장애 관련 단체나 기관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넷째, 청각장애인통역사 필기·실기시험에 대해 전체적으로 현행 시험과정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하였으나 일부 과목과 난이도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반상식, 수어통역<sup>2</sup> 등의 과목 조정이 필요하며 필기·실기시험의 전체적인 난이도를 조정하여 보다 많은 청각장애인통역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실기시험에 인터뷰를 추가하는 것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의 활성화 및 전문화 방안을 조사하였다. 자문회의 및 연구회의를 통해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를 대상으로 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하여 자격제도 활성화 및 전문화, 통역 서비스의 문제점·개선점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조사·분석하였다. 그리고 실제 수어통역·농통역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현행 통역 서비스의 문제점·개선점,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또한 전국적으로 수어통역·농통역 관련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통역사 주요 현황, 자격제도, 수어통역·농통역 서비스의 문제점·개선점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본 장에서는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제도의 활성화 및 전문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제언을 제안하였다.

〈표 V-1〉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한 제언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 통역사 활성화 방안	자격시험의 필기·실기시험 과목 조정	실제 통역과 연관성이 높은 과목으로 대체(전문 분야 통역과 관련된 과목 필요)
		합격을 위한 시험대비 철저
	자격시험의 실기능력 강조	기초적 필기시험 후 교육·훈련을 통한 실기강조
		실기능력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검정
시험횟수 증대	필기시험의 가중치 상향 조정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 통역사 전문화 방안	전문 분야 자격인증 도입	필기시험을 수어형태로 제시
		1년 2회 이상 복수 시험 실시
		분야에 따른 차등화된 자격인증을 도입
	전문 분야 자격증에 대한 혜택 제공	전문 분야 자격증 발급 기준 마련
		경력기준(업무 시간, 업무 연수 등) 선정
	개별 통역사의 업무시간 및 활동영역에 대한 전산화·체계화 병행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유형의 혜택 제공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관련 기관 의 관리자 직위에 우선 배치·채용	
	전문 분야 관련 보수교육·훈련의 강사로 우선 위촉	



	보수교육의 개선	보수교육 혹은 보수교육 인증 교육 확대 다양한 교육이수 프로그램 제공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 통역사 서비스 개선 방안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 통역사 윤리강령 제정	윤리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교육과정 필요 RID의 전문가 행동 윤리강령(Code of Professional Conduct) 활용 및 적용
	방송 통역 모니터링 실시	방송 매체에서 제공되는 수어통역 서비 스의 적합성·적절성 등을 모니터링 수어통역사평가지(Sign Language Interpreter Evaluation Form) 활용 방송 수어통역 관련 매뉴얼 제작·배포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 통역사에 대한 채용·노동환경 개선 및 인식개선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 통역사에 대한 채용·노동환경 개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개정 청각장애인 거주비율에 따른 수어통역사· 청각장애인통역사 배치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 통역사에 대한 인식개선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 장애인식개선 사업·프로그램 활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개정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 개정

## 1.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활성화 방안

### 1) 자격시험의 필기·실기시험 과목의 조정

전문가 FGI 및 설문조사 결과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시험의 필기·실기시험 과목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필기·실기시험 과목 중 실제 통역 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과목을 연관성이 높은 과목으로 개선하거나 시험통과를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문가 FGI에 참여한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들은 실제 업무와 관련해 복지일반과 관련된 과목보다는 전문통역 분야와 관련된 지식 혹은 상식과 관련된 과목이 실용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청각장애인통역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필기·실기시험에 대해 전체적으로 현행 시험 과정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하였으나 특정 과목의 내용 일부를 개선할 것을 제시하

였다. 또한 청각장애인통역사들은 통과가 어려운 과목에 대한 시험준비 대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필기·실기시험의 전체적인 개선과 더불어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들이 시험통과에 어려운 과목을 중심으로 시험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및 훈련 등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보다 많은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를 배출하여 자격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계다가 전문가 FGI 결과에 의하면 우선적으로 필기시험의 난이도를 조정해 다수의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를 배출하고 이후에 보수교육이나 기타 추가적인 훈련을 통해 통역 실기능력을 높이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격취득 자체는 용이하게 하고 이후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의 전문성·통역실기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식은 미국이나 호주의 사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NAATI, 2018; RID, 2018). 예를 들어, 미국의 전국통역사자격증(National Interpreter Certification, NIC)의 경우 18세 이상이면 NIC 지식 시험(NIC Knowledge Exam)에 응시할 수 있다. 객관식인 NIC 지식 시험(NIC Knowledge Exam)을 통과한 후 5년 내에 RID에서 제시하는 교육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NIC 인터뷰 및 수행평가 시험(NIC Interview and Performance Exam)을 볼 수 있다. NIC 인터뷰 및 수행평가 시험(NIC Interview and Performance Exam)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한 평가로써 시험 실시 및 평가는 비디오로 녹화된다. NIC 인터뷰 및 수행평가 시험(NIC Interview and Performance Exam)을 보기 위해서는 최소 학사학위(전공은 무관) 혹은 RID에 등록된 2012년도 대체자격과정(Alternative Pathway to Eligibility) 증서를 소지해야 한다(RID, 2018).

## 2) 자격시험의 실기능력 강조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시험에서 필기보다 실기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제도의 핵심은 단순한 통역지식, 사회복지 관련 지식을 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통역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을 검정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이에 실기를 통한 기초 통역 능력을 검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시험의 경우 실기시험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필기시험을 보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각장애인통역사 응시자들이 문어체 형태의 필기시험에 익숙하지 않아 필기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기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실기의 비중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크게 실기시험 통과 후 필기시험 실시, 실기시험의 가중치 상향조정, 필기시험을 수어형태로 제시하는 방법들이 있다. 호주의 사례를 보면 준전문통역사(Paraprofessional Interpreter) 자격시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험은 약 40분간 실시되며 섹션 1: 사회적 및 문화적 인식(5점), 섹션 2: 전문가 윤리(5점), 섹션 3: 대화통역( $2 \times 45 = 90$ 점)로 이루어진다. 섹션 1에서 4문항은 통역의 사회적·문화적 인식과 관련된 것으로 처음 2문항은 영어로 질문하며 영어로 답하고 나머지 2문항은 호주수어로 질문하고 호주수어로 답한다. 섹션 2에서는 전문가 윤리와 관련해 4문항이 출제되며 처음 2문항은 영어로 질문하고 영어로 답하며 나머지 2문항은 호주수어로 질문하고 호주수어로 답한다. 섹션 3에서는 2개의 대화가 진행되며 각 대화는 약 300단어로 영어 대화자와 호주수어 사용자가 대화한다. 대화는 약 35단어를 기준으로 적절히 나뉘어져 있으며 대화 1은 연속모드로 통역해야 하며 대화 2는 동시모드로 통역해야 한다. 자격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응시자는 섹션 1에서 최소 2.5점, 섹션 2에서 최소 2.5점, 섹션 3에서 2개 대화 점수에서 최소 63점 및 각 대화에서 최소 29점, 총점인 100점에서 최소 70점을 획득해야 한다. 모든 호주수어 시험은 비디오로 녹화된다(NAATI, 2018). 이처럼 필기시험 문항 자체도 일부는 수어로 질문하고 답하게 함으로써 실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함과 동시에 실제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검정함으로써 실용적인 수어능력을 겸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3) 시험횟수 증대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증의 활성을 위해 자격시험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격시험 응시 기회를 높여 다수의 응시자가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전국통역사자격증(National Interpreter Certification)과 공인청각장애인통역사(Certified Deaf Interpreter), 영국의 등록 수어통역사(Registered Sign Language Interpreter)와 견습수어통역사(Trainee Sign Language Interpreter), 호주의 준전문통역사(Paraprofessional Interpreter)와 전문통역사(Professional Interpreter) 등은 매년 2회 이상 복수로 자격시험을 시행하거나 인증 교육기관에서 제공한 교육이나 훈련의 이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확인·검증함으로써 자격증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NAATI, 2018; RID, 2018).

## 2.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전문화 방안

### 1) 전문 분야 자격인증 도입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의 주 업무 영역을 조사한 결과 통역사들은 청각장애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업무를 포함하여 의료 관련 통역 업무, 직업(취업알선, 취업지도) 관련 통역 업무, 행정(문서작성, 회의) 관련 통역 업무, 교육 관련 통역 업무 등 여러 영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현장에서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들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다양한 분야와 관련된 통역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의미한다. 즉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의 업무 분포를 통해 다양한 영역과 관련된 지식을 익히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자격제도와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수어통역·농통역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격증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전문성 혹은 분야에 따라 차등화된 자격인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어통역·농통역 일반 과정과 전문과정을 분류하여 차등화된 자격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통역 전문성을 강화하여 통역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자격증의 차등화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한국교육원자격 등과 더불어 미국, 영국, 호주의 자격증의 사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8; NAATI, 2018; RID, 2018).

구체적으로, 법률, 의료, 종교 등 일상적인 수어통역·농통역 이외의 특수한 수어통역·농통역이 필요한 영역을 선별하여 해당 분야와 관련된 지식과 경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자격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법률이나 의료 영역과 관련된 분야에서 행해지는 청각장애인 및 비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은 정확성 및 유창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수한 영역을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에서는 이러한 특수한 영역에 대한 자격 검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화된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를 양성하고 있다(NAATI, 2018; RID, 2018). 미국의 경우 NAD III(일반통역사), NAD IV(고급통역사), NAD V(최고급통역사)로 영국의 경우 등록 수어통역사(Registered Sign Language Interpreter), 견습 수어통역사(Trainee Sign Language Interpreter)로 호주의 경우 준전문통역사(Paraprofessional Interpreter), 전문통역사(Professional Interpreter)로 구분하여 통역사의 지식과 경력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전문 분야 자격증 발급 기준과 관련해서는 해외의 유사한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전문 분야 발급 사례를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즉 전문 분야 자격증의 경우 추가적인 자격시험을 응시하기 보다는 전문 분야와 관련된 경력(업무 시간, 업무 연수 등)의 정도에 따라 발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NRCPD, 2018; RID, 2018).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력기준(업무시간, 업무연수 등)을 선정해야 하며 현장에서 개별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의 업무시간 및 활동영역에 대한 전산화·체계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개별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의 활동영역·활동시간을 전산화·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정보처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개별 정보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주체와 사례관리 체계가 확실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 2) 전문 분야 자격증에 대한 혜택 제공

전문 분야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증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전문 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인센티브나 혜택이 제공되어야 한다. 특정 영역에 대한 전문적 지식·경력, 전문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로서의 자부심, 청각장애인에게 특별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긍심 등과 같은 무형의 이점과 더불어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유형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일부 주정부 장애인 재활기관에서 재활상담사를 채용할 때 전문 분야와 관련된 수어통역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동일한 직급과 비교해 10% 정도 높은 급여를 지급하며(Department of Assistive and Rehabilitative Services, 2015), 영국에서는 견습수어통역사(Trainee Sign Language Interpreter)는 반드시 수퍼비전을 받아야하는데 주로 등록 수어통역사(Registered Sign Language Interpreter)가 수퍼비전을 제공한다(NRCPD, 2018). 유사한 사례로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복지기관에서 관리급을 채용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필수사항으로 요구하거나 장애 관련 기관에서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기도 한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재활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혹은 대학에서 재활상담실습 과목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Commission on Rehabilitation Counselor Certification, 2018). 이처럼 전문 분야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을 인정 받은 경우에도 유형의 혜택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예로 수어통역

사·청각장애인통역사 관련 기관의 관리자 직위에 우선 배치·채용, 전문 분야 관련 보수교육·훈련의 강사로 우선 위촉 등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여 전문 분야 통역에 대한 관심과 보상기회를 높여야 한다.

### 3) 보수교육의 개선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수교육을 보다 전문화·개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문 분야에 맞는 통역 능력을 지속적으로 함양하기 위해서는 보수교육 혹은 보수교육 인증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들의 개별 능력이나 기호에 맞는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전문 영역에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보수교육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설문 응답에 의하면 교육정도와 더불어 추가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를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의 내용을 파악하여 보수교육에 적용함으로써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들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법률, 의료, 교육, 행정, 종교 등과 같은 전문분야 지식·실무와 관련된 교육, 청각장애인과 관련된 긴밀성·유대감 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개별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의 수준과 능력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 통역 관련 센터에서 필요한 행정 관련 교육, 신문, 방송 등에서 자주 사용되는 전문 용어에 대한 통역 교육 등이 필요하다.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보수교육은 미국, 영국, 호주의 모든 해외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다. 특히 해외의 경우에는 보수교육의 방법과 프로그램이 매우 다양하다. RID 자격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RID 자격증 관리 프로그램(Certification Maintenance Program, CMP)를 충족해야 한다. CMP 보수교육 기준은 총 8.0 학점으로써 이 중 6.0은 반드시 전문과정(Professional Study)을 이수해야 하며 일반과정(General Study)은 2.0까지 이수할 수 있다. RID 자격증 소지자는 보수교육 이수를 위해 반드시 RID가 승인한 과정 혹은 단체를 통해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RID 승인 과정이나 단체는 RID 웹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인가받은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 이수, RID 승인 활동에 참여, 참여자 중심의 비 RID 활동에 참여, 자율학습 활동에 참여 등의



4가지 방법을 통해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RID, 2018).

이처럼 개별적인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의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고 각기 다른 교육수준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이수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 3.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서비스 개선 방안

#### 1)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윤리강령 제정

청각장애인에게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를 위한 윤리강령이 필요하다. 윤리강령이란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지침으로써 변호사, 상담사, 교사,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종에서 활용되고 있다(사회복지사협회, 2018; CRCC, 2018). 특히 수어통역·농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청각장애인의 개인적인 특성 및 활동과 관련된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청각장애인의 개인정보보호, 공적·사적 경계의 유지, 통역사의 전문성 등을 규정하는 윤리강령의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의 윤리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보수교육 혹은 관련 시험을 활용해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의 윤리의식을 향상시켜 실제 현장에서 청각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윤리적 언행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높은 윤리적 규범은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를 비롯해 여러 전문 자격제도에서 흔히 요구되는 전문가의 기본적인 소양으로써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8; NAATI, 2018; RID, 2018).

RID에서는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를 대상으로 전문가 행동 윤리강령(Code of Professional Conduct)을 제정하여 다음의 7가지 주요 원칙을 모든 통역사들이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ID, 2018).

- ① 통역사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의사소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보장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② 통역사는 통역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을 소지해야 한다.
- ③ 통역사는 특수한 통역 상황에 적절히 행동해야 한다.
- ④ 통역사는 청각장애인을 존중해야 한다.
- ⑤ 통역사는 동료, 인턴, 학생 등을 존중해야 한다.
- ⑥ 통역사는 개인 사업을하는 경우 윤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 ⑦ 통역사는 전문적인 자기개발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RID의 윤리강령을 기초로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를 위한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현장에 보급할 필요가 있으며 윤리와 관련된 보수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여 윤리강령이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 2) 방송 통역 모니터링 실시

방송과 관련된 수어통역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방송이란 공공의 목적으로 전자적으로 송출되는 대중매체로써 다수의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역이 선행되어야 한다. 방송의 독특한 목적 및 파급력을 감안한다면 정기적으로 방송 매체에서 제공되는 수어통역 서비스의 적합성·적절성 등을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방송에서 제공되는 수어통역을 평가하기 위해 수어통역평가지를 개발하여 정기적으로 수어통역정도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어통역평가지는 수어통역사의 통역능력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구조화된 평가지로써 외국의 대학이나 교육부 등에서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클라크 대학(Clark College)에서는 수어통역사평가지(Sign Language Interpreter Evaluation Form)을 통해 수어통역실력(Sign Language Skill)을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어통역실력은 표현된 개념을 통역하는 능력, 지화(fingerspelling), 얼굴표정, 몸의 위치, 속도 및 지체시간, 입의 움직임 등을 선택지 4개(이해하기 어려움 1, 개선이 필요함 2, 우수함 3, 매우 우수함 4)로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자가 추가 의견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Clark College, 2018). 레이크 워싱턴 공과대학(Lake Washington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도 수어통역실력을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어통역기술(Sign Language Skill)을 종합적인 수어통역능력, 지화(fingerspelling)의 명확성 및 정확성, 학생을 이해하는 수어



-구어(Sign-to-Voice), 학생이 이해하는 구어-수어(Voice-to-Sign), 얼굴 표정(비매뉴얼 문법), 적절한 언어 모드(Appropriate Language Mode) 등을 선택지 4개(수용하기 어려움 1, 개선이 필요함 2, 수용할 수 있음 3, 매우 우수함 4)로 평가하고 있다(Lake Washington Institute of Technology, 2018).

또한 방송사에 수어통역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해 제공함으로써 방송사가 수어통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방송수어통역을 실시하는 수어통역사의 전문성 개발에 방송사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하이브리드 브로드캐스트 브로드밴드 TV(Hybrid Broadcast Broadband TV)에서는 HBBTV 수어통역 매뉴얼(Sign Language Interpretation in HBBTV)에 수어통역의 정의, 수어통역의 활용, 수어통역방송의 종류, 화면 상 표현되는 수어통역의 종류, 권고사항 등을 제시하여 방송사 관계자 및 방송 수어통역사들이 수어통역을 올바르게 제공하도록 하고있다(HBBTV, 2018).

## 4.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에 대한 채용·노동환경 개선 및 인식개선

### 1)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에 대한 채용·노동환경 개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법률에 따라 장애인들은 과거에 비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기회가 높아짐과 동시에 의료시설의 접근성 개선으로 의료시설에 방문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해졌다. 특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에서는 장애인이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진료소, 지방의료원 등을 이용하는 경우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모성보호,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3항에서는 이동 및 이용 편의 제공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장애인의 이동 및 이용 편의 제공)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

의 내용으로 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한 지침의 개발 및 보급과 일반 차량 또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구급차 등의 이용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의료시설을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한 편의서비스는 수어통역·농통역임을 감안한다면 본 시행령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표 V-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장애인의 이동 및 이용 편의 제공)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장애인의 이동 및 이용 편의 제공)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로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한 지침의 개발 및 보급</li> <li>2. 일반 차량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구급차 등의 이용 지원</li> </ol>	<p>제4조(장애인의 이동 및 이용 편의 제공)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로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한 지침의 개발 및 보급</li> <li>2. 일반 차량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구급차 등의 이용 지원</li> <li>3. 청각장애인 및 의사소통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통역 지원</li> </ol>

이러한 법률 개정과 더불어 청각장애인들이 적시에 수어통역·농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의 수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도록 청각장애인의 거주비율이 높은 지역에는 정해진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수 이상으로 통역사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재정적·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들의 업무 비중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들이 본인들의 주요 업무인 통역 서비스 제공에 치중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 및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예산 확충, 노동여건 개선 등 다양한 측면의 지원이 요구되며 청각장애 관련 단체나 기관이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노동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 2)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에 대한 인식개선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의 업무 능력과 청각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청각장애, 수어통역·농통역 등에 대해 지속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청각장애에 대한 인식부족이 실제 업무 수행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임을 지적하고 있듯이 사회 전반에 걸쳐있는 청각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청각장애 관련 단체나 기관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이 통역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유, 각종 기관의 통역 서비스 미제공 실태,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를 하대하는 사례,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편의시설의 종류 및 특성 등과 관련된 내용을 홍보·교육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의 중요성, 인식개선 방법, 인식개선 사업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에서는 장애인 인식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개선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청각장애, 수어통역·농통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통역 과정 중 무시당하거나 부적절한 대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의 1항 5호에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를 추가하여 법적으로 차별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표 V-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li> <li>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li> <li>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li> <li>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li> <li>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li> </ol> <p>...중략...</p>	<p>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li> <li>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li> <li>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li> <li>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li> <li>5.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동행하는 한국수어 통역사 및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li> </ol> <p>...중략...</p>

이와 함께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수어통역)에서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들이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차별이나 불리한 대우를 당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청각장애인들이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연방송 등에 적절히 참여·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표 V-4〉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수어통역)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6조(수어통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 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 등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 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제16조(수어통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 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 등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 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2항, 제3항의 수어통역을 지원하는 경우 한국수어통역사가 차별이나 불리한 대우를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2014). 한국수어 정비 사업. 서울: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18). 한국어 교원자격 자격제도 세부 내용. 서울: 국립국어원.
- 국제통역·번역협회(2018. 9. 10.). 국제통역번역사 자격증 시험관리규정. retrived from [www.itt.or.kr/sbMn.php?pgNm=ktdsa](http://www.itt.or.kr/sbMn.php?pgNm=ktdsa)
- 곽정란(2010). 인공내이를 둘러싼 부모의 선택에 관한 질적 연구. 특수교육저널, 11(2), 51-63.
- 이기수(2016). 수사절차상 장애인 피의자 보호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찰학연구, 16(4), 99-123.
- 이명진·최진혁·장정훈·이규엽·이상훈(2012). 인공와우 이식 아동의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만족도.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13(3), 343-355.
- 안영희·한정우(2015). 한·중·일 수어통역 교육과정 비교·분석.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2(2), 104-121.
- 원성옥(2017). 우리나라 수어 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서울: 국립국어원.
- 유지영(2002). 청각장애대학생의 수화통역서비스 만족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논문. 대구대학교.
- 서울수화전문교육원(2015). 수어통역사 자격시험 현황. 서울: 서울수화전문교육원.
- 조윤화·김현식·변용찬·김태용(2015). 장애인구 추이 분석 및 장기 추계 전망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 하종아(2002). 한국 TV 수화통역방송에 대한 농인의 인지도 조사연구. 대구대학교 석사논문. 대구대학교.
- 한국농아인협회(2017). 수어통역 현황(내부자료). 서울: 한국농아인협회.
- 한국농아인협회(2018a). 수어통역사 자격제도 개요. 서울: 한국농아인협회.
- 한국농아인협회(2018b).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제도 개요. 서울: 한국농아인협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17).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서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18). 2018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 서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한국장애인개발원(2017). 2017 장애통계연보.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 Clark College(2018, 9. 11.). Sign language interpreter evaluation form, retrived from <http://www.clark.edu/>
- Commission on Rehabilitation Counselor Certification(2018). Benefits of Certified Rehabilitation Counselor. Samburg, IL: Authors.
- Department of Assistive and Rehabilitative Services(2015). Rehabilitation service manual. Austin, TX: Authors.
- Hybrid Broadcast Broadband TV(2018, 9. 12.).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in HBBTV. retrived from <https://www.hbbtv.org/>
- Lake Washington Institute of Technology(2018). Sign language evaluation form, retrived from <https://www.lwtech.edu/>
- National Accreditation Authority for Translators and Interpreters(2018). Accreditation in Auslan/English interpreting. Sydney, Austrelia: Authors.
- National Registers of Communication Professionals working with Deaf and Deafblind People(2018, 4. 26.).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certifications, retrived from <https://www.nrcpd.org.uk/approved-courses>
- Registry of Interpreters for the Deaf(2018, 4. 26.). About certifications, retrived from <https://www.rid.org/>

# 부 록





## 1. 수어통역사 설문 - 청인 대상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에서는 수어통역사 자격제도 발전을 위해 수어통역사 자격증 개선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장애인정책 개선방안 및 대안을 수립하고 개발된 정책집행에 따른 결과를 수집하고 평가하는데 기초가 되는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의 목적은 수어통역사 자격제도의 개선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어통역사 및 수어통역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 수어통역사 자격증 제도의 현황·개선점·발전방향 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수어통역사 자격증 제도를 개선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을 통한 모든 응답은 오직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응답자에 관한 일체의 신상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저히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문의 및 회신: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연구1팀

서원선 부연구위원 Tel: 02)3433-0658 Email: wonsunseo@gmail.com Fax: 02)416-9567

김민정 연구원 Tel: 02)3433-0716 Email: belle2409@koddi.or.kr Fax: 02)416-9567



---

---

## A. 일반적 현황

---

---

다음 물음에 V 또는 O로 표시해 주십시오. 또는 해당 칸에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20세 미만 ② 20-29세 ③ 30-39세 ④ 40-49세 ⑤ 50세 이상

3.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강원도 ② 경기도 ③ 경상남도 ④ 경상북도 ⑤ 광주광역시 ⑥ 대구광역시  
⑦ 대전광역시 ⑧ 부산광역시 ⑨ 서울특별시 ⑩ 세종특별자치시 ⑪ 울산광역시  
⑫ 인천광역시 ⑬ 전라남도 ⑭ 전라북도 ⑮ 제주특별자치도 ⑯ 충청남도  
⑰ 충청북도

4. 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 ① 고등학교 졸업(중퇴 포함)  
② 전문대학 졸업(중퇴 포함)  
③ 대학교 졸업(중퇴 포함)  
④ 대학원 석사 졸업(수료 포함)  
⑤ 대학원 박사 졸업(수료 포함)

5. 귀하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모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수어통역  
② 수어교육  
③ 사회복지  
④ 특수교육  
⑤ 재활심리  
⑥ 직업재활

- ⑦ 직업상담
- ⑧ 작업치료
- ⑨ 기타1 (        )
- ⑩ 기타2 (        )

6. 귀하가 소지한 자격증은 무엇입니까? 모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수어통역사
- ② 사회복지사
- ③ 보육교사
- ④ 작업치료사
- ⑤ 직업능력평가사
- ⑥ 심리상담사
- ⑦ 보조공학사
- ⑧ 기타1 (        )
- ⑨ 기타2 (        )

7. 귀하가 수어통역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육에 참여한 기관은 어디입니까? 모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학위 과정
- ② 수어교육원
- ③ 농 관련 기관(한국농아인협회·수어통역센터·복지관 등)
- ④ 종교 단체(교회 등)
- ⑤ 기타 (        )

8. 현재까지 귀하의 수어통역 관련 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 5년 미만
- ③ 5년 이상 ~ 10년 미만    ④ 10년 이상

9. 귀하는 한국수어를 언제 처음 배우기 시작하였습니까?

- ① 유치원 시기
- ② 초·중·고 학령기



- ③ 대학교 시기
- ④ 사회생활 시기
- ⑤ 기타(            )

10. 귀하의 현재 활동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 ① 학교 등 교육기관 종사
- ② 사회복지 관련 기관(수어통역센터, 복지관 등)종사
- ③ 사회복지 관련 단체(한국농아인협회 등)종사
- ④ 공공기관(공무원 등)종사
- ⑤ 수어 상담 및 통신중계서비스 관련 기관(금융기관, 107, 110, 120 등)종사
- ⑥ 프리랜서
- ⑦ 학교 재학중(학생)
- ⑧ 비활동(자원봉사)
- ⑨ 기타(            )

11. 귀하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 ① 기관장급(관장/시설장)
- ② 상위관리급(부장/국장)
- ③ 중간관리급(과장/팀장)
- ④ 실무급(사원/대리)
- ⑤ 프리랜서
- ⑥ 기타(            )

12. 현재 귀하의 고용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정규직
- ② 무기계약직
- ③ 비정규직
- ④ 기타(            )

13. 귀하가 수어통역사 자격에 응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업무상 필요해서

- ② 자기개발을 위해서
- ③ 수어통역 관련 학과를 졸업해서
- ④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 ⑤ 기타(            )

## B. 수어통역사 업무특성과 노동조건

• 다음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가 수어통역사로서 현재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며, 현재 업무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응답 / 비율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90%	91%~100%
① 일상생활 지원을 포함하는 단순 통역 업무										
② 교육 관련 통역 업무										
③ 법률 관련 통역 업무										
④ 의료 관련 통역 업무										
⑤ 방송(미디어) 관련 통역 업무										
⑥ 종교 및 의식(결혼식) 관련 통역 업무										
⑦ 재활서비스(상담, 복지) 관련 통역 업무										
⑧ 여가(문화활동, 예술) 관련 통역 업무										
⑨ 직업(취업알선 취업지도) 관련 통역 업무										
⑩ 수어통역 행정(문서작성 회의) 관련 통역 업무										
⑪ 기타(글로 적어주세요)										



2. 수어통역사로서 일할 때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각각의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어통역사로서 차별 침해 경험	① 있다	② 없다
① 인종 및 피부색에 의한 차별경험		
② 성관련 차별경험		
③ 실적에 따른 차별경험		
④ 연령에 따른 차별경험		
⑤ 학력에 따른 차별경험		
⑥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경험		
⑦ 종교에 따른 차별경험		
⑧ 정치/사회적 의견에 따른 차별경험		
⑨ 혼인여부에 따른 차별경험		
⑩ 지역에 따른 차별경험		
⑪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경험		
⑫ 장애유무에 따른 차별경험		
⑬ 기타( )		

3. 수어통역 업무 수행 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위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	-----	--

- ① 수어통역사로서 자신의 능력 부족
- ② 수어통역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낮은 신뢰
- ③ 청각장애에 대한 인식 부족
- ④ 수어통역사들 간 신뢰 부족
- ⑤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식 부족
- ⑥ 기타 ( )

### C. 수어통역사 자격요건

- 다음은 담당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요건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신의 상태가 아니라 현재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격요건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어통역사로 일하기 위해 어떠한 전공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수어통역 관련 전공
- ② 수어교육 관련 전공
- ③ 사회복지 관련 전공
- ④ 특수교육 관련 전공
- ⑤ 심리/상담 관련 전공
- ⑥ 보건/의료 관련 전공
- ⑦ 교육 관련 전공(특수교육 제외)
- ⑧ 행정 관련 전공
- ⑨ 직업 관련 전공
- ⑩ 전공은 상관없다.
- ⑪ 기타 (            )

2. 현재 귀하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느 정도의 교육수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고등학교 졸업
- ② 전문대학 졸업
- ③ 대학교 졸업
- ④ 대학원 졸업
- ⑤ 기타 (            )

3.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후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 없다
- ② 필요 없다
- ③ 필요하다



- ④ 매우 필요하다
  - ⑤ 잘 모르겠다
4.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후 어떠한 교육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농인사회 이해를 위한 교육
  - ② 전문 통역분야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인 교육
  - ③ 전문 통역분야에 대한 수어통역 교육
  - ④ 전반적인 업무를 이해하기 위한 오리엔테이션
  - ⑤ 기타 (                    )
5. 통역현장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배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수어통역 자격증 유무에 따라서
  - ② 대학 전공에 따라서
  - ③ 현장 경력에 따라서
  - ④ 직무분석이나 인성/적성검사에 따라서
  - ⑤ 기타 (                    )
6. 현재 수어통역사의 능력에 따라 업무가 적절하게 할당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그렇다
  - ④ 매우 그렇다
  - ⑤ 잘 모르겠다
7. 다음 중 수어통역 분야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 (    ) 수어통역사 수가 늘어나야 한다.
  - (    ) 수어통역 수당이 현재보다 높아져야 한다.
  - (    ) 수어통역사를 위한 보수교육이 다양화되어야 한다.
  - (    ) 청인/농인 수어통역사 간 이해를 높여야 한다.
  - (    ) 수어통역이 활동보조제도와 같이 바우처 사업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 ) 수어통역사가 취업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하여 취업기회를 넓혀야 한다.
- ( ) 수어통역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 ( ) 지역 수어통역센터 확대와 수어통역사 정원이 증원되어야 한다.
- ( ) 농인과 수어통역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 ( ) 기타

---

### D. 수어통역사 자격취득 방법

---

1. 귀하는 수어통역사 자격을 취득한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① 1년 미만                      ② 1년-3년 미만                      ③ 3년-5년 미만
  - ④ 5년-10년 미만              ⑤ 10년-15년 미만                  ⑥ 15년 이상
  
2. 귀하가 수어통역사 필기시험을 보기 위해 공부한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6개월 이내    ② 6개월-1년    ③ 1년-3년    ④ 3년-5년    ⑤ 5년 이상
  
3. 귀하가 수어통역사 실기시험을 보기 위해 공부한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6개월 이내    ② 6개월-1년    ③ 1년-3년    ④ 3년-5년    ⑤ 5년 이상
  
4. 귀하의 시험 응시 횟수를 적어주십시오.
 

필기 ( )회, 실기 ( )회
  
5. 현재 수어통역사 자격검정시험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합격자 연수 3가지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이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절하지 않다    ② 적절하지 않다                      ③ 적절하다
  - ④ 매우 적절하다            ⑤ 잘 모르겠다



6. 필기시험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과목	난이도
장애인복지	①매우 쉬움 - ②쉬움 - ③적절함 - ④어려움 - ⑤매우 어려움
한국어의 이해	①매우 쉬움 - ②쉬움 - ③적절함 - ④어려움 - ⑤매우 어려움
청각장애인의 이해	①매우 쉬움 - ②쉬움 - ③적절함 - ④어려움 - ⑤매우 어려움
수어통역의 기초	①매우 쉬움 - ②쉬움 - ③적절함 - ④어려움 - ⑤매우 어려움
필기시험 전반	①매우 쉬움 - ②쉬움 - ③적절함 - ④어려움 - ⑤매우 어려움

7. 실기시험 난이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과목	난이도
필기통역	①매우 쉬움 - ②쉬움 - ③적절함 - ④어려움 - ⑤매우 어려움
수어통역	①매우 쉬움 - ②쉬움 - ③적절함 - ④어려움 - ⑤매우 어려움
음성통역	①매우 쉬움 - ②쉬움 - ③적절함 - ④어려움 - ⑤매우 어려움
실기시험 전반	①매우 쉬움 - ②쉬움 - ③적절함 - ④어려움 - ⑤매우 어려움

8. 검정시험의 과목별 합격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시험과목별 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시험 과목	시험 시간
필기시험	장애인복지(25문항)	80분
	한국어의 이해(25문항)	
	청각장애인의 이해(25문항)	80분
	수어통역의 기초(25문항)	
실기시험	필기통역	30분
	수어통역	
	음성통역	

8-1. 필기시험은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 필기시험을 유지한다.
- ② 현행 필기시험 난이도를 조정한다.
- ③ 시험과목을 변경한다.
- ④ 문항수를 조정한다.
- ⑤ 응시시간을 조정한다.
- ⑥ 기타 ( )

8-2. 실기시험은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 실기시험을 유지한다.
- ② 현행 실기시험 난이도를 조정한다.
- ③ 시험과목을 변경한다.
- ④ 문항수를 조정한다.
- ⑤ 응시시간을 조정한다.
- ⑥ 기타 ( )

9. 수어통역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중요한 평가영역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장애인복지
- ② 한국어의 이해
- ③ 청각장애인의 이해
- ④ 수어통역의 기초

10. 수어통역사 자격시험 중 실기시험의 중요한 평가영역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필기통역
- ② 수어통역
- ③ 음성통역

11. 수어통역사 실기시험 중 인터뷰 등의 영역이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12. 수어통역사 자격 취득방법에 만족하십니까?

- ① 예 → 13번으로 가십시오.
- ② 아니오 → 12-1번으로 가십시오.



12-1. 수어통역사 자격 취득방법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재(시험+합격자 연수 이수) 자격 취득방식을 유지하되 난이도 조정 필요
- ② 수어통역 관련 양성 과정만 이수한 후 자격증 취득
- ③ 일정경력만으로 수어통역사 자격증 취득
- ④ 일정경력과 교육연수과정 이수 후 자격증 취득
- ⑤ 일정경력과 시험(실기 및 필기) 후 자격증 취득
- ⑥ 일정경력과 시험(실기 및 필기) 및 교육연수과정 이수 후 자격증 취득
- ⑦ 수어통역학 관련 학위(학부 혹은 대학원)를 취득한 자에게만 자격증 부여
- ⑧ 기타 (                    )

※ 일정경력 : 수어통역 관련 업무로서 기관이 증량가능한 경력을 말함

13. 현재 자격취득 시험의 횟수는 연 1회입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 E. 수어통역사 자격제도 개선

---

1. 현재 수어통역사는 등급 없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농인에게 질 좋은 통역서비스 제공과 효과적인 통역업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현재 자격제도를 개선(예, 분야별 전문 수어통역사, 지역 내(內) 활동 수어통역사 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설문 종료)
- ② 그렇지 않다(설문 종료)
- ③ 그렇다(1-1번으로 이동)
- ④ 매우 그렇다(1-1번으로 이동)
- ⑤ 잘 모르겠다(1-1번으로 이동)

1-1. 분야에 따라 전문 수어통역사 자격증을 부여한다면 분야별 전문 영역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모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방송관련 분야
- ② 법률 관련 분야
- ③ 의료 관련 분야
- ④ 교육 관련 분야
- ⑤ 여가 관련 분야
- ⑥ 기타 분야

1-2. 수어통역사 자격제도를 1-1과 같이 구분한다면, 분야별 전문 수어통역사 자격증은 어떻게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보기에서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국가공인 수어통역사 자격 취득 후 특정분야(방송/법률/의학/교육)에 일한 경력이 있으면 부여
- ② 국가공인 수어통역사 자격 취득 후 분야 관계없이 일정경력이 있으면 부여
- ③ 국가공인 수어통역사 자격 취득 후 전문 분야 관련 실기시험 합격 시 부여
- ④ 국가공인 수어통역사 자격 취득 후 교육연수를 이수했으면 부여
- ⑤ 국가공인 수어통역사 자격 취득 후 대학 학부/석사에서 전문분야를 전공했으면 부여
- ⑥ 기타( )

1-3. 지역 내(內) 활동으로 제한하고, 지역 농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수어통역사 자격증을 부여한다면 활동 영역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모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활동보조 관련
- ② 근로지원 관련
- ③ 관공서이용 관련
- ④ 기타 ( )



## 2. 청각장애인통역사 설문 - 청각장애인 대상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에서는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제도 발전을 위해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증 개선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장애인정책 개선방안 및 대안을 수립하고 개발된 정책집행에 따른 결과를 수집하고 평가하는데 기초가 되는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의 목적은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제도의 개선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청각장애인통역사 및 수어통역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증 제도의 현황·개선점·발전방향 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증 제도를 개선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을 통한 모든 응답은 오직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응답자에 관한 일체의 신상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저히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문의 및 회신: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연구1팀

서원선 부연구위원 Tel: 02)3433-0658 Email: wonsunseo@gmail.com Fax: 02)416-9567

김민정 연구원 Tel: 02)3433-0716 Email: belle2409@koddi.or.kr Fax: 02)416-9567



---

---

## A. 일반적 현황

---

---

다음 물음에 V 또는 O로 표시해 주십시오. 또는 해당 칸에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20세 미만 ② 20-29세 ③ 30-39세 ④ 40-49세 ⑤ 50세 이상

3.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강원도 ② 경기도 ③ 경상남도 ④ 경상북도 ⑤ 광주광역시 ⑥ 대구광역시  
⑦ 대전광역시 ⑧ 부산광역시 ⑨ 서울특별시 ⑩ 세종특별자치시 ⑪ 울산광역시  
⑫ 인천광역시 ⑬ 전라남도 ⑭ 전라북도 ⑮ 제주특별자치도 ⑯ 충청남도  
⑰ 충청북도

4. 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 ① 고등학교 졸업(중퇴 포함)  
② 전문대학 졸업(중퇴 포함)  
③ 대학교 졸업(중퇴 포함)  
④ 대학원 석사 졸업(수료 포함)  
⑤ 대학원 박사 졸업(수료 포함)

5. 귀하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모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수어통역  
② 수어교육  
③ 사회복지  
④ 특수교육  
⑤ 재활심리  
⑥ 직업재활

- ⑦ 직업상담
- ⑧ 작업치료
- ⑨ 기타1 (        )
- ⑩ 기타2 (        )

6. 귀하가 소지한 자격증은 무엇입니까? 모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청각장애인통역사
- ② 사회복지사
- ③ 보육교사
- ④ 작업치료사
- ⑤ 직업능력평가사
- ⑥ 심리상담사
- ⑦ 보조공학사
- ⑧ 기타1 (        )
- ⑨ 기타2 (        )

7. 귀하가 수어통역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육에 참여한 기관은 어디입니까? 모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학위 과정
- ② 수어교육원
- ③ 농 관련 기관(한국농아인협회·수어통역센터·복지관 등)
- ④ 종교 단체(교회 등)
- ⑤ 기타 (        )

8. 현재까지 귀하의 수어통역 관련 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 5년 미만    ③ 5년 이상 ~ 10년 미만    ④ 10년 이상

9. 귀하는 한국수어를 언제 처음 배우기 시작하였습니까?

- ① 유치원 시기                      ② 초·중·고 학령기                      ③ 대학교 시기
- ④ 사회생활 시기                      ⑤ 기타(        )



10. 귀하의 현재 활동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 ① 학교 등 교육기관 종사
- ② 사회복지 관련 기관(수어통역센터, 복지관 등)종사
- ③ 사회복지 관련 단체(한국농아인협회 등)종사
- ④ 공공기관(공무원 등)종사
- ⑤ 수어 상담 및 통신중계서비스 관련 기관(금융기관, 107, 110, 120 등)종사
- ⑥ 프리랜서
- ⑦ 학교 재학중(학생)
- ⑧ 비활동(자원봉사)
- ⑨ 기타( )

11. 귀하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 ① 기관장급(관장/시설장)
- ② 상위관리급(부장/국장)
- ③ 중간관리급(과장/팀장)
- ④ 실무급(사원/대리)
- ⑤ 프리랜서
- ⑥ 기타( )

12. 현재 귀하의 고용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정규직
- ② 무기계약직
- ③ 비정규직
- ④ 기타( )

13. 귀하가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에 응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업무상 필요해서
- ② 자기개발을 위해서
- ③ 수어통역 관련 학과를 졸업해서
- ④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 ⑤ 기타( )

## B. 청각장애인통역사 업무특성과 노동조건

- 다음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가 청각장애인통역사로서 현재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며, 현재 업무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응답 / 비율	0%~ 10%	11%~ 20%	21%~ 30%	31%~ 40%	41%~ 50%	51%~ 60%	61%~ 70%	71%~ 80%	81%~ 90%	91%~ 100%
① 일상생활 지원을 포함하는 단순 통역 업무										
② 교육 관련 통역 업무										
③ 법률 관련 통역 업무										
④ 의료 관련 통역 업무										
⑤ 방송(미디어) 관련 통역 업무										
⑥ 종교 및 의식(결혼식) 관련 통역 업무										
⑦ 재활서비스(상담, 복지) 관련 통역 업무										
⑧ 여가(문화활동, 예술) 관련 통역 업무										
⑨ 작업(취업알선, 취업지도) 관련 통역 업무										
⑩ 수어통역 행정(문서작성, 회의) 관련 통역 업무										
⑪ 기타(글로 적어주세요)										



2. 청각장애인통역사로서 일할 때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각각의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통역사로서 차별 침해 경험	① 있다	② 없다
① 인종 및 피부색에 의한 차별경험		
② 성관련 차별경험		
③ 실적에 따른 차별경험		
④연령에 따른 차별경험		
⑤ 학력에 따른 차별경험		
⑥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경험		
⑦ 종교에 따른 차별경험		
⑧ 정치/사회적 의견에 따른 차별경험		
⑨ 혼인여부에 따른 차별경험		
⑩ 지역에 따른 차별경험		
⑪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경험		
⑫ 장애유무에 따른 차별경험		
⑬ 기타( )		

3. 수어통역 업무 수행 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위대로 2가지를 선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	-----	--

- ① 청각장애인통역사로서 자신의 능력 부족
- ② 수어통역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낮은 신뢰
- ③ 청각장애에 대한 인식 부족
- ④ 청각장애인통역사들 간 신뢰 부족
- ⑤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식 부족
- ⑥ 기타 ( )

### C.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요건

- 다음은 담당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요건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신의 상태가 아니라 현재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격요건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각장애인통역사로 일하기 위해 어떠한 전공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수어통역 관련 전공
- ② 수어교육 관련 전공
- ③ 사회복지 관련 전공
- ④ 특수교육 관련 전공
- ⑤ 심리/상담 관련 전공
- ⑥ 보건/의료 관련 전공
- ⑦ 교육 관련 전공(특수교육 제외)
- ⑧ 행정 관련 전공
- ⑨ 직업 관련 전공
- ⑩ 전공은 상관없다.
- ⑪ 기타 (            )

2. 현재 귀하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느 정도의 교육수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고등학교 졸업
- ② 전문대학 졸업
- ③ 대학교 졸업
- ④ 대학원 졸업
- ⑤ 기타 (            )

3.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후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 없다
- ② 필요 없다



- ③ 필요하다
  - ④ 매우 필요하다
  - ⑤ 잘 모르겠다
4.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후 어떠한 교육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농인사회 이해를 위한 교육
  - ② 전문 통역분야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인 교육
  - ③ 전문 통역분야에 대한 수어통역 교육
  - ④ 전반적인 업무를 이해하기 위한 오리엔테이션
  - ⑤ 기타 (                    )
5. 통역현장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배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수어통역 자격증 유무에 따라서
  - ② 대학 전공에 따라서
  - ③ 현장 경력에 따라서
  - ④ 직무분석이나 인성/적성검사에 따라서
  - ⑤ 기타 (                    )
6. 현재 청각장애인통역사의 능력에 따라 업무가 적절하게 할당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그렇다
  - ④ 매우 그렇다
  - ⑤ 잘 모르겠다
7. 다음 중 수어통역 분야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 (    ) 청각장애인통역사 수가 늘어나야 한다.
  - (    ) 수어통역 수당이 현재보다 높아져야 한다.
  - (    ) 청각장애인통역사를 위한 보수교육이 다양화되어야 한다.
  - (    ) 청인/농인 청각장애인통역사 간 이해를 높여야 한다.

- ( ) 수어통역이 활동보조제도와 같이 바우처 사업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 ) 청각장애인통역사가 취업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하여 취업기회를 넓혀야 한다.
- ( ) 청각장애인통역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 ( ) 지역 수어통역센터 확대와 청각장애인통역사 정원이 증원되어야 한다.
- ( ) 농인과 청각장애인통역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 ( ) 기타

---

### D.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취득 방법

---

1. 귀하는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을 취득한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① 1년 미만
  - ② 1년-3년 미만
  - ③ 3년-5년 미만
  - ④ 5년-10년 미만
  - ⑤ 10년-15년 미만
  - ⑥ 15년 이상
  
2. 귀하가 청각장애인통역사 필기시험을 보기 위해 공부한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6개월 이내
  - ② 6개월-1년
  - ③ 1년-3년
  - ④ 3년-5년
  - ⑤ 5년 이상
  
3. 귀하가 청각장애인통역사 실기시험을 보기 위해 공부한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6개월 이내
  - ② 6개월-1년
  - ③ 1년-3년
  - ④ 3년-5년
  - ⑤ 5년 이상



4. 귀하의 시험 응시 횟수를 적어주십시오.

필기 ( )회, 실기 ( )회

5. 현재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검정시험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합격자 연수 3가지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이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절하지 않다
- ② 적절하지 않다
- ③ 적절하다
- ④ 매우 적절하다
- ⑤ 잘 모르겠다

6. 필기시험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과목	난이도
한국어의 이해	①매우 쉬움 - ②쉬움 - ③적절함 - ④어려움 - ⑤매우 어려움
통역의 기초	①매우 쉬움 - ②쉬움 - ③적절함 - ④어려움 - ⑤매우 어려움
일반상식	①매우 쉬움 - ②쉬움 - ③적절함 - ④어려움 - ⑤매우 어려움
필기시험 전반	①매우 쉬움 - ②쉬움 - ③적절함 - ④어려움 - ⑤매우 어려움

7. 실기시험 난이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과목	난이도
문장통역	①매우 쉬움 - ②쉬움 - ③적절함 - ④어려움 - ⑤매우 어려움
수어통역1 (한국수어통역)	①매우 쉬움 - ②쉬움 - ③적절함 - ④어려움 - ⑤매우 어려움
수어통역2 (한국어식 수어통역)	①매우 쉬움 - ②쉬움 - ③적절함 - ④어려움 - ⑤매우 어려움
실기시험 전반	①매우 쉬움 - ②쉬움 - ③적절함 - ④어려움 - ⑤매우 어려움

8. 검정시험의 과목별 출제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시험과목별 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시험 과목	시험 시간
필기시험	한국어의 이해	60분(50문항)
	통역의 기초	
	일반상식	
실기시험	문장통역	30분
	수어통역1(한국수어통역)	
	수어통역2(한국어식수어통역)	

8-1. 필기시험은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 필기시험을 유지한다.
- ② 현행 필기시험 난이도를 조정한다.
- ③ 시험과목을 변경한다.
- ④ 문항수를 조정한다.
- ⑤ 응시시간을 조정한다.
- ⑥ 기타 ( )

8-2. 실기시험은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 실기시험을 유지한다.
- ② 현행 실기시험 난이도를 조정한다.
- ③ 시험과목을 변경한다.
- ④ 문항수를 조정한다.
- ⑤ 응시시간을 조정한다.
- ⑥ 기타 ( )

9.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중요한 평가영역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한국어의 이해
- ② 통역의 기초
- ③ 일반상식



10.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시험 중 실기시험의 중요한 평가영역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문장통역
- ② 수어통역1(한국수어통역)
- ③ 수어통역2(한국어식 수어통역)

11. 청각장애인통역사 실기시험 중 인터뷰 등의 영역이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12.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 취득방법에 만족하십니까?

- ① 예 → 13번으로 가십시오.
- ② 아니오 → 12-1번으로 가십시오.

12-1.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 취득방법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재(시험+합격자 연수 이수) 자격 취득방식을 유지하되 난이도 조정 필요
- ② 수어통역 관련 양성 과정만 이수한 후 자격증 취득
- ③ 일정경력만으로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증 취득
- ④ 일정경력과 교육연수과정 이수 후 자격증 취득
- ⑤ 일정경력과 시험(실기 및 필기) 후 자격증 취득
- ⑥ 일정경력과 시험(실기 및 필기) 및 교육연수과정 이수 후 자격증 취득
- ⑦ 수어통역학 관련 학위(학부 혹은 대학원)를 취득한 자에게만 자격증 부여
- ⑧ 기타 (                    )

※ 일정경력 : 수어통역 관련 업무로서 기관이 증량가능한 경력을 말함

13. 현재 자격취득 시험의 횟수는 연 1회입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E.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제도 개선

1. 현재 청각장애인통역사는 등급 없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농인에게 질 좋은 통역서비스 제공과 효과적인 통역업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현재 자격제도를 개선(예, 분야별 전문 청각장애인통역사, 지역 내(內) 활동 청각장애인통역사 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설문 종료)
- ② 그렇지 않다(설문 종료)
- ③ 그렇다(1-1번으로 이동)
- ④ 매우 그렇다(1-1번으로 이동)
- ⑤ 잘 모르겠다(1-1번으로 이동)

1-1. 분야에 따라 전문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증을 부여한다면 분야별 전문 영역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모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방송 관련 분야
- ② 법률 관련 분야
- ③ 의료 관련 분야
- ④ 교육 관련 분야
- ⑤ 여가 관련 분야
- ⑥ 기타 분야

1-2.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제도를 1-1과 같이 구분한다면, 분야별 전문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증은 어떻게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보기에서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 취득 후 특정분야(방송/법률/의학/교육)에 일한 경력이 있으면 부여
- ②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 취득 후 분야 관계없이 일정경력이 있으면 부여
- ③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 취득 후 전문 분야 관련 실기시험 합격 시 부여
- ④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 취득 후 교육연수를 이수했으면 부여
- ⑤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 취득 후 대학 학부/석사에서 전문분야를 전공했으면 부여
- ⑥ 기타( )



---

## 수어통역사 활성화 방안 연구

---

발행일 : 2018년 10월

발행인 : 최 경 숙

발행처 : (재)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7층

Tel. 02-3433-0716

Fax. 02-3433-0463

<http://www.koddi.or.kr>

---

ISBN 978-89-6921-295-5(93330)

※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무단 복사하는 것을 금합니다.

